

2026년 제 1차 공공저작물 책임관·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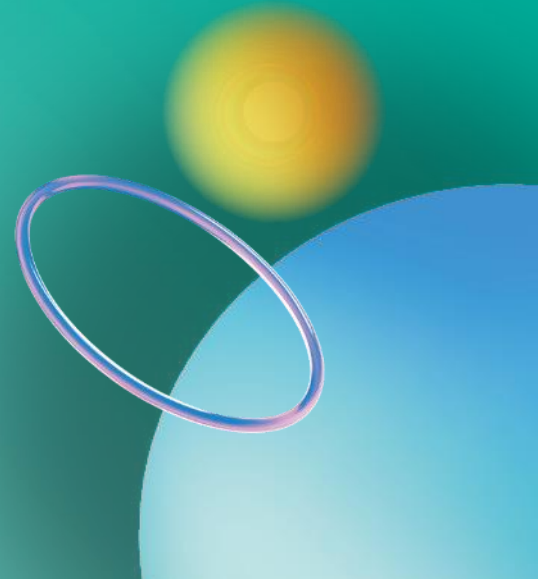
2026년 제 1차 공공저작물 책임관·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프로그램 순서

역량강화 연수 1일차

I 개회 및 사업 소개

II 저작권 일반

III 공공저작물 사업



한국문화정보원
저작권 및
공공 저작물 소개

강의자 : 김동운 팀장

I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사업 및 신유형 도입소개

목차

1.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정책
2. 공공저작물 정책 진행 경과
3. 공공누리 신유형 도입
4. 공공저작물 개방 현황
5. 개방지원센터 소개 및 운영 절차
6. 개방지원센터 주요 연계 사업
7. 개방지원센터 활용하기



①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정책

비전

인공지능시대의 '공공저작물' 가치 확산

목표

국민이 안심하는 디지털 플랫폼 개방 지원

전략방향

공공저작물 정책 및 제도 '참여 확대'

추진과제

- ① 정책 및 제도 운영 업무 연속 위한 개방지원 체계화
- ② 공공저작물개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③ 정책 및 제도 실무역량 강화

세부 추진 내용

- ▶ 개방지원센터서비스 강화
- ▶ 공공저작권 신탁제도 개선 및 확산
- ▶ 공공저작물 시·도 실무협의체 운영 확대
- ▶ 신유형 개정에 따른 제도개선 및 공공저작물 개방확대 연구 추진
- ▶ 공공저작물 담당자 실무 역량 및 네트워킹 강화
- ▶ 찾아가는 공공누리 교육단 운영 다양화
- ▶ 공공저작물 담당자 지정확대 및 포상 활성화

AI기반 국가에 특화된 고품질 공공저작물 '개방' 확대

추진과제

- ① 국가에 특화된 공공저작물 개방 추진 및 학습용 권리정보 구축
- ② AI 활용 지능형 공공저작물 제공체계 구축
- ③ 신유형적용 공공저작물 개방

세부 추진 내용

- ▶ 공공저작물 디지털 개방 지원사업
- ▶ 공공저작물 디지털 전환 구축사업
- ▶ 공공저작물 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AI 서비스고도화
- ▶ 공공저작물 연계 관리 및 연계 데이터품질 개선
- ▶ AI기반 공공누리 유형판단 모델링 및 학습데이터 가공
- ▶ 공공누리 유형 적용 실태조사 및 전환
- ▶ 공공누리 신유형 적용 권리확인 및 처리
- ▶ AI 학습데이터 가공 및 제공

저작권 안심 브랜드 확대 및 '협업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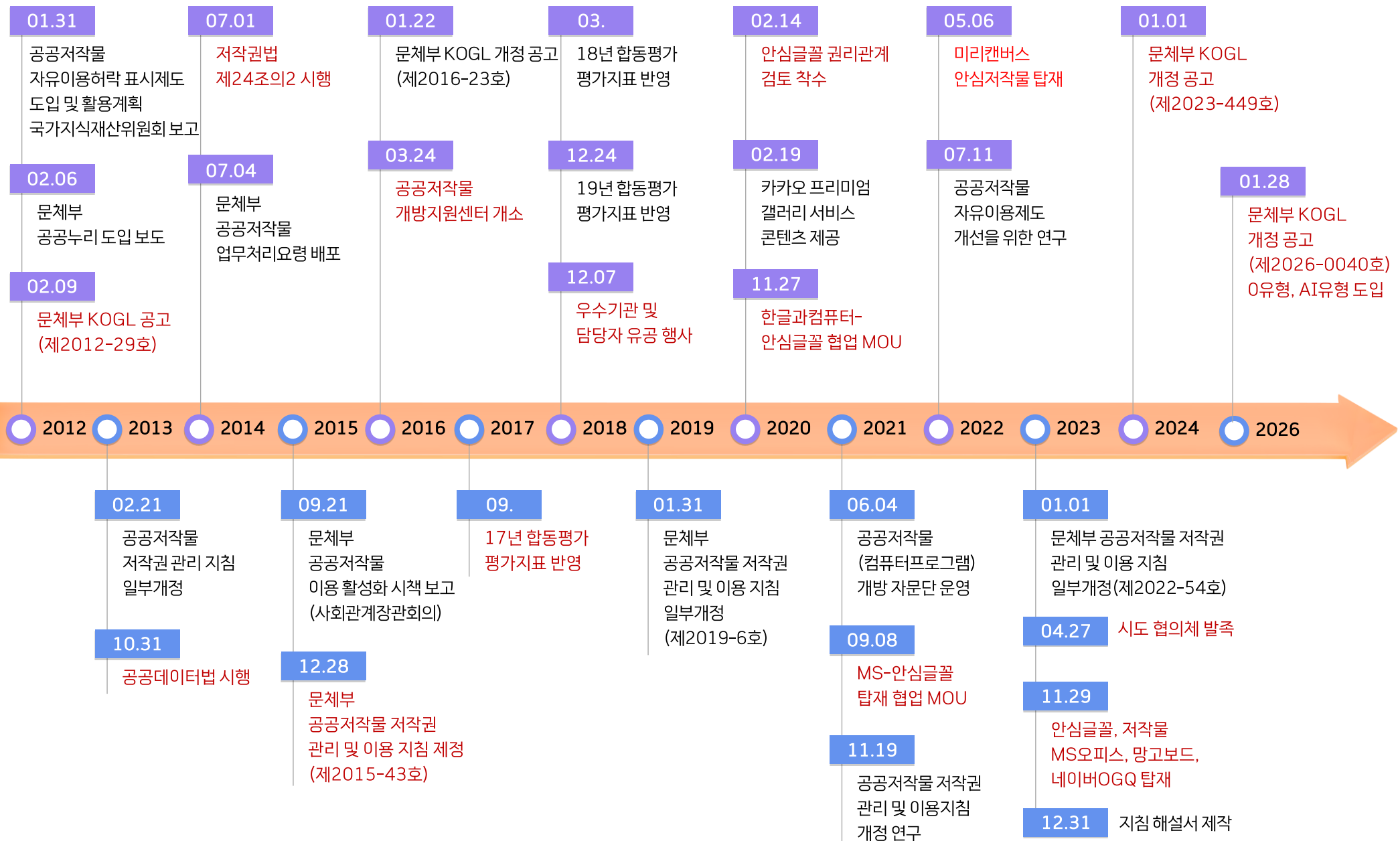
추진과제

- ① 정책개선 및 민간 활성화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 ② 공공저작물 대국민 홍보 활성화

세부 추진 내용

- ▶ 민간 협업을 통한 안심 저작물 확보 및 이용활성화
- ▶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이용자별 만족도
- ▶ 정책 개선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 운영
- ▶ 공공저작물 개방 인식 확대 및 활용사례 발굴
- ▶ 공공누리 인식 확대와 공공저작물 활용사례 확산

② 공공저작물 정책 진행 경과



③ 공공누리 신유형 도입('26.1.28. 개정)

» 공공누리 신유형 도입 경과

공공저작물은 저작권 문제 없는 AI 학습데이터로서 활용가치 높아 ▶ 정부, 민간에서 개방 요구
AI 모델 개발 학습 시 자유로운 활용 위한 제도 개선 ▶ 출처명시 의무없는 공공누리신유형 신설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하기 위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26.9.11.)
(출처명시 간소화, AI 학습 시 변경 허용)
국가대표AI 정예팀, 공공누리 제1,3유형
공공저작물 활용

AI 학습용 데이터 활용 위한 공공저작물
법제도 연구사업 추진('25년 8월~11월)

관계부처 합동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25.9.15, 대통령 주재)」에서
AI 학습 목적의 공공저작물 활용 시 법적
불확실성 해소 필요성 논의

과기부, 국가대표 AI(독자 AI 파운데이션)
개발추진, 학습데이터로써 공공저작물 요
청

공공누리 신유형 신설

✓ 0유형 : 자유이용(기존 만료저작물 포함)



✓ AI 유형 : AI 학습 목적 시 자유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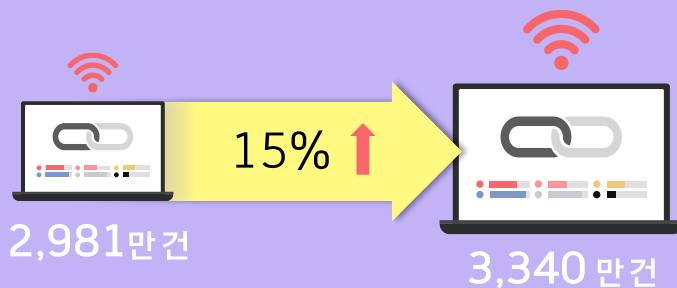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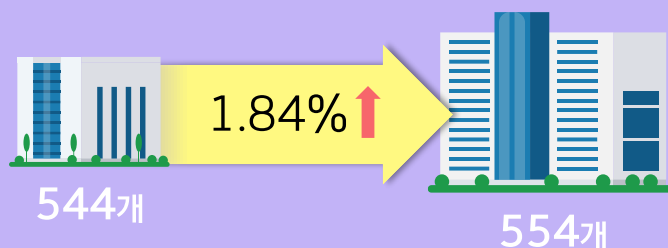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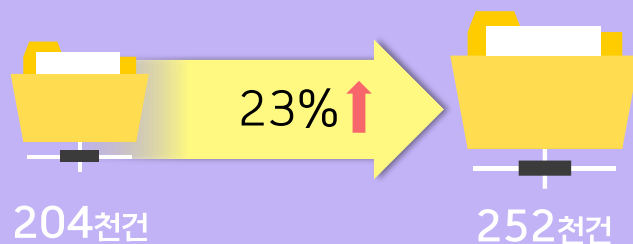
4 공공저작물 개방 현황

» 공공저작물 개방현황 ('25.12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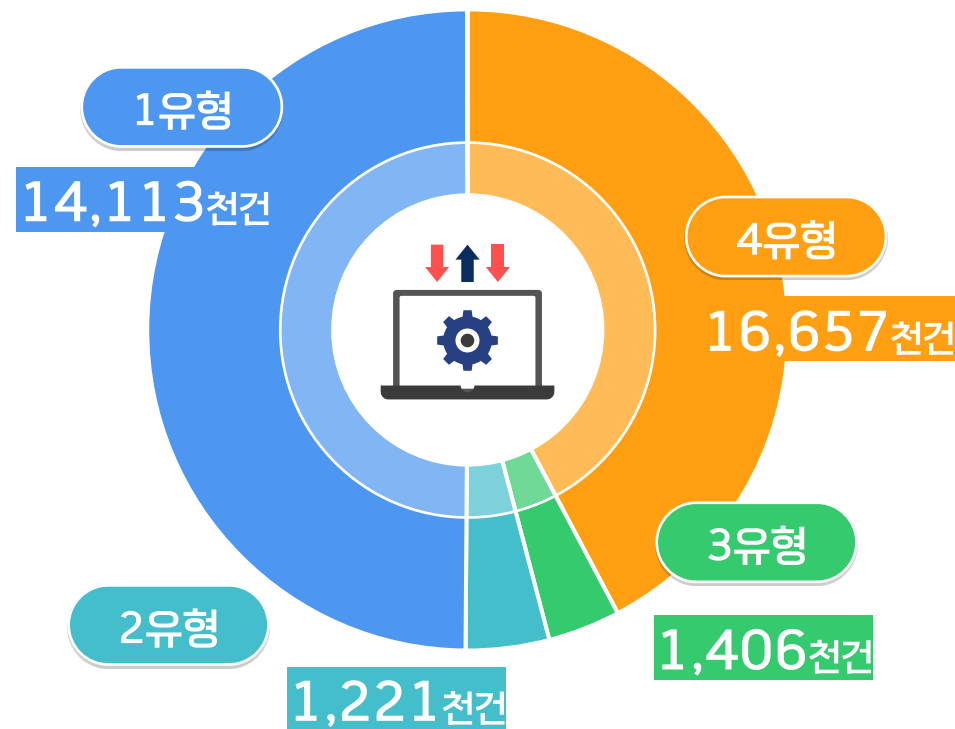
공공저작물 개방, 연계 추진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에 유형을 선택 후,
공공저작물 사이트(www.kogil.or.kr) 통해 개방

공공저작물 연계 현황

연계
건수연계
기관수원문
건수

이용조건 별 연계 현황



전체 연계 건수 (1~4유형)

33,406천건

5 개방지원센터 소개 및 운영절차

»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관련 근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제 16조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저작물의 권리관계 확인 지원
 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진단 및 개선 지원
 3. 공공저작물 개방 및 이용촉진을 위한 자문
 4. 공공저작물 관련 교육·연수
 5. 그밖에 공공저작물의 효율적인 제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

개소일

2016년 3월

운영 목적

공공저작물 개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

» 주요 제공 서비스

권리확인 지원



- ✓ 검토 의뢰 게시물
- 개방 가부 검토

관리체계 진단



- ✓ 저작권 관리 현황 진단
- ✓ 관리기준 권고

법률 컨설팅



- ✓ 저작권 법률 자문
- ✓ 계약서 검토

맞춤형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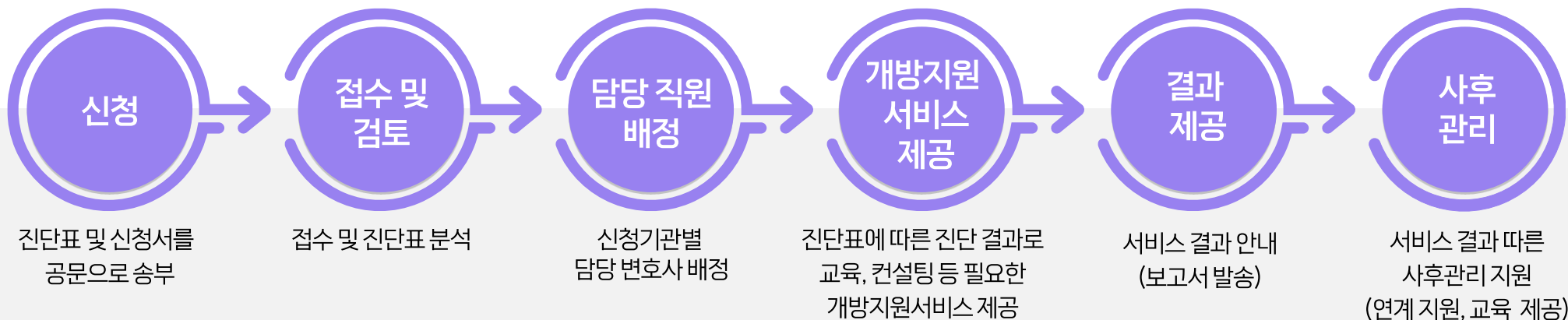
- ✓ 전 직원 대상 방문교육
- ✓ 책임관 및 담당자 대상 수준별 소집교육

5 개방지원센터 소개 및 운영 절차

» 개방지원서비스 세부

분기별 신청 안내	✓ 분기별 서비스 안내 공문 발송 ✓ 공공누리 사이트 공지사항 게재
관리체계 진단	✓ 서비스 신청기관 저작권 관리실태 자가진단서 제출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정책에 따른 기관별 관리, 제공현황 파악 ✓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안 및 관리체계 개선 결과보고서 발송
법률 상담 및 컨설팅, 권리 확인	✓ 저작권 이슈, 분쟁에 대한 법률 컨설팅 지원(의견서 제공) ✓ 공공저작물 정책 안내 및 기관별 질의응답(유무선 상담 제공) ✓ 안심글꼴 개방을 위한 권리 확인 지원(의견서 제공) ✓ 공공저작물 관련 지침 해설서 및 상담사례집 제공
맞춤형 교육 (방문, 소집)	방문 교육 ✓ 공공저작물 개방 관련 실무 교육 ✓ 저작권의 기본 개념 및 관련 분쟁사례 소개 ✓ (활용교육) 공공누리제도 및 활용 관련 법, 사례 교육 소집 교육 ✓ 법률, 제도 및 사례·실무 중심의 공공저작물 교육 ✓ 담당자 개인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특별강연 ✓ 특정 주제에 대한 공동 토론, 기관별 저작권 상담 등

» 개방지원 서비스 지원 절차



⑥ 개방지원센터 주요 연계사업

» 주요 연계 사업

(신규)신유형 공공저작물 및 학습데이터 개방지원

사업
목적

공공누리 신유형 적용 공공저작물 개방 확대를 위한
권리확인 및 처리 지원('공공누리 신유형 적용' 조건)

사업
내용

- ☐ 권리 확인 → 신유형 가능 확인하여 즉시 적용·연계 지원
- ☐ 권리 처리 → 신유형 근거 확보하여 적용·연계 지원
(공공누리 적용 동의 확보, 저작권 양도 체결 등)
- ☐ 공공저작물 개방 현황 실태조사

공공저작물 디지털 개방 지원 사업 (권리확인·처리)

사업
목적

디지털 집현전, 공공저작물 개방 추진 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공저작물 저작권 확보를 위한 권리확인·처리 지원

사업
내용

- ☐ 권리 확인(계약서 검토, 공공누리 유형 확인) 및 처리
(공공누리 적용 동의 확보, 저작권 양도 체결, 신탁 개방 협의 등)
- ☐ 개방 지원 (공공누리 연계·원문 서비스, 메타데이터 관리 지원)
- ☐ AI 학습용 가공(라벨링) 및 법률컨설팅 지원

공공저작물 디지털 전환·구축 사업 (재촬영·복원)

사업
목적

보존 및 활용가치가 있는 공공저작물을
고품질의 디지털 저작물로 전환 및 구축 지원

사업
내용

- ☐ 기구축 공공저작물 고품질화 및 복원(보정, 복원)
- ☐ 신규 공공저작물 제작
(보존 가치 및 활용도가 높은 공공저작물 신규 제작)
- ☐ 공공누리 제1유형 개방 및 AI 학습용 가공, 홍보지원

공공저작물 민간 협업 및 안심브랜드 홍보

추진
목적

공공저작물을 민간 저작도구 플랫폼에 제공해
창작 소재로써 공공저작물의 이용 활용도를 제고

사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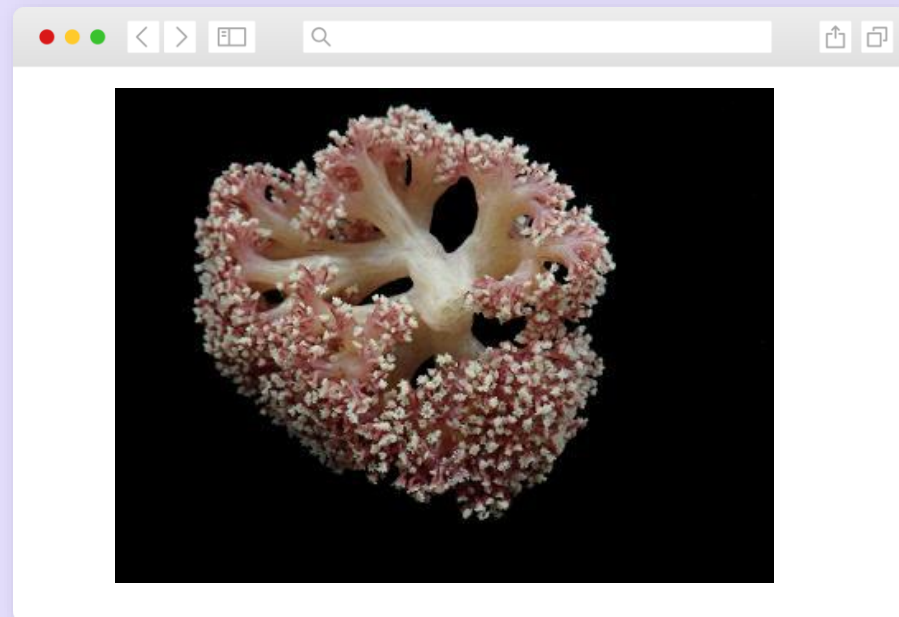
- ☐ 공공누리 제0, 1유형으로 개방된 공공저작물을
민간 저작도구 플랫폼에 탑재
 - (글꼴)한컴오피스 2018, 2020, MS오피스, 어도비
 - (글꼴, 이미지) 미리캔버스, 망고보드, 네이버OGQ

» 공공저작물 디지털 개방을 위한 저작권 확보 지원 사업

사업 추진성과(2025년)

- 시·도·시·군·구, 국가 및 공공기관, 디지털 집현전 등 총 12개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서비스 지원 완료
- 권리 불분명 공공저작물의 '권리자 찾기' 시범 운영
- 12개 기관 대상으로 권리 확인 33만건, 권리 처리 5.8만건, 원문 확보 4.1만건 완료
- 공공저작물 저작권 권리 정보 표준 항목('23년 연구, 20개)에 따른 권리정보 메타데이터 정교화(시스템 입력) 및 원문DB 서비스

사업추진 사례



공동 협약식 및 포럼



권리 정보 표준

[illegible]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내외 서식 해양생물 사진, 영상

공공누리

4유형

1 유형

(저작권 양도 계약 체결)

⑥ 개방지원센터 주요 연계사업

» 공공저작물 디지털 전환 구축 사업

사업 추진성과(2025년)

-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총 5개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고품질 재촬영 및 보정·복원, 디지털 스캔 등 신기술 지원
- ✓ 국가유산청 : 불교 유적, 유물 등 국가유산의 디지털 아카이빙 위한 초고해상도/초고화질의 디지털 스캔 및 촬영
- ✓ 제주콘텐츠진흥원 :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및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 비공개구간(당처물동굴 등) 영상 및 사진 촬영
-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 신안선 발굴 관련 기증 및 해양연구소 보유 필름 스캔 보정 및 복원

촬영 현장



(유물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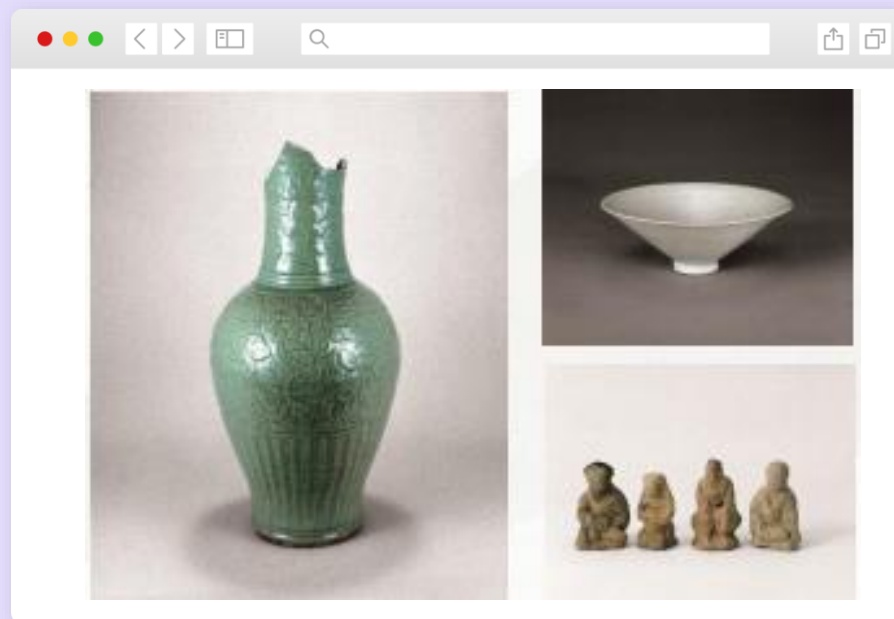


(동굴 촬영)



(보정, 복원)

사업추진 사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공공누리

1유형

⑥ 개방지원센터 주요 연계사업

» AI 기반 공공누리 유형판단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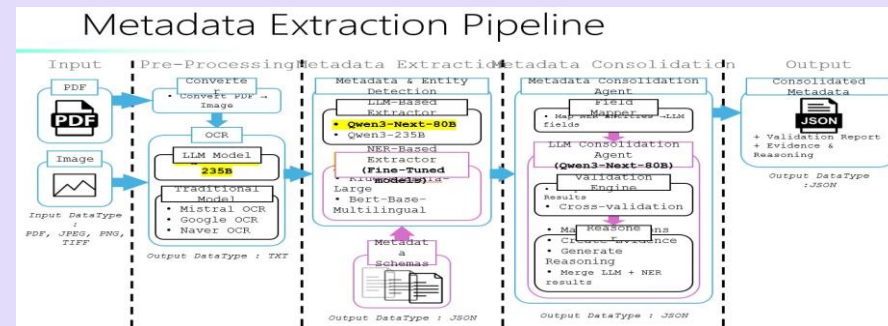
사업 추진성과(2025년)

- ✓ 공공저작물 유형판단용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471,682건 구축
- ✓ 공공저작물 인공지능 학습모델 4종 구축
- ✓ 공공누리 실시간 유형판단 서비스 구축 설계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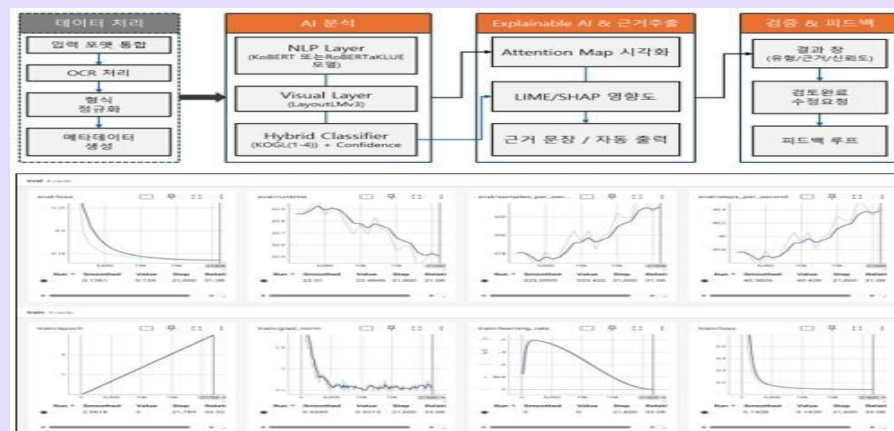
서비스 공개(2026년)

- ✓ **실시간 AI기반 공공누리 유형판단 서비스**
사용자가 공공저작물을 등록하면 자동으로 공공누리 유형을 판단하여주는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 ✓ **실시간 메타데이터 자동추출 및 채움 서비스**
사용자가 공공저작물을 등록하면 자동으로 메타데이터를 추출하여 주고 없는 항목은 인공지능으로 채워주는 서비스

사업추진 사례



메타데이터 추출 파이프라인



유형판단 학습모델 분석

I

6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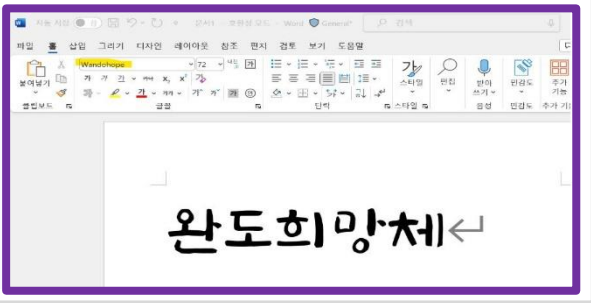
6

개방지원센터 주요 연계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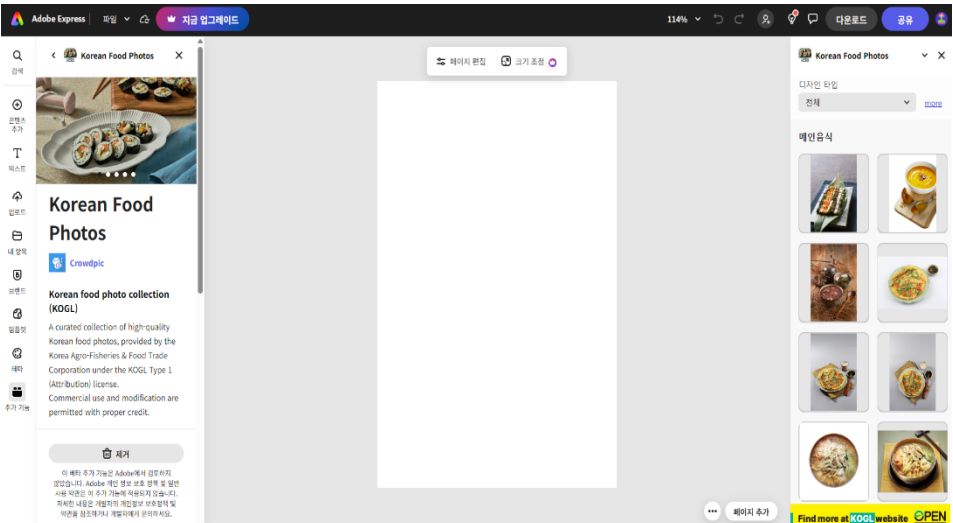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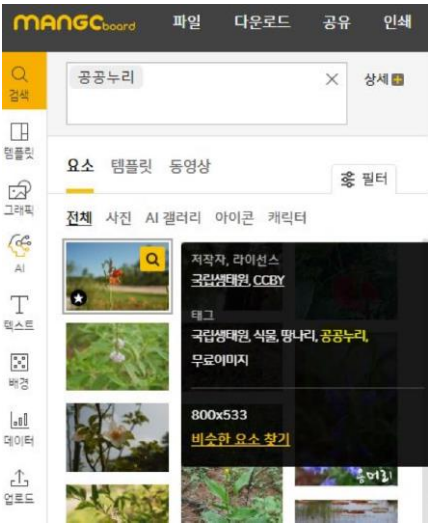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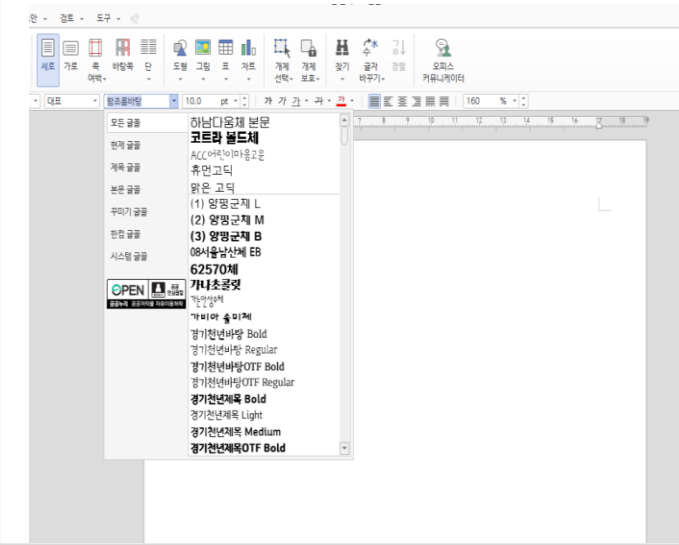
» 공공저작물 민간 저작도구플랫폼 탑재

사업 추진성과

- 안심 글꼴(공공207종, 민간 157종) 개방 및 서비스 지원
- 다양한 민간 저작도구와의 협업 및 지속적 확대를 통해 안심저작물의 자유로운 민간 활용 환경 조성
- 마이크로소프트 MS오피스 내 안심 글꼴 7종 탑재
- 어도비(Adobe) 프로그램 내 안심 글꼴 83종 탑재 테스트 및 계약 추진('25.3.30 계약 완료)



협업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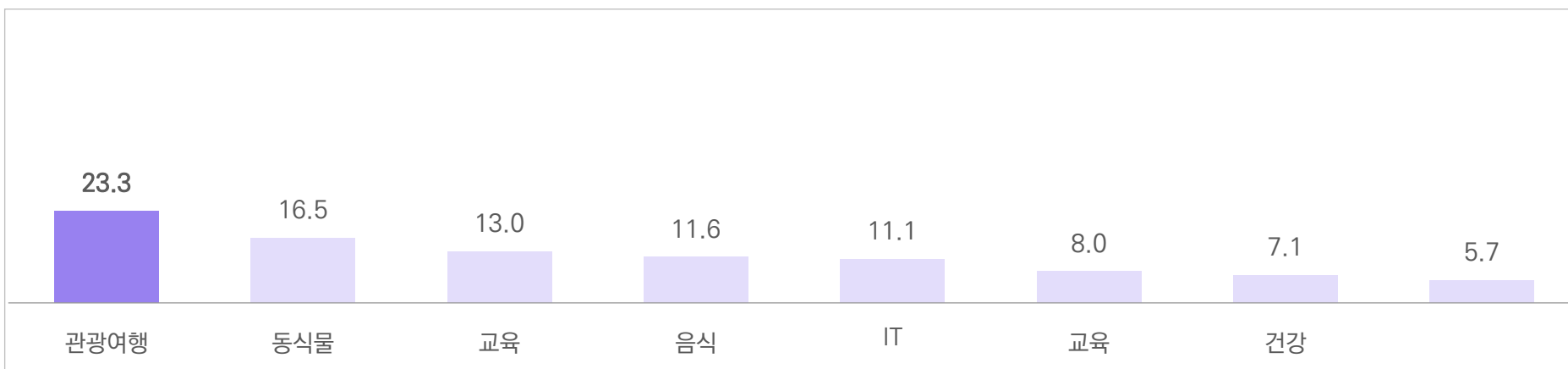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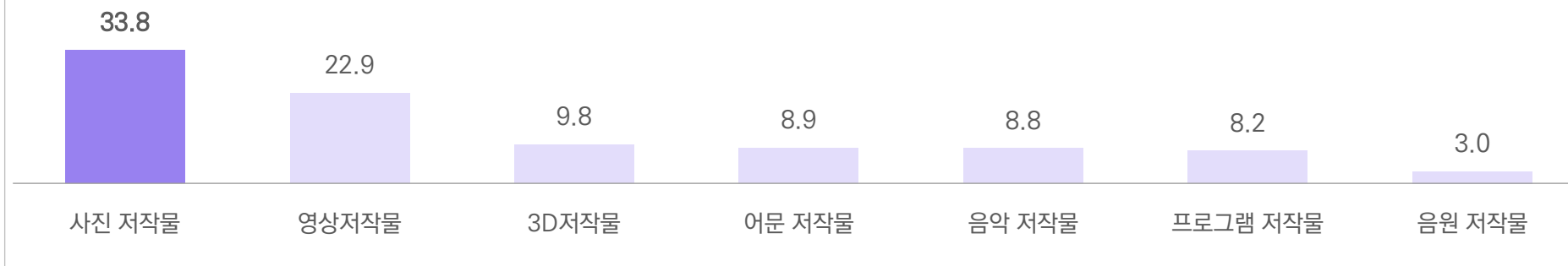
7 개방지원센터 활용하기

» 이용자가 원하는 공공저작물 콘텐츠

- ✓ 희망하는 공공저작물 주제 : 관광/여행, 동/식물, 교육, 음식 순
- ✓ 희망하는 공공저작물 분야 : 사진 저작물, 영상, 어문 저작물에 대한 반응 긍정적

문) 희망하는 공공저작물 분야 및 주제는 무엇입니까?

공공저작물 = AI 모델 개발의 학습데이터로 사용가능 한 원시데이터(비정형)



[Base : 공공누리 및 공공저작물 인지 응답자, n=2,196, 단위: %]

7 개방지원센터 활용하기

» 공공저작물 개방 시 어려운 점

- ✓ 공공누리 및 공공저작물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466명 대상으로 공공저작물 개방 시 어려운 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저작권 귀속 사항 불분명/부재(과거 계약서 등)'와 '공공저작물 개방 필요성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낮은 인식'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양도 또는 자유이용개방 미동의/불허'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기타응답으로 '공공저작물 종류 한정적', '법, 지침의 부재(계약업무)', '민원 대처의 한계' 등의 응답이 있었음

문) 공공저작물 개방 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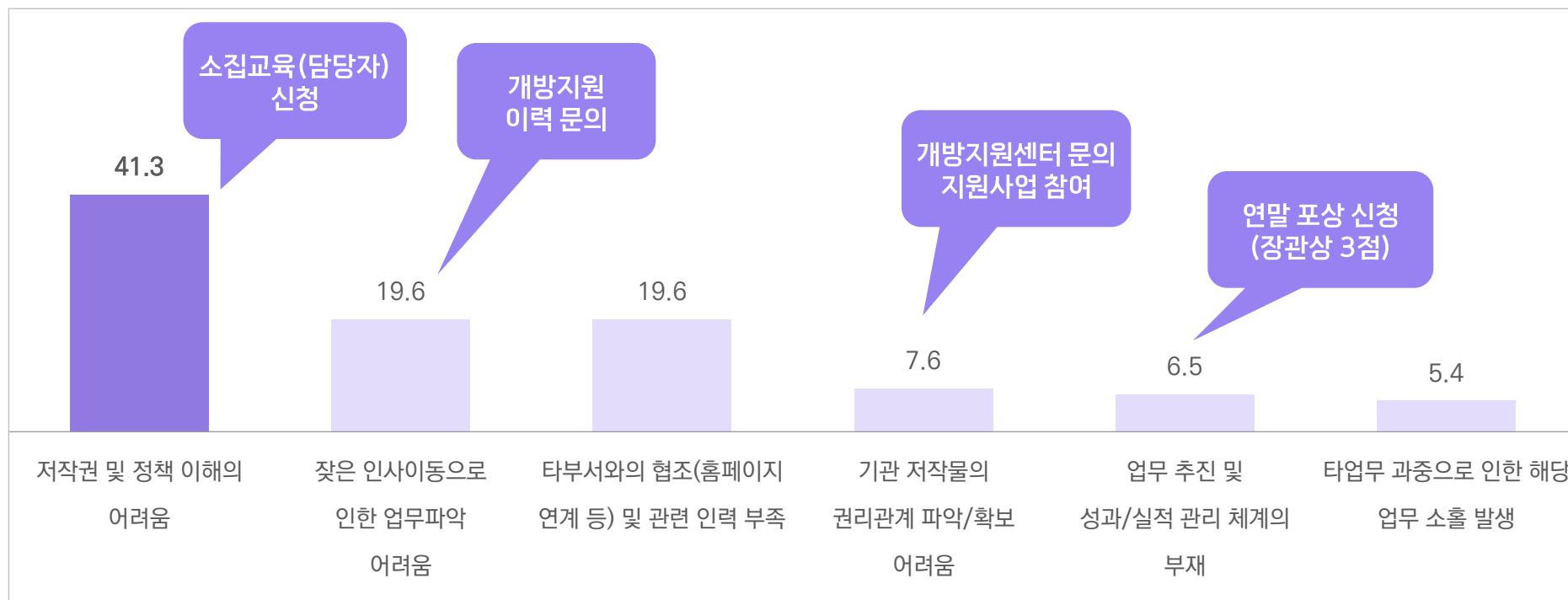
[Base : 공공누리 및 공공저작물 인지응답자, n=109, 단위:%]

7 개방지원센터 활용하기

» 담당자로서 업무 추진의 어려운 점

- ✓ 공공누리 및 공공저작물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대상으로 책임관 및 담당관으로서 업무 추진 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저작권 및 정책 이해의 어려움'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잡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파악 어려움', '타부서와의 협조(홈페이지 연계 등) 및 관련 인력 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기타응답으로 '기관 저작물의 권리관계 파악 및 확보 어려움', '업무 추진 및 성과/실적 관리 체계 부재', '업무과중' 등의 응답이 있었음

문) 책임관 및 담당관으로서 업무 추진 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7 개방지원센터 활용하기

» 공공저작물 책임관 운영의 나쁜 예



7 개방지원센터 활용하기

» 공공저작물 책임관 운영의 좋은 예



7 개방지원센터 활용하기

» 공공저작물 책임관/담당자, 관련업무 담당자 역할



생산 담당자

- ▶ 콘텐츠/보고서 등 생산 시, 공동저작권자와의 권리관계 확인이 되었는가, 저작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는가(양도계약, 이용허락 등 체결)
- ▶ 사업/조직 정책에 맞는 자유이용조건 (=공공누리마크)을 달았는가?
- ▶ 관련 저작권 정보를 확인하고 구축, 보존하였는가

콘텐츠 생산 부서

(문화콘텐츠, 문화관광, 디지털콘텐츠, DB구축, 영상미디어, 연구, 홍보 등)

홈페이지 관리부서

(홍보, 운영지원, 시스템 운영 등)

* 공공데이터담당 * 기록물 담당 * 정보공개담당

공공저작물
책임관/실무자

- ▶ 조직의 공표된 공공저작물이 민간에 제공 (개방)되었을 때, 저작권으로부터 안전한가?
- ▶ 생산 및 계약 업무 담당자들이 저작권을 인지하고, 업무 수행을 하고 있는지?
- ▶ 생산, 계약 부서가 구축, 확인한 공공저작물 저작권정보를 관리하는가

<공공저작물 책임관>

- 공공저작물 관리 및 제공 현황 파악
- 기타 업무 담당자(부서) 협조 요청
- 공공저작물의 이용조건 검토 등

<공공저작물 실무자>

- 기타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협조 지원
- 공공저작물의 취합 및 관리 등



계약 담당자

- ▶ 조달 시,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에 계약목적물의 저작권 귀속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는지
- ▶ 계약 시, 공공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또는 이용허락계약서, 자유이용허락동의서를 통해 저작권 귀속관계가 기재되어 있는지

계약 담당부서 (경영지원, 총무)

참고 자료

[계약] 문체부/문정원의 저작권양도계약서/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동의서 양식
 [관리] 공공저작물 권리정보 메타데이터 항목 (공공누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지침] 타 기관의 '공공저작물 관리 지침' (국가법령센터에서 확인 가능)

7 개방지원센터 활용하기

»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정책 제도 연계

개방지원서비스

A

- ✓ 정책 도입 : 공공누리 제도 도입 여부
- ✓ 공공저작물 담당관 지정 : 지정 여부

담당자/전직원 역량강화 교육

B

- ✓ 역량강화 : 상하반기 연수, 교육 추진
- ✓ 개방지원서비스 교육 신청 : 상시

신탁 관리업무

E

- ✓ 신탁 저작물 위탁관리
- ✓ 신탁개방사이트를 통한 이용허락

STEP
1

개방 활용 연계

공공누리 사이트 연계

C

- ✓ 연계 : 개방 저작물 사이트 통합검색
- ✓ 원문제공 : 공공누리 컬렉션 제공

개방지원사업 참여

D

- ✓ 개방지원 : 저작권 권리확인 및 처리
- ✓ 전환구축 : 저작물 촬영 및 보정, 복원

STEP
2

활용 협업 연계

F

- ✓ 민간채널 협업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 ✓ 공모전, 이벤트 등 공동 협력

서비스 신청 상시 접수/저작권법 상담 무료 지원

관리체계 진단



- ✓ 저작권 관리 현황 진단
- ✓ 관리기준 권고

법률상담 및 컨설팅



- ✓ 저작권 법률 자문
- ✓ 계약서 검토

KCISA
한국문화정보원
개방지원 센터

권리확인 지원



- ✓ 검토의뢰 게시물
개방 가부 검토

상시상담
1670-0052

맞춤형 교육



- ✓ 전 직원 대상 방문교육
- ✓ 책임관 및 담당자 대상
수준별 소집교육

한국문화정보원
저작권 및
공공 저작물 소개

강의자 : 임보라 변호사

II 저작권 일반

목차

1. 무형의 지식재산
2. 저작권법
3. 저작물이란
4. 저작자
5. 저작자의 권리
6. 저작물의 이용
7. 저작재산권의 제한
8. 출처의 명시
9.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10. 저작권 분쟁 해결 제도
11. 자유이용 저작물



1 무형의 지식재산 - 저작권

등록 없이도 창작과 동시에
원시적으로 발생

저작권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배타적인 권리

지식 재산권



특허청

특허를 받기 위해
출원 > 심사 > 등록 해야 권리 발생



특허권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발명)을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소유,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특허법 제94조)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실용
신안권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고안
특허보다 낮은 정도의 기술적 창작 (실용신안법 제2조, 제4조)



디자인권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이를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디자인법 제2조)
: 특허, 저작권법상 보호



상표권

상품 생산, 가공 등을 업으로 하는 **자가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한 기호 등
(상표법 제2조 제1호)인 상표 중 등록된 것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저작권법의 목적(제1조)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조)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보호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법 제2조 제1호)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님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으면 족함

1. 인간

인간이 아닌 동물이나 AI가 만든 것은
현행법상 저작물이 아님



[동물이 직접 찍은 사진]



[Stable Diffusion AI 이미지]

2.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

사실 그 자체,
아이디어에 불과한 것은 저작물이 아님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 제호(제목)의 저작물성

“내가 제일 잘 나가사끼 짬뽕” 사건(2012카합996)

음악저작물인 대중가요의 제호 자체는
저작물의 표지에 불과하고 독립된 사상,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음

3. 창작성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님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으면 족함

✓ **누가하더라도 동일할 수밖에 없는
표현**은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음
(2009도6073)

✓ **특허권과 비교**
특허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과거에 다른 사람이 발명한 적이
없어야 함(신규성)

③ 저작물이란

저작물의 예시 (법 제4조 제1항)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영화, 드라마, 뮤직비디오 등

영상저작물



가요, 팝송, 클래식 등

음악저작물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연극 및 무용, 무연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사진저작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③ 저작물이란(2차적저작물)

2차적저작물(제5조)

- ✓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 ✓ 2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며,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원저작자의 권리
- ✓ 허락없이 2차적저작물을 만들었다면?

2차적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인정되나 원저작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책임이 있음



소설(원작) > 번역,
영화, 게임



만화(원작) > 비디오 게임



소설(원작) > 뮤지컬, 영화

J.K. Rowling <Harry Potter> 1997, <https://www.jkrowling.com/>
Chris Columbus <Harry Potter and the Philosopher's Stone> 2001
Avalanche Software, <HOGWARTS LEGACY> 2023
Warner Bros, <https://www.hogwartslegacy.com>

신일숙 <리니지> 1993 / <https://page.kakao.com/Ncsoft>
Ncsoft <리니지> 1998 / <https://lineage.plaync.com/>

Edmond Rostand <Cyrano de Bergerac> 1897
Michael J. Lewis, Anthony Burgess <Cyrano> 1973
Joe Wright <Cyrano> 2021, Universal Pictures

3 저작물이란(2차적저작물)



저작권재산권 전부 양도 시에도
특약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제외



2차적저작물에 의한
원저작자 저작권침해인정 요건

01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자가
원저작자의 저작물 이용(의거성)

※ '의거성'이란 누군가가 어떤 저작물을 보거나 듣는 등으로 그 창작성 있는 표현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무의식적의거 관계도 있을 수 있음.

02

2차적 저작물과 원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인정

③ 저작물이란(편집저작물)

편집저작물(제6조)

소재나 구성 부분의 저작물성 여부와 관계 없이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

- ✓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 ✓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판결 사례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

가. 피해자 교재 중 최소한 안전파트 부분인

‘제5장 재해사례 및 안전대책’은 …

그들의 학식이나 건설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라는 목적에 적합하도록

나름대로의 방식에 따라 안전관리 조치, 재해사례 등에 관한

여러 자료와 정보들을 수집, 선별하고 구성하여 기술한 편집물로서,

…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재해유형’ 7가지를 제시한 뒤

이에 따라 재해유형 등을 총 6개의 하부목차로 구분하여

작성되었는데, 그중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8면은

위와 같은 제5장의 전체 구성 내에서 **편집자의**

독창적인 편집방침 내지 창조적 개성에 따라 소재를

취사선택하였거나 그 취사선택된 구체적인 소재가

단순 나열이나 기계적 작업의 범주를 넘어

나름대로의 표현방법으로 배열·구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저작물이란(AI 활용 저작물)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2025. 6.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의 저작권 등록 가능성

인간이 창작 과정에서 GAI를 도구로 활용하여 만들어낸 결과물로서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저작물에 해당하며, 저작권 등록이 가능함

ex1. 이용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프롬프트로 입력하여 생성된 GAI 결과물에 그 저작물의 창작성이 나타난 경우

ex2. 이용자가 GAI 산출물을 수정, 증감 등 '추가 작업' 한 부분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ex3. GAI 산출물을 선택하고 배열 또는 구성한 것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p.12

GAI 산출물인 2개의 이미지를 하나로 합성한 후 단순 후보정과 리터치를 하여 저작권 등록을 신청한 경우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 등록을 거절함(한국저작권위원회(2024))

p.17

GAI 산출물 그 자체는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없어도, 편집물로서 GAI 산출물을 선택하고 배열, 구성한 것에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으면 편집저작물로 저작권 등록이 가능함

p.23

③ 저작물이란(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제7조)

- ▶▶▶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등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창작자 원칙

저작물을 창작한 자 (법 제2조 제2호)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저작권을 원시적으로 귀속

▶▶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의 관여만으로는 저작자가 될 수 없음

단독저작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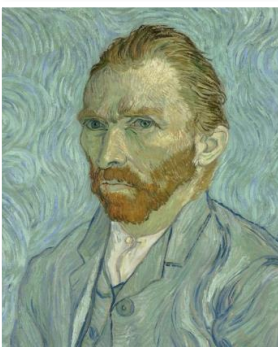
저작자가 **1인**인 저작물

Vincent van Gogh



Sunflowers

1888



Autoportrait

1889

공동저작물

저작자가 **2인** 이상인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

ko.wikipedia.org

결합저작물

다수의 **단독저작물이 결합**되어
외형상 일체적으로 이용되는 것
분리하여 이용 가능

도민의 노래



도민의 노래

유경희 작사, 안종배 작곡
경상북도제정 <https://www.gb.go.kr>

4 저작자(업무상 저작물)

창작자 원칙의 예외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법 제9조)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함



업무상 저작물 성립요건
(법 제2조 제31호)

1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할 것

2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될 것

3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일 것

4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될 것

5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

5 저작자의 권리

저작자 일신에 전속
타인에게 양도 및 상속 불가
저작자의 사망(또는 법인의 해산)에 의해 소멸

저작인격권



공표권

공표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권리



성명표시권

원본 및 복제물, 공표 매체에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동일성유지권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저작권
“권리의 다발”

전부 또는 일부 지분 양도 가능
상속 및 질권 설정 가능
비독점적/독점적 이용허락 가능

저작재산권



복제권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



공연권



공중송신권

무형적 전달행위
(방송·전송·디지털음원송신 등)



전시권



배포권

유형적 전달행위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소유권

물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

광의의 저작권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

저작재산권: 복제, 배포, 전시, 방송 등

저작인격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등

소유권은 영구적으로 존속하지만 **저작권**은 보호기간이 종료되면 **소멸**됨

소유권과 저작권은 별개의 개념이므로 **저작물의 저작권자와 소유권자는 분리**가능

6 저작물의 이용

저작재산권
“배타적인 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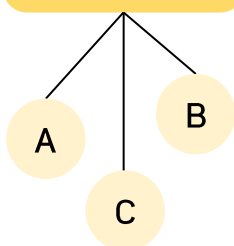
1

저작물의 이용허락
(제4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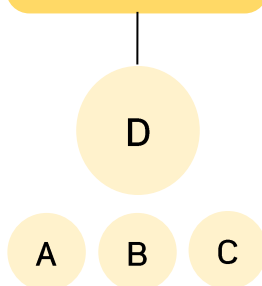
채권적 권리

- ✓ 허락받은 이용방법과 조건 범위 안에서 저작물 이용
- ✓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이용권 제3자에게 양도 불가
- ✓ 타인이 저작권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직접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할 수 없음

단순 이용허락



독점적 이용허락



2

저작재산권의 양도
(제45조)

권리의 총괄적 이전

- ✓ 저작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만 분리하여 양도 가능
- ✓ 지역을 지정하여 양도하거나 일정기간 동안만 양도 가능
- ✓ **전부 양도 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



3

출판권, 배타적발행권 설정
(제57조, 제63조)

독점적/배타적(Exclusive)권리

- ✓ 저작재산권자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발행 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 설정 가능
- ✓ 배타적발행권을 설정 받은 사람(배타적 발행권자)은 저작권자에게 별도의 권리위임을 받지 않고도 **제3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송 등 구제행위 가능**



[출판권]

복제권 + **배포권**
예시) 종이책 출판



[배타적발행권]

복제권 + **전송권**
예시) 전자책(E-BOOK) 발행

⑥ 저작물의 이용

저작물의 직접 이용허락 및 교섭의 어려움

- ✓ 창작 활동에 전념하는 저작자 및 저작권자가 개개의 저작물을 직접 관리하고 이용료를 징수하기 어려움
- ✓ 저작물 이용자가 저작권자를 확인하고 교섭하여 이용허락을 받는다는 것 또한 많은 시간과 비용 소모
- ✓ 저작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방송사업자의 경우, 저작권자와 일일이 교섭하여 허락을 얻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 ✓ 외국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의 저작권자와 교섭 어려움

저작권 신��관리 제도



저작권자에게는 자신의 저작물의 이용을 일일이 허락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고
이용자에게는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함

6 저작물의 이용

»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

분야	단체명	집중관리 분야	홈페이지
 음악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자(작곡, 작사, 음악출판사)의 권리	www.komca.or.kr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음악저작자(작곡, 작사, 음악출판사)의 권리	www.koscap.or.kr
	한국음반산업협회	음반제작자의 권리	www.riak.or.kr
	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	음악실연자(가수, 연주자 등)의 권리	www.fkmp.kr
 어문	한국방송작가협회	방송작가의 권리	www.ktrwa.or.kr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영화시나리오 작가의 권리	www.scenario.or.kr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어문·사진·연극·영상·미술저작자의 권리	www.korra.kr
 영상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영상제작자의 권리	www.kfpa.net
 방송	한국방송실연자협회	방송실연자(탤런트, 성우 등)의 권리	www.kbpa.or.kr
 뉴스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저작자의 권리	www.kpf.or.kr
 공공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저작권법」상 권리	www.kcisa.kr www.alright.or.kr

⑥ 저작물의 이용

한국문화정보원 신탁 관리 저작물

| 세종대왕 동상

조회수 : 3328 | 등록날짜 : 2012-12-13 | 저작자 : 김영원

신탁기관 : 서울특별시청

ICN

저작물 유형

파일형태

용량

사용료



| 충무공 이순신 장군상

조회수 : 5060 | 등록날짜 : 2014-04-11 | 저작자 : 김세중

신탁기관 : 서울특별시청

ICN

C-2004-004692

저작물 유형

미술저작물

파일형태

-

용량

-

사용료

유료

이용허락 신청서

☎ 구매문의 : 1670-0052(내선4번)



7 저작재산권의 제한 (법 제23-38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업무상 이용이 안됨



공개적 정치적 연설
편집 이용은 안됨



학교교육목적
교과용 도서, 시험문제



시사보도
시사적 기사, 논설 복제



공표된 저작물 인용



도서관 자료 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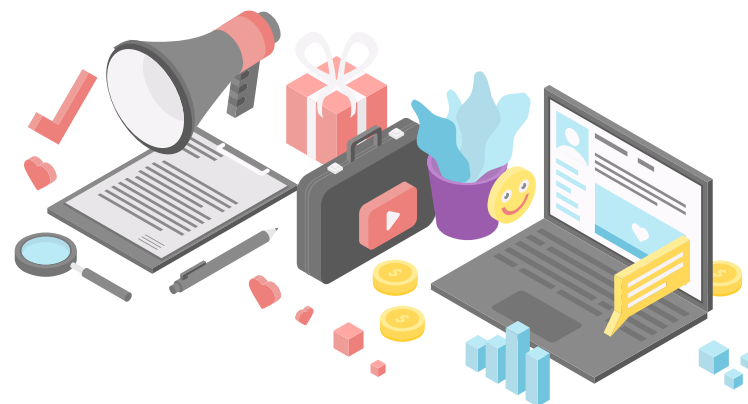


점자, 수화 변환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을 위함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성립요건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그 밖의
 공표된 저작물

주종관계 -
 시장 수요의 대체성
 정당한 범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
 (다른 목적도 포함될 수 있음,
 다만 '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함)

인용목적, 출처명시,
 개작인용·요약인용 문제
 공정한 관행

대법원 2011도5835 판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
(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 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중략)
- ✓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 지나치게 많이 인용하거나 전부 인용하여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됨)

대법원 2012도10786 판결

영리적 이용의 경우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

- ✓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

적법

러브레터 사건 (2004카합344)



**인용영화의 등장인물이
비디오(피인용 영화)를 시청하는 장면,
총 110분에 달하는 인용영화의
총 상영시간 중 불과 30초 인용한 것은
적법한 인용**

위법

스타 UCC 사건 (2007가합18479)



**프로그램에서 연기자 이순재씨가
출연한 영화 중 일부 장면 3분 정도 방영,
상업적 이용이고 유료 방송인 점,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렵지 않은 점 등을 고려,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음**



인용 시 주의점

비영리적 이용, 공익적 이용이 요건은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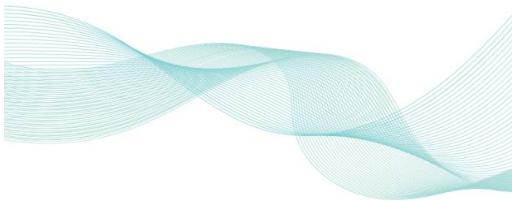
유료 판매 이미지, 영상은 분쟁 가능성 있음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판단 요소

1. 이용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4. 저작물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 네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 저작물 이용 경위, 방법 등 추가 사항 고려 가능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판결)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2026. 2.



공정이용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범용AI 파운데이션 모델

1. 이용목적 및 성격
: 특정 게시물이나 도서의 표현을 재현, 대체하지 않고 범용 대화 생성 (동일 유사 결과물 비생성 기술적 조치)
2. 저작물의 종류
: 사실,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한 짧은 문구 등 창작성 낮은 경우
3. 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사용된 양과 중요도)
: 1요소에서 인정된 이용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 이용
4. 시장 영향
: 원저작물 열람, 판매 실질적 대체 않는 경우, 저작권자 확인 힘든 경우

◆ 응용 AI 서비스

- 공공데이터 기반 비영리 AI 학습
: 연구 등 비영리 목적으로 공공데이터 활용, 원저작물의 판매 손해나 이용허락 기회 훼손 가능성 낮음
- 오픈액세스 (Open Access) 논문으로 과학기술 요약 AI 개발
: 변형적, 비영리적 목적으로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저작물 활용, 원저작물 대체, 약화 가능성 낮음
- 이공계 논문의 데이터 분석 AI 개발
: 변형적 이용, 데이터 부분만 활용, 기존 논문 소비에 미치는 영향 미미함

⑧ 출처의 명시

출처표시 의무



1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 34조 및 제35조의2 부터 35조의4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저작권법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7조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출처 표시 가이드 예시

출판물



출판물의 표지 또는
내부에 출처 표시

영상물



엔딩크레딧 또는
자막 등으로 출처 표시

음원



디지털 파일 또는
파일명에 출처 표시

사진



사진 내 적절한 위치에
식별 가능한 출처 표시
(곤란한 경우 사진 하단에 표시)

제품



제품 디자인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표기
(또는 패키지에 표기)

※ 출처는 제3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하며, 저작물의 특성상 출처 표시로 인한 이용의 곤란함이 우려될 경우 저작자 동의 후 표기 방법, 위치 등의 조절 가능

⑨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

- 1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 2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제41조

(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 1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구분		기산	보호기간
공공기관 등의 단독저작물		공표시	70년
공공기관 등의 공동저작물	회사, 법인 등 업무상저작물을 창작하는 자와의 공동저작물	공표시	
	개인과의 공동저작물	저작자 사후	
위탁 또는 양도에 의한 공공저작물	수탁자 또는 양도인이 회사, 법인 등 업무상 저작물을 창작하는 자	공표시	
	수탁자 또는 양도인이 개인인 경우	저작자 사후	
영상저작물 (제 42조)		공표시	

제44조

(보호기간의 기산)

- 1 이 관에 규정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10 저작권 분쟁 해결 제도

» 저작권 분쟁 조정 및 알선 제도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 알선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알선위원 1인에 의한
조언과 타협 권유를 통하여 당사자 간의 화해 유도

분쟁 조정

분쟁 당사자 간의 이해 관계를 법적 기준에 따라서
절충, 타협시켜 화해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

구분	분쟁 알선	분쟁 조정
대상	저작권 관련 분쟁	
조정부	1인	1인 또는 3인으로 구성
신청비용	무료	1~10만원
처리기한	평균 2개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성립시 효력	민법상 화해(계약)	재판상 화해(법원의 확정판 결과 동일)
장점	전문성, 신속성, 경제성	전문성, 신속성, 경제성, 비밀유지

10 저작권 분쟁 해결 제도

형사상 제재

권리 침해죄

제136조 :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①항)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②항)

예시 :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명예를 훼손

부정발행죄 등

제137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예시 :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

출처명시 위반죄 등

제138조 : 500만원 이하의 벌금

예시 : 초상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초상사진을 이용 /
출판물의 재출판시 저작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민사상 구제제도

침해금지 청구

제123조 제1항 : 침해 행위의 정지청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

제123조 제2항 : 침해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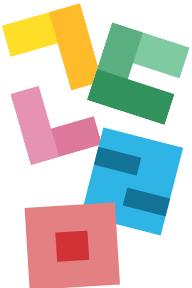
손해배상 청구

제125조 : 권리 침해행위 +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 위법성 + 손해발생

명예회복

제127조 :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또는 이에 갈음하여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

» 서체(또는 이미지) 침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폰트 도안
저작물성 부정
보호대상 아님





폰트 파일
저작물성 긍정
보호대상



※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대처방안

양벌규정(제141조)	외주제작	조정제도 이용	지급명령
직원이 불법다운로드 받은 경우, 기관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저작권 침해 책임은 제작자에게 있음 “안심글꼴 사용 지시”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분쟁발생	2주 이내 이의신청

» 저작권 분쟁 사례



주크(ZOOK)는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에 한하여 **무료 서비스**
피의자 회사의 직원들이 라이선스 구매없이 주크를 다운받아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 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

“피의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허락 범위를 초과해**
업무상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피의자가 이 사건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무혐의 처분(민사상 배상 책임 가능성 있음)

저작권 이용 시 주의점



상업적 용도로 SW, 서체, 이미지 등을 이용하는 경우
사전에 저작권 및 라이선스 관계를 확인

SW, 서체, 이미지 등을 저작물로 인정
내부 규정을 만들고 관리

»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머드축제 포스터 사건

사실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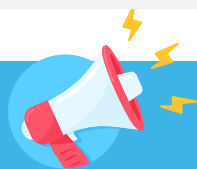
A씨는 2011년 해당 지자체가 개최한 머드축제에 참가한 것은 맞지만,
촬영하는지 몰랐고 촬영에 동의한 적도 없었음. 이에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지자체와 머드축제 조직위는 A씨의 사진을 사용하면서

사진 제공자인 오씨에게 초상권 동의 유무를 문의하는 등

A씨의 초상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300만원을 A씨에게 배상하라.



초상 사진 이용 시 주의점

초상이용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

직원, 대표자, 기관의 장 모임·협약, 발제자·강연자 등은 묵시적 동의 추정 여부 검토



동의를 구하지 못한 인물 사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

공공누리 누리집
(www.koglor.kr)
자료실 85번 참고

초상 이용 동의서 (샘플)

본인은(기관)을 비롯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기타 간행물 등에 본인의 초상이 도화, 사진, 영상 등의 매체를 통해 복제, 배포, 공중송신,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공개되거나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 . . .

(성명) (인)
(연락처)
(주소)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소속, 주소 등의 기본 정보
2.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초상 공개, 사용 등 의사표시 확인
3.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시부터 사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

귀중

공모전 불공정 약관 시정 요구(공정위)

입상작에 대해 **별도** **협의로** 저작권 취득 또는 이용허락 필요



잘못된 예

수상작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은 **주최측**에 귀속한다.

수정 예시

출품된 작품의 저작권은 **응모자(창작자)**에게 있다.
주최자는 입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정당한 대가 지급을 전제로**
우선적으로 **양수**할 수 있다. 이 때, 양도 여부, 범위 및 그 대가에
대해서는 추후 입상자(저작자)와 별도 합의를 통해 정한다



잘못된 예

주최 측은 수상작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수정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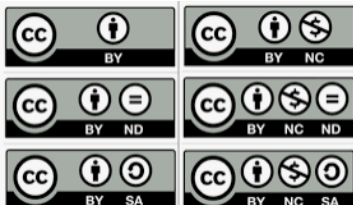
주최자는 입상작을 **비영리·공익적 목적**으로 발표일로부터
()년간 복제·배포·공중송신할 수 있다.

응모작을 접수할 때 응모작 반환 여부에 대한 응모자의 의사 확인 필요

11 자유이용 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

✓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공공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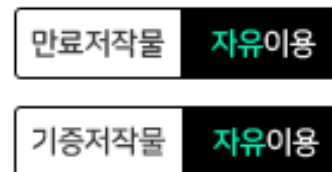
✓ KOGL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공공저작물에 적용

공유마당

✓ 저작권 만료 저작물 / 기증 저작물



이용자는 권리자가 미리 밝혀놓은 이용조건을 준수하면
별도로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음

만료 저작물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기증 저작물

다른 이들이 저작권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 저작권을 기증

예시) 2005년 고(故) 안익태 선생의 유족들이 기증한 '애국가'

Creative Commons License, <https://ccl.cckorea.org/>공공누리 <http://www.kogl.or.kr/>공유마당 <https://gongu.copyright.or.kr/>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 및
지원사업 소개

강의자 : 김민들레 책임

III 공공저작물 개방 지원사업

목차

1. 신유형 공공저작물 개방 지원
2. 공공저작물 저작권 확보 지원
3. 공공저작물 디지털 전환구축 지원



① 신유형 공공저작물 개방 지원사업

» 사업 개요

사업 목적

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학습데이터 등으로 개방하기 위해 공공누리 신유형 적용 확대

- 공공누리 신유형 적용 공공저작물 확대하여 AI 학습데이터 개방
- 기존 공공저작물 정비 및 권리검토를 통해 신유형 부착 신속 확대
- 신유형 적용 공공저작물의 신뢰도 및 활용도 제고

지원대상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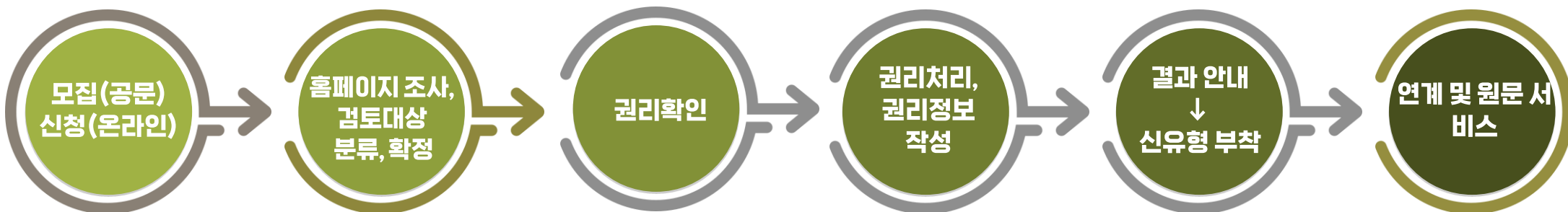
선착순 100개 기관(/기관별 1,000건*수량 변동 가능)

접수 : ~ 5월(이후 수시 협의)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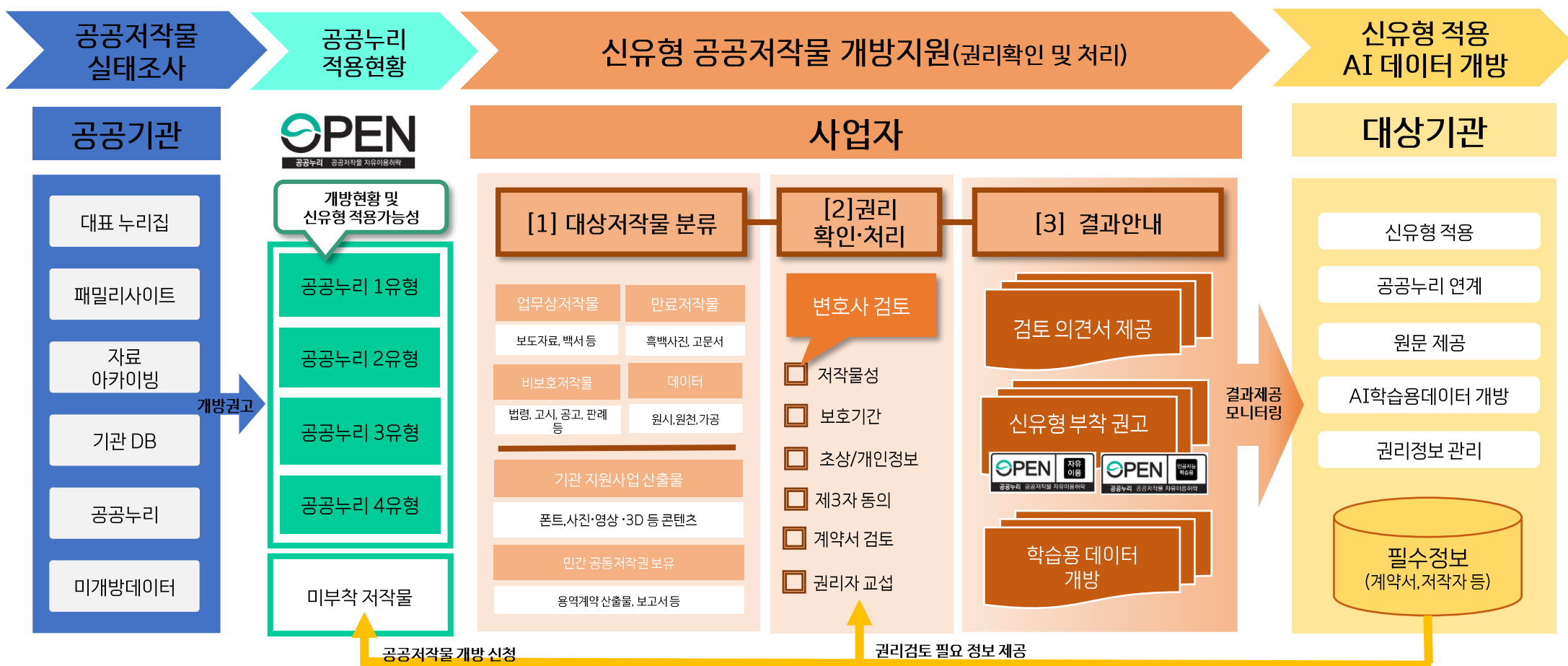
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홈페이지 게시물)의 권리관계(저작권, 공공누리 유형, 초상권/개인정보 등)를 저작권 전문 변호사가 직접 검토(권리확인, 권리처리)하고 공공누리신유형 부착하여 개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추진절차



1 신유형 공공저작물 개방 지원사업

» 프로세스



① 신유형 공공저작물 개방 지원사업

» 지원 내용

실태조사

- ✓ 홈페이지 내 게시물 목록 추출 및 파악
(보도자료, 공고문, 사진, 영상 등)
- ✓ 검토 대상 저작물 분류(확인/처리) 및 확정

권리 확인

- ✓ 저작물성, 권리 검토 : 업무상, 만료
- ✓ 0유형 즉시 부착 가부 판단
기존 유형 부착 / 미부착 → 신유형 부착

권리 처리(계약서 등 검토)

- ✓ 저작권 전부 보유 : 신유형 적용 동의
- ✓ 저작권 일부/공동 보유 : 양도계약, 개방동의
원/공동저작권자 교섭하여 체결 지원

권리정보(권리처리 시)

- ✓ 권리처리 완료 및 확보한 원문 대상
- ✓ 저작권자, 생산연도, 유형 등 20종

공공누리 연계, 원문 서비스

- ✓ 원문 등록 및 다운로드 서비스
- ✓ 공공누리 연계 및 검색 서비스

개방지원서비스

- ✓ 관리체계진단
- ✓ 법률컨설팅(의견서) 및 상담
- ✓ 맞춤형 방문교육

» 협조 사항

목록 추출 및 확정



- ✓ 검토 대상 게시판의
게시물 목록 추출 및 확
정(정보화부서 협조)

권리관계 자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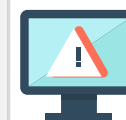
- ✓ 검토에 필요한 계약서
등 자료 및 저작권자
정보 제공

검토 결과 동의



- ✓ 검토 결과에 따라
신유형 개방 동의

신유형 부착



- ✓ 신유형 부착
- ✓ 공공누리 연계
- ✓ 공공누리 원문 제공

실태조사

권리확인,처리

KCISA 한국문화정보원

화면크기 + - • 홈으로 • 사이트맵 • ENGLISH 운영사이트 바로가기

[운영사이트 바로가기](#)

사업안내

알림마당

정보마당

정보공개

고객마당

유리·인권경영

문정원소개

문화 AI·디지털 전환
상담센터

국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문화 디지털 혁신 시대
한국문화정보원이 함께합니다

**권리확인/처리 대상 메타데이터(게시물 단위) 추
출,
권리관계 자료(처리 시) 제공**

	A	B	C	D	E	F	G	H	I	J		O	P	Q	
							조식음	유무	현행				유형별/MTN 업무(연간가액 100개 이상 해당)		
1	순번	사실관계	해설방법	제시방법/과제고	주요순번	제시방법/순번	수량	저작물 유형	공표유무	무작위	특성	진행률	저작물 유형	특성	진행률
2	1	사실판단	사실판단	제1지	제1지	제1지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3	2						2/26	14년 12월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4	3						5/3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5	4						9/3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6	5						4/15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7	6						6/69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8	7						2/64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9	8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10	9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11	10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12	11						2/7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13	12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14	13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15	14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16	15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17	16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18	17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19	18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20	19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21	20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22	21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23	22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24	23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25	24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26	25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27	26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28	27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29	28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30	29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31	30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32	31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33	32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34	33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35	34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36	35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37	36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38	37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39	38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40	39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41	40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42	41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43	42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44	43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45	44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46	45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47	46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48	47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49	48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50	49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51	50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52	51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53	52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54	53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55	54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56	55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57	56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58	57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59	58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60	59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61	60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62	61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63	62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64	63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65	64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66	65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67	66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68	67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69	68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70	69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71	70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72	71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73	72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74	73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75	74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76	75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77	76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78	77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79	78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80	79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81	80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82	81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83	82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84	83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85	84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86	85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87	86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88	87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89	88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90	89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91	90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92	91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93	92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94	93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95	94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96	95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97	96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98	97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99	98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100	99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101	100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102	101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103	102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104	103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105	104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106	105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107	106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108	107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109	108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110	109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111	110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112	111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113	112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114	113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115	114						1/21	미주작				충돌률	업무상저작물	이러저 저작성 확인 필요	충돌률
116	115						1/21	미주작							

공공누리 서비스 메타데이터

공공저작물 권리정보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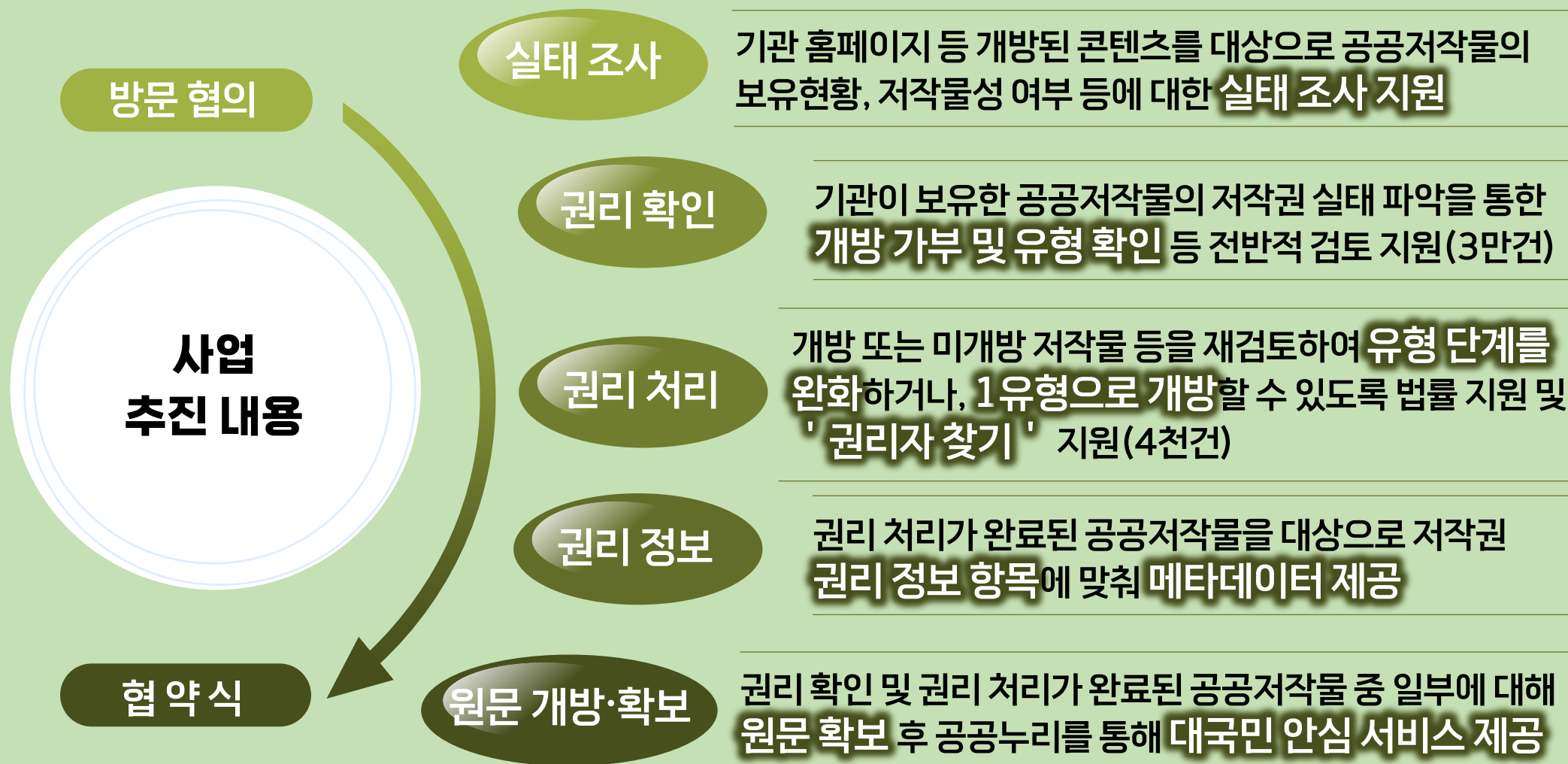
[illegible][illegible]

검토의견서 및 권리정보 작성

② 공공저작물 저작권 확보 지원 사업

» 사업 개요

- ▶▶▶ 대 상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준용기관 등(10개 기관 내외)
- ▶▶▶ 사업 목적 :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확보를 위한 안전한 공공저작물 개방
AI 학습을 위한 원천콘텐츠 확보 및 개방
- ▶▶▶ 모집 시기 : 연 1회 (연초 공문 발송)





사례1 ○○시 공공저작물 배경

**기관 요구사항 : 기관 주최 공모전 출품 사진
공공누리 유형으로 개방 요청**

개발 유형 : 공공누리 미부착

권리관계 현황

- 저작권자(공모전 당선자)와 관련된 권리관계 자료 (양도계약서 체결 여부) 확인
- 총 18점 당선작 중 8점 저작권 양도계약 여부 확인

○○ 기관 공공저작물 권리처리 과정



각 권리자별

저작권 양도계약서 검토

[illegible]

**공공누리
1유형 개방**

저작권 양도 계약 사례(용역사업)



사례1 ○○기관 공공저작물 배경

기관 요구사항 : 기관 운영 사이트 내 콘텐츠를 공공누리 유형으로 개방 요청

개방 유형 : 공공누리 미부착, 4유형

권리관계 현황

- 저작권과 관련된 자료(과업지시서)를 통해 **저작권자(단체) 확인**
- 일부 직원 촬영여부 확인

○○ 기관 공공저작물 권리처리 과정

권리자(산학협력단) 교섭 및
저작권 양도 처리

I. 과업개요

1. 과업명 : '23년도 해양저서생물기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운영 사업.
- 설비증, 실험동물, 간극동물, 현형동물, 단각류.
2. 과업 필요성 및 목적.
○ 해양생물자원원에 따라 지정된 해양생물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체계적 운영 필요.
○ 국가 해양생물자원의 통합적 관리 및 국가 자산화 확대.
3. 과업기간 : 계약일 ~ 2023.12.31.
4. 소요예산 : 금 사익이천육백만 원정(426,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II. 과업내용

1. 과업 범위.
○ 「해양수산생물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수산생물자원의 수집·등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해양수산생물자원의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해양수산생물자원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수산생물자원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과업 세부내용.
○ 해양생물자원의 채집의 발굴 및 확보.

저작물 저작권양도 양도 협약서

※ 저작재산권 양도 취지

○ 저작인접권 제24조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규정 2014. 07. 01부터 시행되고 공중누리(이하 '제정 및 이용규정'에 관한 법률이 2013. 10. 31.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종래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을 종래 수행자로부터 저작권양도를 양도받아 국민의 공공정보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창조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다만,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게 양도하여도 창작물 소유권, 공표권, 정정표시권 등 저작인접권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양도자'라 한다)는 양자가 체결한 용역계약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저작재산권 양도협약을 체결한다.

□ **저작물 표시**

○ 기간 : 2019. 1. 1. ~ 2024. 12. 31.

○ 대상 저작물 : 기탁등록보존기관지침 및 8&D사업에 따른 해양생물이미지(별첨)

□ **양수자**

○ 기관명 :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 (인)

○ 주소 :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안로 101번길 75



공공누리
1유형 개방

[그림책 숲, 이야기를 만나다] 2025년 1-2월 도서 목록

■ 도서 선정 기준 : 새로운 한 해를 맞아 목표나 시작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 전달하는 도서

연번	서명	저자명	출판사	주요 내용
1	덕담 : 새해, 너를 위한 기도	서정홍 글 · 박수진 그림	다림	<덕담>에는 아이와 함께하는 다양한 어른들의 모습이 나와요. 함께 눈을 구경하고, 함께 떡국을 먹고, 함께 전통 놀이를 해요. 다정한 손길로 아이의 머리를 묶어 주는 모습, 연을 날리는 아이의 등을 든든하게 받쳐 주는 모습에서 아이를 향한 어른들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요.
2	그래도 꼭 해 볼 거야!	킴 힐아트 글 · 장미란 번역	책읽는곰	누가 뭐래도 난 나를 믿어! 왕왕은 손톱만큼 작은 파리와요. 왕왕은 제 몸을 비웃는 친구들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길을 나서지요. 용이 있다면, '할 수 없다'는 말보다는 '할 수 있다'는 말에 귀 기울이고 곧바로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거든요.
3	넌 할 수 있어! 마법의 단어 아직	마리나 지오티 글/그림 · 김연경 번역	책과콩나무	주인공은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해서,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해서, 달리기를 잘하지 못해서 한숨을 쉬지요. 그때마다 아이 길을 줄을 따라다니는 상상 속 친구, 배짱이는 이렇게 말해 줍니다. "아직은 그렇지!"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고 나서야, 아이는 배짱이가 했던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실패는 노력을 했다는 증거이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다 보면 분명히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주세요.
4	자유로 가는 길	권희주 글	그린북	0세부터 100세까지 함께 모든 어른과 '어른' 그림책입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꿈을 찾아 달리고 있는 모든 이들의 이야기죠. '나'라는 정체성과 씨름하며 자신의 진로와 욕망을 고민하는 '슈퍼미', 생활과 예술이라는 시소 위에 올라탄 생계형 예술가 등 꿈과 현실 사이에서 치열하게 고민해 본 독자라면 누구나 '자유'로 가는 길의 험난하고도 아름다운 여정에 공감하고 위로받을 것입니다.
5	다시 그러도 괜찮아	김주경 글	씨도북	어느 날 아이가 누군가 그려 놓은 선을 발견했어요. 기다란 선을 계속 따라가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새로운 길을 나서는 아이를 향한 따뜻한 목소리를 담은 <다시 그러도 괜찮아>는 선을 따라가며 성장하고 마침내 자신만의 색을 찾아가는 과정을 감각적인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6	넘어	김지연 글	북연도	한 조동하고 진정되어 놀이하기 전에 앞에서 무릎꿇을 주저하고 있는 아이에게, 천장을 밟아 외친 용원의 소리 '넘어'를 모티브로 한 그림책입니다. 세상에는 자신을 믿어 주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상처를 받거나 좌절의 상황에서도 그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용으로워한 만큼 소외되고 대용의 상처가 많은 요즘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성령님이 외친 용원의 소리 '넘어'가 아닐까요?
7	가고 싶은 대로	장 이브 카스테르만 글/그림 · 하리라 번역	파랑새재	아이들의 마음에 자유로운 해방감을 전달하는 그림책입니다. '돌라운' 일로 가득 찬 세상에 나가면 갈 수 있는 길이 아주 많고, 그 길을 중에서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선택해서 마음껏 달릴 수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는 막다른 곳에 다다르더라도 새로운 길을 만들어 달리면 되니까 꿈과 용기를 가지라고 응원해 줍니다. 아이들은 자유로울 때 더 잘 자란다는 말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사례3 구립도서관 공공저작물 배경

기관 요구사항 : 위탁운영기관의 산출물에 대한
공공누리 유형 확인 요청

개방 유형 : 공공누리 미부착

권리관계 현황

- 위탁운영기관 소속 직원의 제작 여부 확인
- 위탁운영기관이 아닌 도서관에 저작권 귀속 필요
- 저작도구(미리캔버스,유튜브) 활용 저작물의 권리관계 자문



○○도 공공저작물 권리처리 과정

저작권 위임 확인서
체결 처리

방배송환경도서관 공공누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위임 확인서

(사)에코나무(이하 '에코나무')는 시초구로부터 위탁받아 시초구립 방배송환경도서관(이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에코나무'는 도서관의 공공성과 공익적 가치를 존중하며, 도서관 직원에 직무상 생산하는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 및 관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제1조 (위임의 취지)

'에코나무'는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모든 직무상 저작물(문서, 사진, 영상, 오디오자료, 홍보물, 디자인 등)에 관한 저작권을 '도서관'에 위임한다. 이는 '도서관'이 공공기관으로서 해당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누리 제도를 적용·공유하기 위함이다.

제2조 (저작권 귀속 및 권한 위임)

1. '도서관' 직원이 직무상 작성한 저작물의 권리 및 활용 권한을 시초구립 방배송환경도서관에 전적으로 위임한다.
2. '에코나무'는 '도서관'의 공공누리 등록 및 공개제도 행위를 전적으로 승인한다.
3. '에코나무'는 '도서관'이 생산한 저작물을 2차적으로 활용하거나 배포할 경우, 출처(시초구립 방배송환경도서관)를 명시한다.

제3조 (예외)

'에코나무'의 자체사업(에코나무 명의의 독립사업)으로 별도 계약한 콘텐츠의 경우 저작권의 귀속은 '에코나무'로 정한다.

제4조 (유효기간)

1. 본 확인서는 방배송환경도서관의 위탁운영기간 동안 유효하다.
2. 위탁 종료 후에도 제2조의 저작권 위임 조항은 그 효력을 지속한다.



공공누리
1유형 개방



사례3 ○○도 공공저작물 배경

기관 요구사항 : 소속기관의 산출물에 대한
공공누리 유형 확인 요청

개방 유형 : 공공누리 2유형

권리관계 현황

- 기관 소속 연구원이 촬영한 사진
- 소속기관 운영 아카이브에서 서비스 중



○○도 공공저작물 권리처리 과정

해당 저작물에 대해 소속기관 문의 → ○○기관 소속 연구원의 촬영 여부 확인

업무상 저작물로서의 조건 확인 → ① ~ ③ 조건 충족 확인

① ○○시 기획 ② ○○시 근무자가 업무상 촬영
③ ○○시 명의로 공표 ④ ○○시와 촬영 직원 간 계약서
또는 근무 규칙 등에서 다른 정함이 없어야 함.

④번의 방법 보다 확실하고 안전한 저작권 권리 확보를 위
하여 '저작권 확인 및 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사진촬영
직원에게 받아서 개방 확인하는 것으로 결정

사례2 ○○기관 공공저작물 배경

기관 요구사항 : 저작권 양도 계약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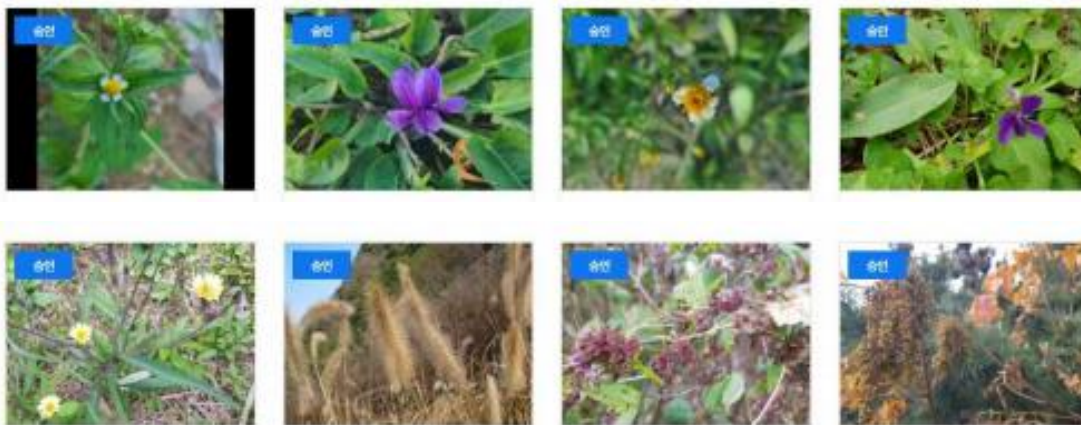
개방 유형 : **미개방**

권리관계 현황

- 시민이 촬영한 사진을 **아카이브 공개만 동의**
- 개방을 위해 추가적인 권리처리 필요

- 총 9명 중 8명과 연락

-> 최종 7명과 이용허락 동의서, 양도계약 체결



○○ 기관 공공저작물 권리처리 과정

권리자(개인) 교섭 및
저작권 양도, 이용허락 처리

저작권 이용 동의서

서약인은 전국자연환경조사 시민참여조사원으로서 EcoBank에 등록된 사진
저작권재산권의 비상업적 이용에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제1조(사용허락)

- 본 동의에 의거, 사용허락이 되는 저작물은 EcoBank에 등록된 사진
자료의 원본 및 복제본으로 한다.
- 동의를 얻은 저작물은 제2조의 사용범위 내에 한하여 사용한다.
- 원 저작물을 훼손화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
등을 허락한다.
- “국립생태원”은 동의를 얻은 저작물의 사용권을 어떠한 이유로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저작권자가 내용변경이나 해지 등 의사표현을 별도로 하지 않는 경우,
기간의 제한 없이 이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2조(사용범위)

- 「시민참여 전국자연환경조사 자료집」 제작

제3조(사용허락의 표시)

- “국립생태원”은 본 동의에 의거, 사용허락이 되는 출판물에 저작권
자의 실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제1항·제2항·제3항



저작권양도 및 공공누리이용제공통동의서

_____ (주인공작품번호: _____)은 아래에 실려 저작재산권양도 및 공공누리이용제공통에 대
해 동의합니다.

- 아 래 -

- 본인은 본인이 창작한 저작물 중 국립생태원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네코뱅크
(http://www.nie-ecobank.kr)” 및 “국립자연환경조사” 게시(원상복구·원상복구) 및 동등이 생
기는 경우에는 동일 또는 유사한 성격의 게시(원상복구·원상복구)나 향후 게시하는 사진 및
영상에 포함하여 “본인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저작권 관련 권징(저작권료)은
영원히 포함하여 국립생태원에 양도합니다.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본인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가. 국립생태원은 본인 저작물을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일단 공공에 이용할 수 있
습니다.
나. 향후 정부 정책과 국립생태원의 지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국립생태원의 일부
를 이전하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도 국립생태원과 같은 권한을 갖습니다.
다. 향후 공공누리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본 계약 체결 시점의 공공누리 제1유형과
같은 조건으로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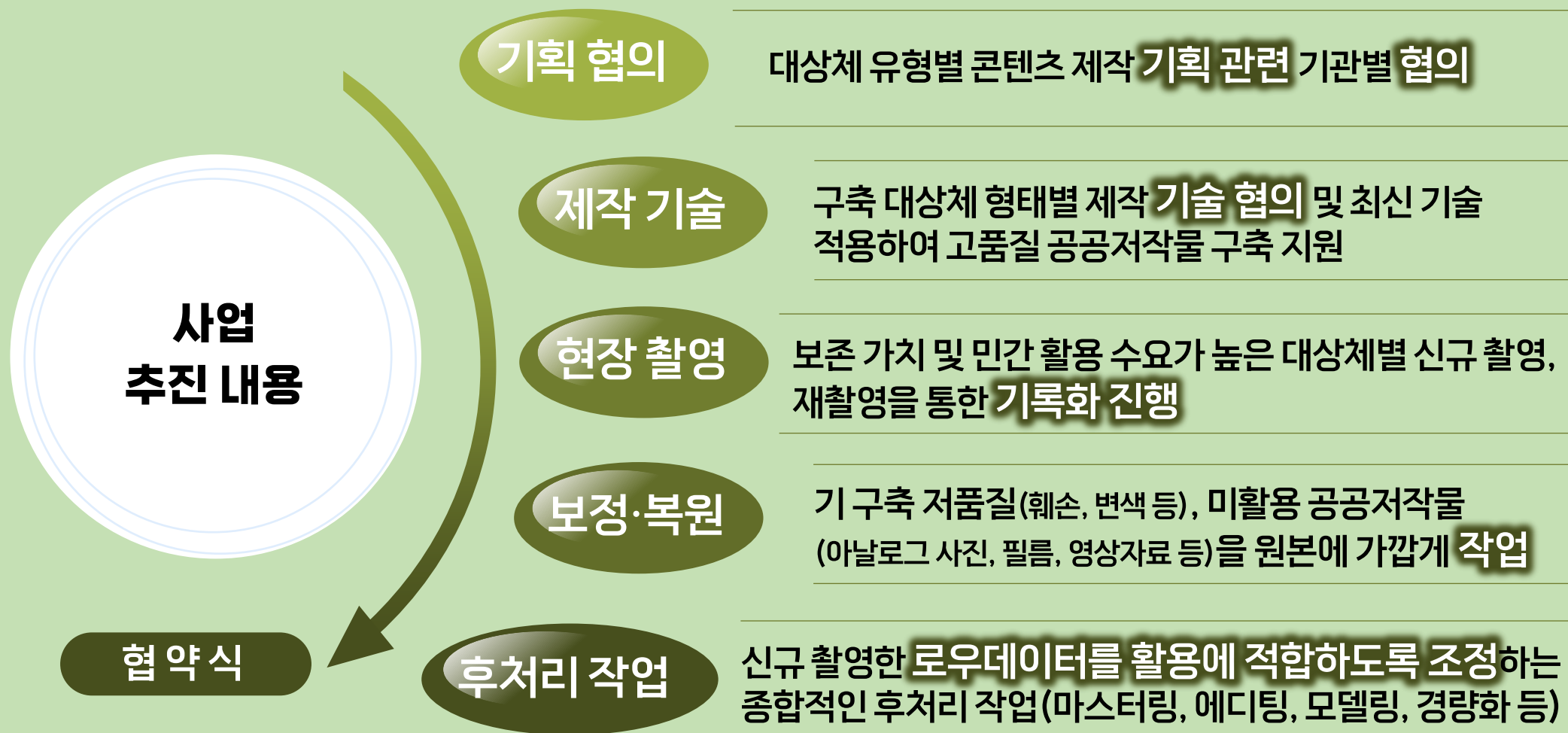


공공누리
1유형 개방

③ 공공저작물 디지털 전환 구축 사업

» 사업 개요

- ▶▶▶ 대상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준용기관 등(5-6개 기관)
- ▶▶▶ 사업 목적 : 활용도 높은 공공저작물의 디지털 콘텐츠 전환 지원 및 공공누리 제 0유형 및 1유형 콘텐츠 확보
- ▶▶▶ 모집 시기 : 연 1회 (연초 공문 발송)



③ 공공저작물 디지털 전환 구축 사업

» 재촬영

- ▶▶ 기구축 공공저작물 중 저작권 권리 관계가 복잡하거나, 원저작자와의 협의가 어려운 대상체를 재촬영하여 저작권을 새로이 획득하도록 지원
- ▶▶ 저품질, 저화질, 미활용 공공저작물(아날로그 사진, 필름, 영상 자료 등)을 고화질로 디지털화, 재보정·복원

» 신규 촬영

- ▶▶ 활용도 높은 공공저작물 구축 및 개방을 위해, 기획 단계에서부터 협업하여 대상체 특성에 맞는 기술 적용을 통해 기관의 수요에 맞는 신규 디지털 콘텐츠 제작
- ▶▶ 민간 활용 수요가 높은 콘텐츠(관광, 여행, 역사, 동·식물 등) 및 보존 가치가 높은 공공저작물(세계자연유산, 문화유산 등) 신규 제작

» 디지털 리마스터링 (보정·복원)

▶▶▶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 및 선명도 조절, 색상 복원, 물체 제거 등 후처리작업을 통해 고품질 디지털 리마스터링(보정·복원)을 지원하여, 품질 개선 및 자료 관리 편의성 증대**

구축프로세스 - 디지털 복원보정 후처리 과정



원본

노출, 화이트밸런스, 색감보정



기울기조정



노이즈, 먼지 등 제거(강우흔적 등)



최종본

이미지 점검
이미지 고화질 변환
TIFF, JPG 저장

보정전(변색)



변색 보정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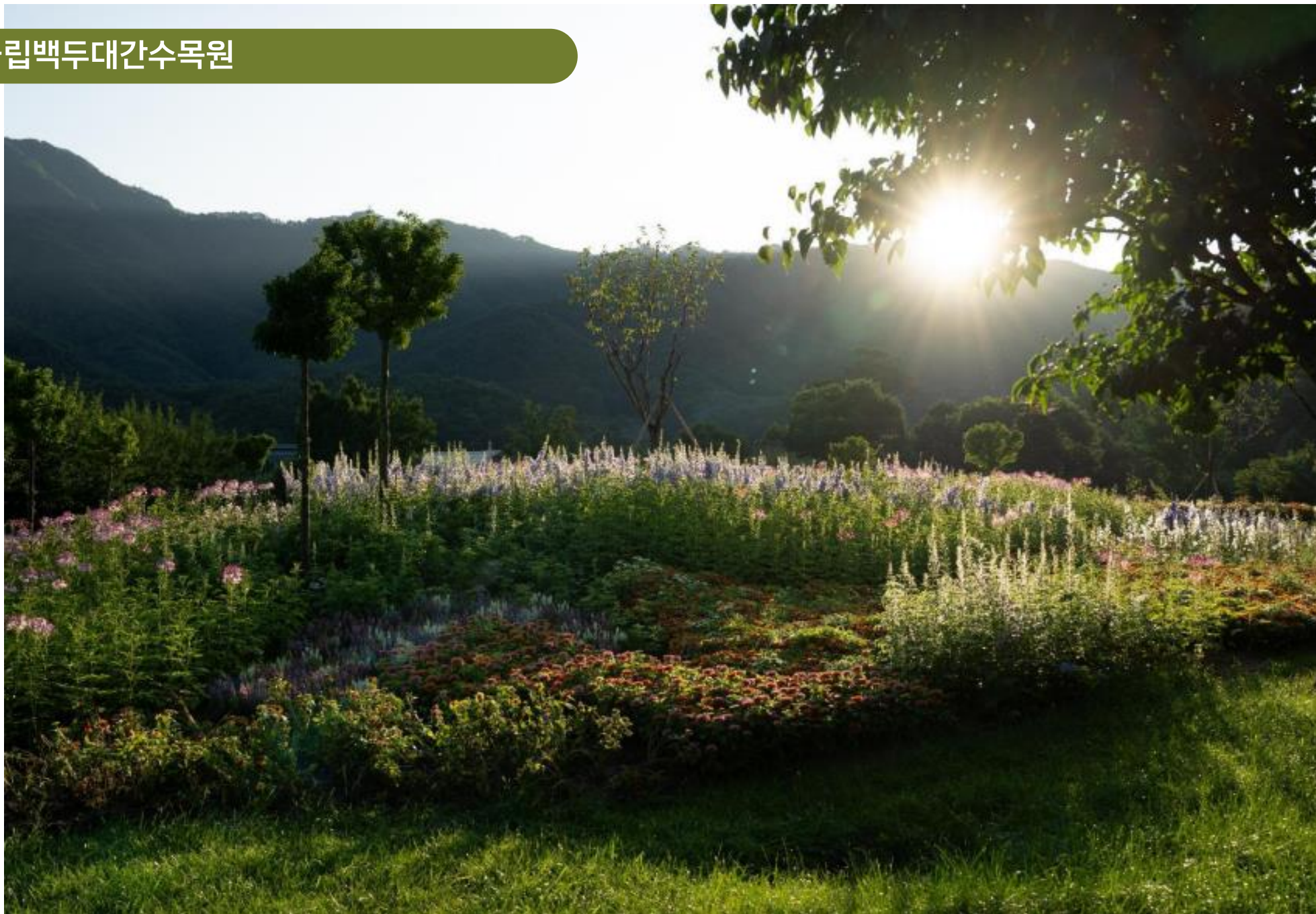
» 제주콘텐츠진흥원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코레옵시스



꼬리조팝나무



원추리



국화



아스터



데이지



» 충남문화관광재단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 국가유산청



서비스 신청 상시 접수/저작권법 상담 무료 지원

관리체계 진단



- ✓ 저작권 관리 현황 진단
- ✓ 관리기준 권고



법률상담 및 컨설팅



- ✓ 저작권 법률 자문
- ✓ 계약서 검토

권리확인 지원



- ✓ 검토의뢰 게시물
개방 가부 검토

상시상담
1670-0052

맞춤형 교육



- ✓ 전 직원 대상 방문교육
- ✓ 책임관 및 담당자 대상
수준별 소집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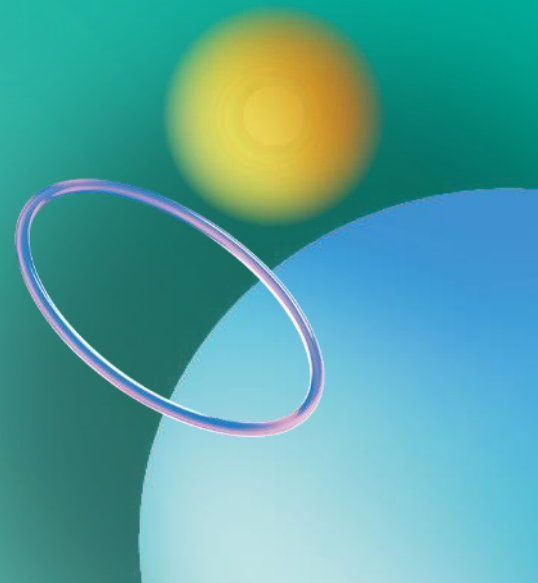
2026년 제 1차 공공저작물 책임관·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프로그램 순서

역량강화 연수 2일차

I 공공누리 실무

II 공공누리 사이트 연계 안내

III 지자체 합동 평가 지표 안내



한국문화정보원
저작권 및
공공 저작물 소개

강의자 : 최홍국 변호사

I 공공누리 제도

목차

1.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의 입법취지 및 정의
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의 근거
3. 공공누리(KOGL)
4. 공공저작물 어떻게 개방하지?
5. 공공저작물 개방 실전
 - Step1. 취득
 - Step1. 관리
 - Step1. 제공



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의 입법취지 및 정의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입법취지 [시행 2014.7.1] [법률 제12137호, 2013.12.30, 일부개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은 공익 목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제작된 저작물이므로
저작재산권의 보호를 배제하여 **납세자인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



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의 입법취지 및 정의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0054호, 2023.1.1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3조(정의)

◇ 공공저작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그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

◇ 자유이용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개별적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

◇ 적용대상

1. 국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국가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2.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제34조에 따른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제16호 나목에서 마목에 따른 공공기관에 준용(지침 제2조)
 -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

②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의 근거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조문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 ②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 ③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 ④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제111조까지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 2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의 근거

» 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3(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등)

조문

1 법 제 24조의 제2 제2항에 따른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자유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의 확대 방안
- ② 공공저작물 권리 귀속 명확화 등 이용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 ③ 공공저작물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 ④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교육, 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⑤ **자유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표시 기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
- ⑥ 공공저작물 자유이용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 ⑦ 그 밖에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이하 “중앙관서의 장등”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의2 제1항 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65조의8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9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체결 없이 해당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공공저작물을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체결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②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의 근거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54호, 2023.1.1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목적

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해 세부사항을 규정



제1장 [총칙]

목적 / 적용범위 / 정의 / 기본원칙



제2장 [공공저작물 취득]

저작권 귀속 / 저작권 등 권리처리



제3장 [공공저작물 관리]

담당자 지정 및 공표 / 저작권정보 구축 및 보존



제4장 [공공저작물 제공]

공공저작물 개방 / 공공저작물의 출판 및 발행 /
공공누리의 적용 / 공공저작권의 신탁 / 공공저작물의 제공중단 등
- 이하생략 -<http://www.kogl.or.kr>「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해설서를 통해 쉽게 이해해 볼까요?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00040호, 2026. 1. 28.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 중에서 국민들이 ‘자유이용 가능한 저작물’임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하는 표시

이용허락 유형	공공누리 마크	이용허락 범위
제1유형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가능
제2유형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가능
제3유형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금지
제4유형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금지
제0유형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없음(출처표시 포함)
AI유형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AI학습에 한하여 이용조건 없음(출처표시 포함)



제1~4유형

◇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때 꼭 출처 표시를 해주세요

근거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제20조(출처의 명시)

공공저작물 이용자는 법 제37조 및 공공누리 이용조건에 따라 해당 공공저작물의 출처 명시

(예시) “본 저작물은 ‘000(기관명)’에서 ‘0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0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000)’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000(기관명), 000(홈페이지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2,4유형

◇ 무료로 사용하면 비상업적 이용에 해당할까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9 2012고정4449판결

개요

도서출판사 대표가 유명작가인 피해자의 트위터 글 총 56개를 무단 복제, 전자책 파일 제작 및 자신 및 타 회사 전자책 app에 탑재하여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

판단

무료로 전자책 파일을 제공했다라도 이 제공행위가 app 홍보와 특정 사업체 광고를 위한 것이라면, **영리 목적의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 위반!**



제3,4유형

◇ 내용의 변형 및 변경, 2차적저작물 작성 금지

변형 및 변경

원저작물의 내용상 변경 및 형식의 변경 금지

(예시) 크롭(사진 일부분만 잘라서 사용) 및 보정 등

2차적저작물
작성 금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2차 창작 금지

(예시) 3유형이 적용된 지자체 <도민의 노래> 편곡 및 개작 등 행위 금지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00040호, 2026. 1. 28.

» 공공누리 신유형 [제0유형, AI유형] 신설 안내

공공누리 제0유형



누구나 조건없이 자유이용
: 상업적 이용, 변경 가능, 출처명시 의무 없음
기존 만료 공공저작물 표시-> 제0유형 전환



[예시]

- ✓ 업무상저작물 : 기관이 저작권 전부 보유한 보도자료, 간행물, 포스터 등에 대한 출처명시 생략 동의 시
- ✓ 만료저작물 : 사진저작물(1976년 이전), 무명/이명/관공서 등 발행 저작물(1962년 이전)
- ✓ 비보호저작물 : 저작권법 제7조 고시, 공고 등

공공누리 AI유형(1~4유형과 함께 부착)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자유이용
「AI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

1. 공공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산출물이 생성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 등 필요
2. 산출물이 공공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 출처명시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필요
3. 공공저작물을 학습한 인공지능 모델의 상업적 이용은 가능하나 공공저작물을 이용해 제작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재판매 금지

[예시] 기존 공공저작물 중 AI 학습 활용에 동의 시/
국가 중점 데이터에 우선 부착 예정

»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대상 체크리스트

☑️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가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에 해당
-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비보호저작물)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저작권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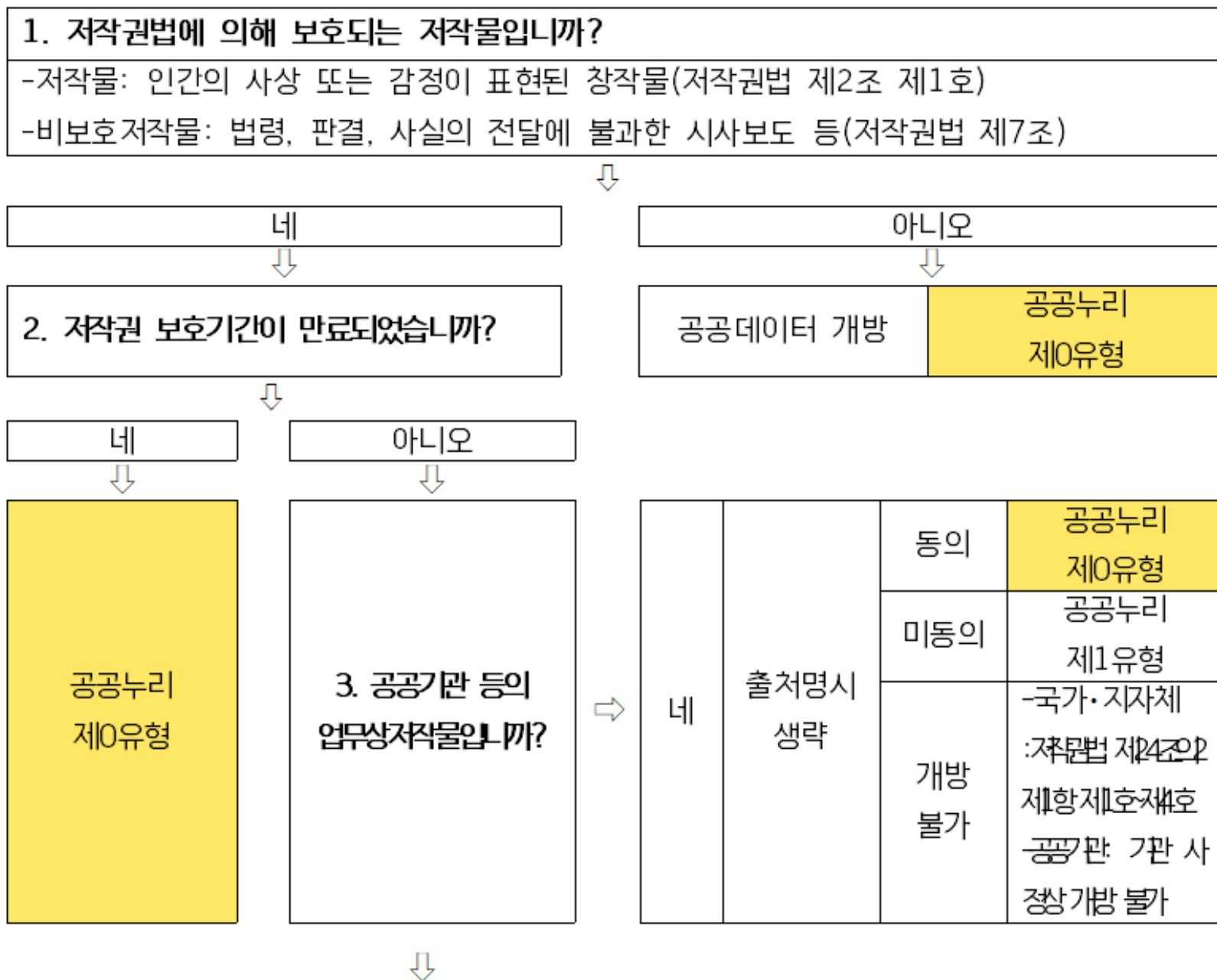
☑️ 공공기관 등이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가

-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여 원시적으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 계약을 통해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고 있는지

☑️ 공공누리 적용이 제한되는 사항이 있는가

- 초상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함(별도 이용허락 필요)
-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에 해당하면 개방 불가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 공공누리 신유형 적용 절차



» 공공누리 신유형 적용 절차

3. 공공기관 등의
업무상저작물입니까?



아니오



4. 계약에 의해 저작권권을
전부 보유하고 있습니까?



아니오

저작권권 일부 보유시
공동 보유자가 동의한 범위에 따라
공공누리 유형(0~4, AI) 적용
※**동의시 제0유형** 부착 가능
개방 불가
-공동 보유자 미동의
-공공기관 기관 시장상 개방 불가



네



출처명시 생략

동의

미동의

공공누리
제0유형

공공누리
제1유형

개방 불가

-국가·지자체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항제호제호

-공공기관 기관 시장상 개방 불가

» 공공누리 적용

☑ 공공누리 유형 선택

- 공공누리 제0유형 적용이 가능한 저작물

보도자료, 내부 보고서 등

- 업무상저작물(기관의 출처명시 생략 동의시)
-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받은 경우(기관의 출처명시 생략 동의시)
- 저작재산권 일부만 보유하고 있으나, 공공누리 제0유형 적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 비보호저작물(저작권법 제7조)

- 공공누리 제1유형 적용이 가능한 저작물

- 업무상 저작물
-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받은 경우
- 저작재산권 일부만 보유하고 있으나, 공공누리 제1유형 적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연구보고서,
용역 산출물 등

- 공공누리 제2~4유형 적용이 가능한 저작물

-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으나, 변경 또는 상업적 이용에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저작재산권 일부를 보유하고 있으나, 공공누리 제2~4유형 적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AI 학습용데이터
활용 동의 시
AI 유형 병행 부착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00040호, 2026. 1. 28.

» 보도자료 공공누리 신유형 적용 가이드

◇ 적용 원칙

(원칙) 저작권, 초상권 등 권리 처리 후 부착 (적극) 아래 표 참고하여 우선 적용

기관 보도자료 신유형 적용 가이드

판단 기준		유형 판단	
업무상저작물 추정 *기관 내부 작성 보도자료, 게시글 등	인물사진 없음/초상 비식별	제0유형	
	인물사진 있음 초상권	기관장 등 대표만 포함	제0유형
		직원, 외부 관련자 포함	기존 유형 + AI유형
		민간인 등 제3자 포함	기존 유형 유지
동의를 의한 개방 *포스터, 이미지 등	단순 이미지 등	제0유형(설명 자료, 사업 사례 등) / 제1유형+AI유형	
	복잡 이미지 등 저작권	기존 유형 유지 / 기존 유형 +AI유형	
저작권 미보유 추정		기존 유형 유지(미부착시 개방불가)	

④ 공공저작물 어떻게 개방하지?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기본원칙(지침 제4조)

공공저작물
제공 원칙

- ✓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함

공공저작물
관리 원칙

- ✓ 공공기관 등은 본 지침의 내용에 따른 공공저작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에서 지침을 수립한 기관 검색 가능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안)

제정 2000.00.00.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저작권법시행령」 제1조의3,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2-54호, 이하 “관리지침”에 의거, (해당기관명)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이 「저작권법」의 취지에 따라 관리·제공되어 민간이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저작물”이라 함은 (해당기관명)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권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2. “자유이용”이라 함은 (해당기관명)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일반 국민이 개별적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누리”라 함은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표시 기준을 말한다.

공공저작물 연간 관리계획 예시

수신 내부결재

제목 공공저작물 관리 및 개방 계획(안)

1. 개요

□ 추진배경

- 기관 업무 특성에 맞는 공공저작물 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공공저작물의 체계적 관리 및 민간 이용 활성화 도모
- 우리원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 중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 개방
- 민간부문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을 통한 새로운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

□ 관련 근거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2-54호
- 해당기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 내부규정 및 지침 마련 필요

④ 공공저작물 어떻게 개방하지?

» 공공저작물 관리 및 개방 3단계



⑤ 공공저작물 개방 실천 Step 1. 취득

» 저작권 귀속(지침 제5조)

공공기관 등의 명의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하거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공공기관 등에 귀속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등이 해당 공공저작물의 관리주체가 된다

기관(직원)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 취득

1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

2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해 작성

3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일 것

4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될 것

5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음



[예시]

1 용역계약(서)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 취득

2 저작권 양도 계약(서)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 취득

⑤ 공공저작물 개방 실천 Step 1. 취득

» 저작권 등 권리처리(지침 제6조)

- ① 공공기관 등이 제3자에게 창작을 의뢰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창작을 위한 의뢰계약서 또는 공동창작을 위한 계약서에 저작권의 귀속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 등은 국민의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저작물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을 취득하는 등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
- ③ 공공기관 등은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공공저작물에 대하여는 사후적인 권리처리를 통해 자유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계약 준비 단계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에
**저작재산권 양도에 관한
 사항 명시**

*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동소유와 달리 정함

계약서 작성 단계

계약상대자 선정 후
 용역계약체결 시/ 용역 완료 시
**저작권 양도 계약 체결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 공공누리 적용 동의 확보**

사후처리 단계

국민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을 위해
 사후적 권리처리가 필요한 경우,
**저작권 추가 확보(양도계약)
 / 공공누리 적용 동의 확보**

⑤ 공공저작물 개방 실천 Step 1. 취득

» 저작권 등 권리처리(지침 제6조)

계약서(문구)에 따른 저작권 귀속 예시

기관에 귀속된 저작권이 없으므로
사후적인 권리처리가 없다면
공공누리 유형 부착 불가

01

저작권에 대한 약정없이
저작물 제작 위탁

“제작업체에 저작권 귀속”

02

결과물은 ○○기관 소유로 함

“산출물의 소유권만 기관에 귀속”

03

저작재산권 일체를 양도함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양도인에게 귀속”

04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함

“전부 양수인(기관)에게 귀속”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시행 2021. 12.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 2021. 12. 1., 일부개정]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 _ 제0조(확인 및 보증)

✔ 양도인(용역사업자 및 위탁수행자 등)은 양수인(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 ① 대상저작물의 저작권 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 ②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 ③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
- ④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의 유무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 _ 제0조(면책 등)

✔ 저작권이나 상표권 기타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용역결과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또는 용역결과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등 용역 결과물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을”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해당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고,
“갑(기관)”을 전적으로 면책시켜야 한다.

공공누리 누리집에서
동의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http://www.kogLor.kr>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표준(안)

저작물 표시

- 저작물명:
- 대상 저작물 상세정보:

양수자

- 기관명:
- 주소:

양도자

- 가. 사업 책임자(대표자)**

 - ✔ 기관(개인)명 : (인)
 - ✔ 소속 :
 - ✔ 대표주소 및 연락처:

계약확약사항

- ④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는 그 소속 참여인력에게 이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000'는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와 소속 참여인력이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저작권의 양도 내용

- ✔ **제1조 (공통)**
 - ① ‘양도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양도자’가 제작한 저작물(보고서, 사진, 영상물, 음향, 일러스트, 도감, 공모전 입상작 등)에 대한 저작권재산권 일체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 및 2차 저작물 작성권을 ‘000’에게 양도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자’는 본 계약상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 **제2조 (확인 및 보증)**

‘양도자’가 본 용역(예)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000’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 ✔ **제3조 (저작권재산권의 이전등록)**

...

양식 참고(저작권재산권 양도계약서, 이용허락 계약서)

저작권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양도인 _____ (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저작권 양수인 _____ (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 _____ 에 관한 저작권(이하 “저작권재산권”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권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재산권으로 한다.

제목(제호) :

저작자 :

종별: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

권리: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방송권, ☐ 전송권, ☐ 디지털음성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제3조 (저작권재산권 양도범위)

본 계약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당사자가 합의한 범위 내의 저작권재산권으로 본다.

제4조 (양도 기간)

대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양도 기간은 _____ 년 월 일부터 _____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5조 (양도인의 의무)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2조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재산권을 양도한다.

(이하중략)

저작권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저작자 또는 저작권재산권 이용허락자 _____ (이하 “권리자”이라 함)과 저작권재산권 이용자 _____ (이하 “이용자”이라 함)는 아래 저작물 _____ 에 관한 저작권재산권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권재산권 이이용허락과 관련하여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이용허락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재산권으로 한다.

제목(제호) :

저작자 :

종별: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

권리: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방송권, ☐ 전송권, ☐ 디지털음성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제3조 (이용허락 기간)

대상저작물에서의 이용허락기간은 _____ 년 월 일부터 _____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허락자에게 제 5조 제2항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허락기간의 시작점인 _____ 년 월 일 이후에 지급한 경우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 기간은 사용료를 지급한 일자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5조 (권리자의 의무)

(1)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대상저작물에서 관하여 본 계약서 제2조에 따른 저작권재산권을 이용할 권리를 제3조의 기간 동안 비독점적으로 허락한다.

(이하중략)

문체부에서 배포(4종)
저작권재산권권 전부/
일부 양도 계약서
저작권재산권 독점적/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 저작자 표시:

- ▷ 기관(개인)명:
- ▷ 생년월일:
- ▷ 주소:

◎ 저작물 표시

- ▷ 저작물명:
- ▷ 상세정보:

◎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동의

- 본 기관(개인)명은 저작물명
- 기관명의 저작재산권(☐ 복
- ☐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

◎ 공공누리 적용 동의

- 본 기관(개인)명은 저작물명
- 아래 공공누리를 적용하여 제

공공누리	이용
제0유형	자유
제1유형	출처
제2유형	출처 명시+상
제3유형	출처 명시
제4유형	출처 명시+상

공공누리	이용조건	선택 (필수 택1)	AI유형 병행 (인공지능 학습에 한하여 자유이용)
제0유형	자유이용	☐	선택 불가 (인공지능 학습 가능)
제1유형	출처 명시	☐	☐
제2유형	출처 명시+상업적 이용 금지	☐	☐
제3유형	출처 명시+변경금지	☐	☐
제4유형	출처 명시+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금지	☐	☐

◎ 동일성유지권 행사 제한에 관한 동의

- 본 기관(개인)명은 저작물명에 대한 공공누리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연구결과 또는 명예의 심각한 훼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중략)

'26년 신규 양식

저작물 이용 동의를 받는 범위 선택

초 상 이 용 동 의 서

본인은 ○○○(기관명)을 비롯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기타 간행물 등에 본인의 초상이 도화, 사진, 영상 등의 매체를 통해 복제, 배포, 공중송신,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공개되거나 사용되는 것에 동의하며, 사용된 콘텐츠에 공공누리 제○유형을 적용하여 개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

(성명)

(인)

(연락처)

(주소)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활용 동의]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소속, 주소 등의 기본 정보
2.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초상 공개·사용 등 의사표시 확인
3.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시부터
사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

귀중

공공누리 적용 동의

공공누리 누리집에서
동의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http://www.kogl.or.kr>

» 공모전 수상작을 활용하기 위한 저작권 처리

수상작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상자로부터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 이용허락 동의 또는 저작권 양도 받아야 함

이용허락 동의

- ✓ 공모전 주최자는 해당 수상작에 대해 수상자로부터 허락받은 이용방법에 한하여 이용가능

* 수상작 활용 계획에 필요한 권리를 미리 정하여 모집요강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

저작권 양도

- ✓ 주최자는 수상작의 저작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받고자 하는 경우, 정당한 대가의 지급을 전제로 양도계약 체결 가능

* 단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 (저작권법 제45조)



공모전 주최자
(공공기관)

5 공공저작물 개방 실전 Step 2. 관리

» 공공저작물 담당자 지정 및 공표(지침 제7조)

공공누리 제1유형부터 제4유형은 출처(발행연도, 해당 공공기관명과 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시

본 저작물은 '한국문화정보원'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공마루)'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문화정보원, www.kcisa.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AI유형이 표시된 공공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하는 목적에 한하여 출처를 생략할 수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함께 표시된 공공누리 유형의 이용조건(출처명시 포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

·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 |

**기관 누리집 “저작권 정책” 내
공공저작물 담당자 공표**

**신규지정/변경 시
한국문화정보원으로 [공문] 발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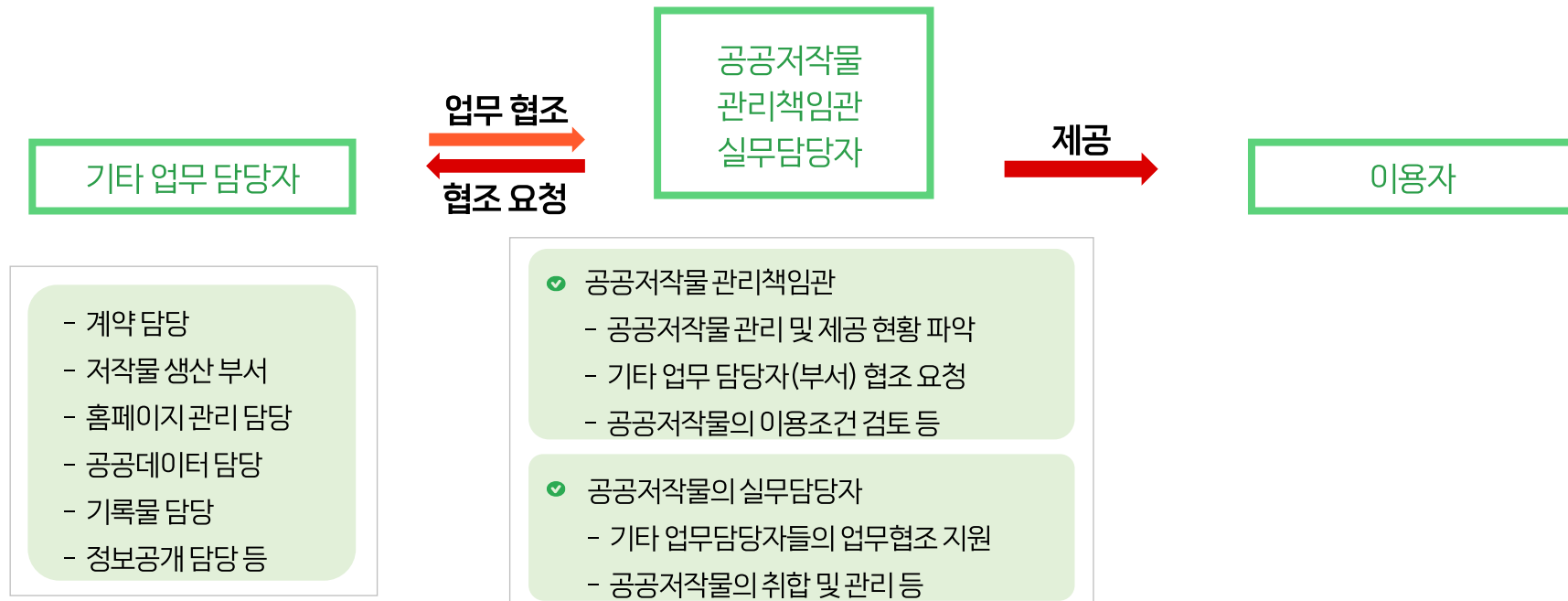
⑤ 공공저작물 개방 실천 Step 2. 관리

» 공공저작물 담당자 지정 및 공표(지침 제7조)

✓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업무

- ① 공공저작물 관련 관리, 제공, 이용 업무 총괄 및 지원
 - 해당기관의 저작물 작성과 저작권재산권 취득 시 권리 확보 안내
 - 공공저작물에 대한 공공누리 적용가능성 검토 및 제공 총괄
- ② 공공저작물 관련 교육·연수 업무 총괄 및 지원
 - 공공저작물 관련 설명회 및 워크숍, 기타 교육·연수 참여
- ③ 공공저작물 관련 시책의 기관 내 업무 총괄 및 지원
 - 공공저작물 이용자의 제공 및 이용 요청 응대
- ④ 공공저작물 관련 시책의 기관 내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및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관련 기관 자체의 공공저작물 관련 정책 수립
- ⑤ 그 밖에 공공저작물의 관리를 위한 사항 등
 - 제공(개방)중인 공공저작물(저작권)의 보존 관리

✓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기타 업무 담당자들의 협조 필요



⑤ 공공저작물 개방 실천 Step 2. 관리

» 저작권 정보 구축 및 보존(지침 제8조)

공공기관 등은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권 정보'라 한다)의 형태로 저작권 취득연도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 ☑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업무상저작물 및 용역산출물)에 대한
- ☑ 저작권 권리관계(창작일, 창작자, 저작권 보유 지분, 공공누리 부착 유형 등)를
- ☑ 취득연도별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관리 및 보존

[공공저작물 권리정보 메타데이터 작성 예시]

저작 물명	유 형	언어	제작일		계 약 서	저작권자		공동 저작 자	저작 인접 권자	기존 공개 유형	최종 공개 유형	저작 물성	비보 호저 작물	업무 상저 작물	상업적 이용허 락	저작재산권								공동 저작 자동 의	유효기간		초 상 권
-	-	-	제작일	공표일	-	저작 권자 명	소속	-	-		-	-	-	-	-	복제 권	공연 권	공중 송신 권	전시 권	배포 권	대여 권	2차 적저 작물 작성 권	-	저작권 만료일	계약 상유 효기 간	-	
00 8경	사 진	한국어	2020- 01-01	2020- 01-02	유	이00	00군	-	-	미부 착	제1 유형	저작 물	보호 저작물	0	상업적 이용가 능	0	0	0	0	0	0	0	-	2090- 01-02	-	-	
00 8경	사 진	한국어	2020- 01-01	2020- 01-02	유	이00	00군	-	-	미부 착	제1 유형	저작 물	보호 저작물	0	상업적 이용가 능	0	0	0	0	0	0	0	-	2090- 01-02	-	-	
00 8경	사 진	한국어	2020- 01-01	2020- 01-02	유	이00	00군	-	-	미부 착	제1 유형	저작 물	보호 저작물	0	상업적 이용가 능	0	0	0	0	0	0	0	-	2090- 01-02	-	-	
00 8경	사 진	한국어	2020- 01-01	2020- 01-02	유	이00	00군	-	-	미부 착	제1 유형	저작 물	보호 저작물	0	상업적 이용가 능	0	0	0	0	0	0	0	-	2090- 01-02	-	-	
00 8경	사 진	한국어	2020- 01-01	2020- 01-02	유	이00	00군	-	-	미부 착	제1 유형	저작 물	보호 저작물	0	상업적 이용가 능	0	0	0	0	0	0	0	-	2090- 01-02	-	-	
00 8경	사 진	한국어	2020- 01-01	2020- 01-02	유	이00	00군	-	-	미부 착	제1 유형	저작 물	보호 저작물	0	상업적 이용가 능	0	0	0	0	0	0	0	-	2090- 01-02	-	-	
00 8경	사 진	한국어	2020- 01-01	2020- 01-02	유	이00	00군	-	-	미부 착	제1 유형	저작 물	보호 저작물	0	상업적 이용가 능	0	0	0	0	0	0	0	-	2090- 01-02	-	-	

분류	요소명	하위요소	정의	표시형식	필수 여부	비고
저작물 정보	저작물명	원제목	저작물의 대표적인 제목	자유기술	필수	
		대제목	영문명, 부제목, 한자명, 별칭, 레이블 등의 대체 제목	자유기술	선택	
	유형		저작권법에서 구분하고 있는 저작물의 유형	어문/음악/연극/미술/건축/사진/영상/도형/컴퓨터프로그램	필수	
	디지털화 형태		디지털화된 저작물의 형태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음원 등)	텍스트/이미지/음원/영상/복합	필수	
	설명		저작물의 특징, 내용, 가치 등의 상세 내용	설명, 상세내용, 스크립트, 이용 안내, 약력	선택	
	주제어		저작물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	태그, 키워드	선택	
	언어		자원의 지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언어	언어명	선택	
	제작일	제작일	저작물을 제작한 일자 (작품제작일, 촬영일, 제작년도)	YYYY-MM-DD / YYYY	필수	
		공표일	저작물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일자 (게시물 등록일, 발행일, 발행년도)	YYYY-MM-DD / YYYY	필수	
계약서		계약서보유 여부	유/무	필수		
저작자 정보	저작권자	저작자명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나 단체명	성+이름/집단명	필수	
		소속	저작자가 개인일 경우 저작자가 속해있는 집단명	집단명	선택	
	공동저작자		저작물을 공동으로 창작한 사람이나 단체명	성+이름/집단명	(해당시) 필수	
	저작인접권자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창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설자, 매개자,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명	성+이름/집단명	(해당시) 필수	
권리 정보	공개유형		공공누리 개방 유형	제1유형/제2유형/제3유형/제4유형	필수	
	저작물성		단순 정보성 자료와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구분	저작물/저작물성 없음	필수	
	비보호저작물		저작권법 제7조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구분	비보호저작물/보호저작물/만료저작물	필수	
	업무상저작물		공공기관의 명의로 공표된 저작물로 계약 또는 근무 규칙 등에 따른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업무상저작물/-	필수	

분류	요소명	하위 요소	정의	표시형식	필수 여부	비고
권리 정보	상업적이용허 락		저작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 리의 확보 여부	상업적이용가능/ 상업적이용금지	필수	
	저작재산권	복제권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또는 그 밖 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 하거나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 확보 여부	O/X	선택	
		공연권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 연·낭독·상영·재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공연이라 하며, 저작자는 그의 저작 물을 공연할 권리 확보 여부	O/X	선택	
		공중송 신권	저작물, 실연·음반·방송을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 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 확보 여부	O/X	선택	
		전시권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의 원본이 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 확보 여부	O/X	선택	
		배포권	저작물, 실연·음반·방송을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원 본 또는 그 복제물을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공중 에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권리 확보 여부	O/X	선택	
		대여권	배포권의 예외로 인정되는 권리로서 상업적 목적으 로 공표된 음반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 램을 영리 목적으로 대여되는 경우에 저작자에게 인 정되는 권리 확보 여부	O/X	선택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 법으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 리 확보 여부	O/X	선택	
	공동저작자동 의	공표일	공동저작자의 개방 동의 의사 여부	O/X	(해당시) 필수	
	유효기간	저작권 만료일	저작권 보호 기간 만료 일자 (공표일 이후 70년)	YYYY-MM-DD / YYYY / 만료저작물	필수	
		계약상 유효기 간	계약상의 저작물의 권리 이용 기간	YYYY-MM-DD / YYYY	(해당시) 필수	
	초상권		초상권 이용 동의 여부	동의/미동의	(해당시) 필수	

⑤ 공공저작물 개방 실천 Step 2. 관리

» 저작권 정보 구축 및 보존(지침 제8조)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1.1>

<저작권재산권 보호기간 만료 공공저작물>

- ✓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출처표시를 포함한 **이용조건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
- ✓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저작권 정보를 관리하고 보존해야 함**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여부(시점) 확인(산정)]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여부(시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행 저작권법과 이전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보호기간을 확인하여야 함

- 1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 종류에 따른 저작권 만료기간 산정 기산점 및 존속기간을 확인**
- 2 **이전 저작권법의 개정**에 따라 저작권 보호기간이 변동되었기 때문에 해당 공공저작물이 어느 시점의 저작권법이 적용되는지 검토

- ✓ 사진 저작물 :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한 경우, 예외사유 없을 시 → 만료
- ✓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 196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한 경우 → 만료
- ✓ 관공서 등이 발행한 업무상 저작물 : 196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한 경우 → 만료

- ✓ **만료 공공저작물의 공공누리 제0유형으로 전환**

공공누리 제0유형 신설에 따라 기존의 만료 공공저작물 표시는 폐지되며, 공공기관등은 공고일 이전 아래와 같은 만료 공공저작물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에 대하여 공공누리 제0유형으로 표시를 전환하여야 합니다.



⑤ 공공저작물 개방 실천 Step 3. 제공

» 공공저작물 개방(지침 제9조)

- ① 공공기관 등은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을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 등은 홈페이지에 “저작권정책”을 게시하여 공공저작물의 이용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 등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 등을 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 기관 누리집 등을 통해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게 함
- ✓ 기관 누리집에 ‘저작권 정책’을 게시하여 공공저작물 이용방법 안내

<공공누리 유형>

제0유형	제1유형	제2유형
 출처표시 조건 없음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3유형	제4유형	AI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인공지능 학습시) 출처표시 조건 없음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⑤ 공공저작물 개방 실천 Step 3. 제공

» 공공누리 적용(지침 제11조)

-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권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참고하면 좋아요!



공공누리 적용 예외



해설서 58p

공공누리 유형 선택 요령



해설서 59p

공공저작물 자유이용대상 체크리스트



해설서 18-19p

공공저작물의 제공 및 관리 프로세스



해설서 60-61p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해설서 개정판(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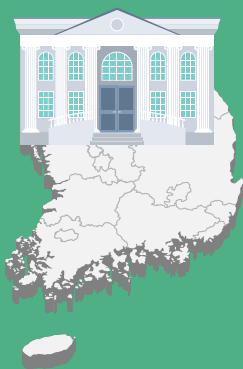


5 공공저작물 개방 실천 Step 3. 제공

» 공공누리 적용(지침 제11조)



국가 및
지자체



저작권재산권
전부 보유

업무상저작물/
계약에 의해 저작권재산권
전부 양도 받은 저작물

1

자유이용가능(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 0/1 유형 적용

2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포함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 포함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포함

자유이용불가

3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1.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국가)
2. 공유재산법에 따른 공유재산(지자체)

직접/신탁관리
사용료 징수

※ 예외사유 해당여부 확인 필요

기관장 승인 시 자유이용추진

공공저작물 개방
(공공누리 적용)

저작권재산권
일부 보유

원저작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른
공공누리 적용

4

공공누리 부착 동의

제0~4, AI 유형 적용

5

공공누리 부착 미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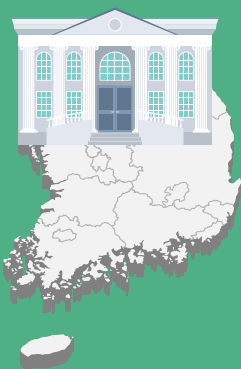
자유이용불가

5 공공저작물 개방 실천 Step 3. 제공

» 공공누리 적용(지침 제11조)



공공기관



저작권재산권
전부 보유

업무상저작물/
계약에 의해 저작권재산권
전부 양도 받은 저작물

1

자유이용가능(저작권법 제24조의 2)

제 0/1유형 적용

2

경영상 자유이용 곤란
사용료 징수 필요

저작권 등록

직접/신탁관리
사용료 징수

공공저작물 개방
(공공누리 적용)

기관장 승인 시 자유이용추진

저작권재산권
일부 보유

원저작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른
공공누리 적용

4

공공누리 부착 동의

제0~4, AI 유형 적용

5

공공누리 부착 미동의

자유이용불가

⑤ 공공저작물 개방 실천 Step 3. 제공

» 제공 중단(지침 제15조)

- ① 공공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조건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거나 공공저작물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 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공공저작물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에는 즉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저작물의 제공이 중단되었음을 공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자유이용 제공 중단 사례 >

- ✓ **공공누리에 따른 이용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예 :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제공된 저작물을 이용하여 상업적 출판행위를 한 경우 등)
- ✓ **공공저작물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예 : 일부 권리가 명확하지 않은 저작물을 저작권법 제50조(법정허락)에 따라 공공저작물로 제공하였으나 이후 저작권자의 권리 주장이 발생한 경우 등)
- ✓ **적용중인 공공누리 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예 :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제공된 공공저작물의 변경 이용으로 인한 정보의 왜곡으로 제3유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 ✓ **공공저작물의 개방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예 : 공공저작물 이용자의 출처표시가 명확하지 않아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등)
- ✓ **공공저작물을 불법행위 등 부정한 목적에 악용하는 경우**
(예 : 자유이용으로 제공된 사진을 불법 광고에 이용하여 제공 기관 및 사진 속 유형물의 가치나 인물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등)

» 저작권 정책

저작권정책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제0유형 : 자유 이용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1유형 : 출처명시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고,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이용하며,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2유형 : 출처명사+상업적 이용금지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3유형 : 출처명사+변경금지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4유형 : 출처명사+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AI유형 : 인공지능 학습 가능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단, 아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공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산출물이 생성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 등 필요 2. 산출물이 공공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 출처명시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필요 3. 공공저작물을 학습한 인공지능 모델의 상업적 이용은 가능하나 공공저작물을 이용해 제작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재판매는 금지

공공누리 제1유형부터 제4유형은 출처(발행연도, 해당 공공기관명과 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를 반드시 표시

본 저작물은 '한국문화정보원'에서 '201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공마루)'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문

✓ 공공누리 누리집 저작권정책 참고
<https://www.kogl.or.kr/etc/copyright.do>

AI유형이 표시된 공공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하는 목적에 한하여 출처를 생략할 수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함께 표시된 공공누리 유형의 이용조건(출처명시 포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

» 온라인 저작물(파일 등)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공누리 적용 간편화
스크립트를 적용하여 게시물마다 부착

공공누리 홈페이지(www.koglor.kr) > 자료실 > ★[중
요공지] 공공누리 등록(유형마크 적용) 방법 안내 참조



◎ 기관별 사이트에 게시물 작성 시 공공누리 유형마크 적용

- (방법1) 공공누리 포털에 공지된 HTML 공통코드 복사 및 붙여넣기
- (방법2) 공공누리 적용 간편화 스크립트 적용

※ 공공누리 적용 간편화 스크립트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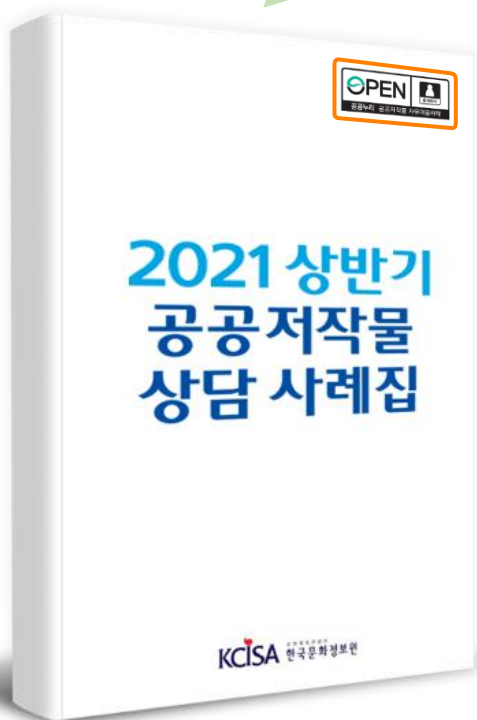
기관별 사이트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javascript 기반 코드로써, 게시물 작성 시 공공누리 유형 선택하면 dmf 제공하며, 원클릭만으로 공공누리 적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방법3) 공공누리 포털에서 유형마크 다운받아 이미지 적용
- (방법4) 자체 개발 적용

※ 공공누리에서 제시하는 표준화된 공공누리 유형마크 규격과 문구를 기본으로 자체 사이트별 환경에 맞도록 개발하여 게시물별 적용 가능

» 오프라인 저작물(책자 등)

인쇄 전 적정 위치에 부착
책자 위쪽 1cm, 오른쪽 1cm 권장



✓ 오프라인 책자 형태(연구보고서, 간행물 등) 저작물

제작 시

공공누리 유형마크 다운로드 : <https://www.kogil.or.kr/info/license.do>

공공누리 유형 위치 : 간행물의 우측 상단

공간 배정 : 간행물의 위쪽 1cm, 오른쪽 1cm(간행물 크기와 상관없이 공공누리 유형별표준화된 크기 적용)

※ 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되, 디자인 요소를 고려하여 크기, 위치 조정 가능

인쇄 시

인쇄자료 초안을 인쇄업체에 넘길 때 기관에서 결정한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송부한 후, 오프라인 책자 형태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여 부착

온라인
서비스 시

PDF : 아크로벳 프로그램으로 편집이 가능한 경우, 오프라인 책자 형태 가이드 라인 준용하여 부착

편집 불가능한 경우 온라인 부착 방법을 준용하여 부착하되, 이용자의 이용조건 준수를 위하여 유형에 대한 설명 명시

한글 : 한글 프로그램에서 메뉴 [파일]-[공공누리 넣기]

유형 결정 및 그림만 표시 선택-오프라인 책자 형태 가이드라인 준용하여 부착

✓ 책자 이외의 오프라인 형태의 저작물(팸플릿, 행사포스터, CD, DVD 등 기타 저작물)

-> 유형에 따라 공공누리 마크를 다운로드하여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는 곳에 자유롭게 부착

» 공공누리 누리집 연계

공공누리 누리집은 공공기관 등에서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부착해 개방하는 공공저작물 정보를 웹크롤링 방식으로 수집하여 제공



연계 시스템

기관 홈페이지의 **메뉴(게시판)** 단위로 진행되며,
메뉴(게시판) 별로 **최초 1회 신청 이후 자동 연계**됨
※ 연계신청한 이후, 해당 게시판에 게시물을 공공누리유형마크를
적용하여 등록하면 자동으로 공공누리 누리집에 연계됨

기존에 연계되고 있거나, **한번 신청(연계)된 메뉴(게시판)**는
추가 연계신청 불필요

사전 확인

- ✓ 공공누리유형마크 부착 여부
- ✓ 기관 홈페이지에 간편화 스크립트가 적용된 게시판이 있는지 여부
- ✓ 공공누리 누리집에 해당 기관이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
- ✓ 공공누리 누리집에 담당자가 회원가입이 되어있는지 여부

연계 방법

- STEP 1 : 공공누리 누리집에 기관 회원으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메뉴 접속
STEP 2 : 지정된 양식에 따라 '저작물 연계신청' 메뉴에서 신청
STEP 3 : 등록한 내용은 '저작물 관리' 메뉴에서 확인 및 수정, 삭제, 확인증 출력 등 가능

연계방법 안내



<자동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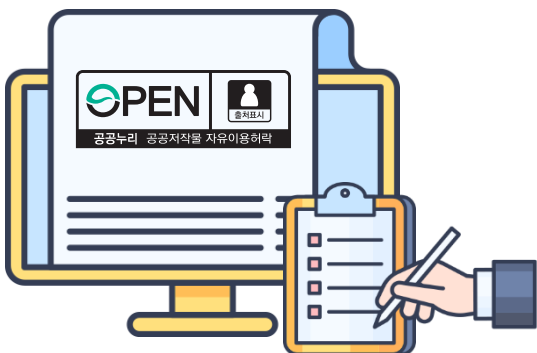
<수동연계, 원문등록>

사례 1

공공기관 등이
저작재산권을
전부 보유한 경우

공공누리 제0/1유형 적용

- ✓ 업무상저작물인지,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하였는지 확인 후
출처명시 생략 동의 여부에 따라
'공공누리 제0/1유형' 개방



사례 2

계약에 따라 공공저작물을 제작한 용역업체
즉, 제3자가 저작권 지분
일부를 보유한 경우(1)

양도 계약 체결

- ✓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여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받은 후,
출처명시 생략 동의 여부에 따라
'공공누리 제0/1유형' 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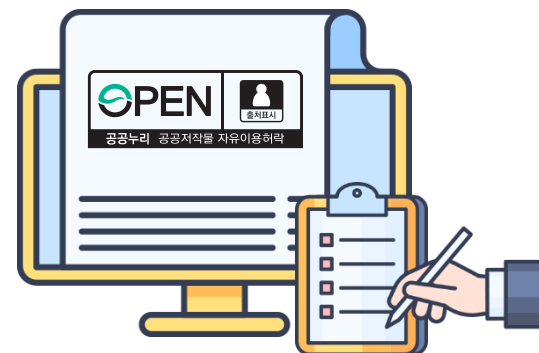


사례 3

계약에 따라 공공저작물을 제작한 용역업체
즉, 제3자가 저작권 지분
일부를 보유한 경우(2)

공공누리 적용 동의 받기

-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를
작성하고, 제3자가 동의한
공공누리 유형 부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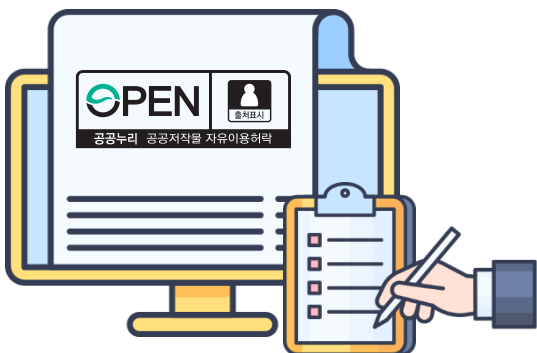


사례 4

저작권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만료 표시 -> 제0유형

- ✓ '공공누리 제0유형' 마크 부착하여 개방



사례 5

변경, 상업적 이용에 민감한
공익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2~4유형 적용

- ✓ 공공누리 제2~4유형 부착
- ✓ (국가, 지자체의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 후
신탁 또는 공공누리 제2~4유형 부착
- ✓ AI 학습 활용에 동의한다면
AI유형 병행 부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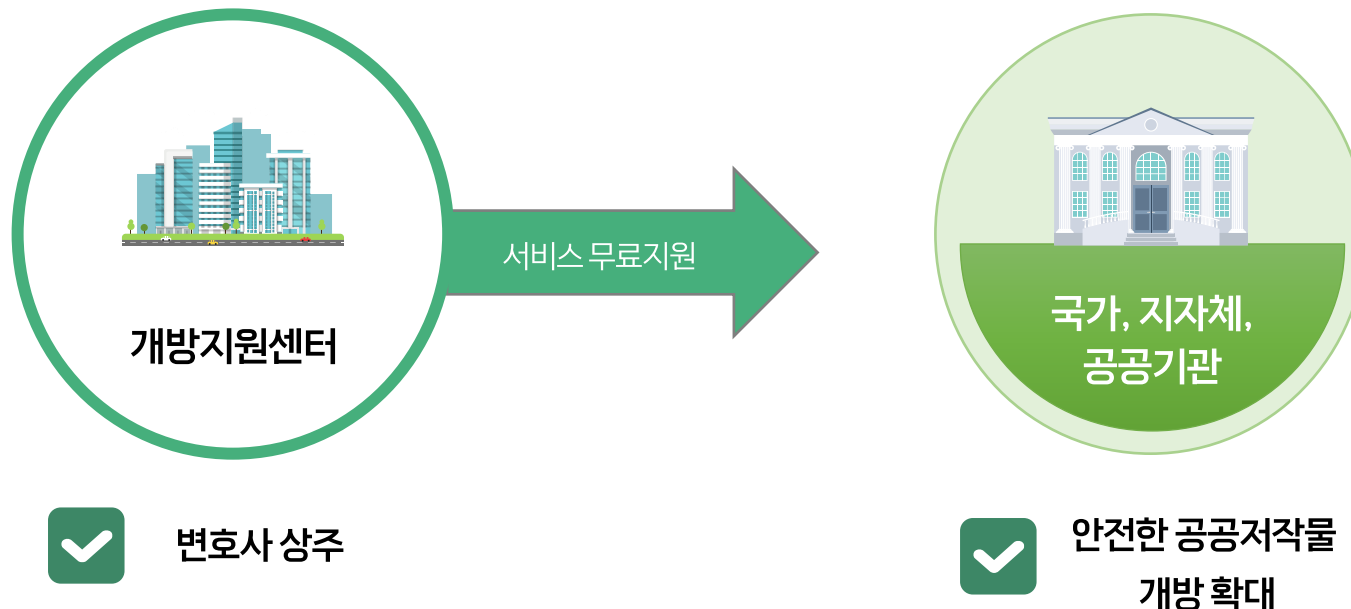
사례 6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개방이 곤란한 경우

신탁제도 이용



» 저작권 상담 및 법률 컨설팅 한국문화정보원 개방지원센터

< 1670-0052
실시간 상담 >

변호사 법률 상담

홈페이지
전체 자료 조사개방 가능 여부
/ 관리 현황 검토공공저작물
맞춤형 컨설팅저작권 관리 및
개방 관련 자문기관
방문교육담당자 및 전 직원
대상 방문 교육저작권
관리 진단저작권 관리수준을
진단 및 개선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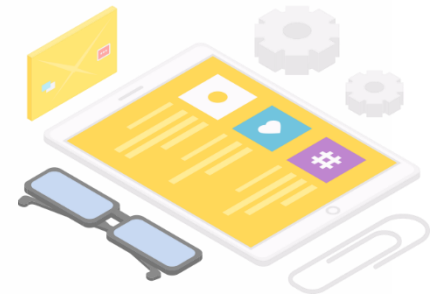
질의응답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KCISA
한국문화정보원
개방지원 센터

1670-0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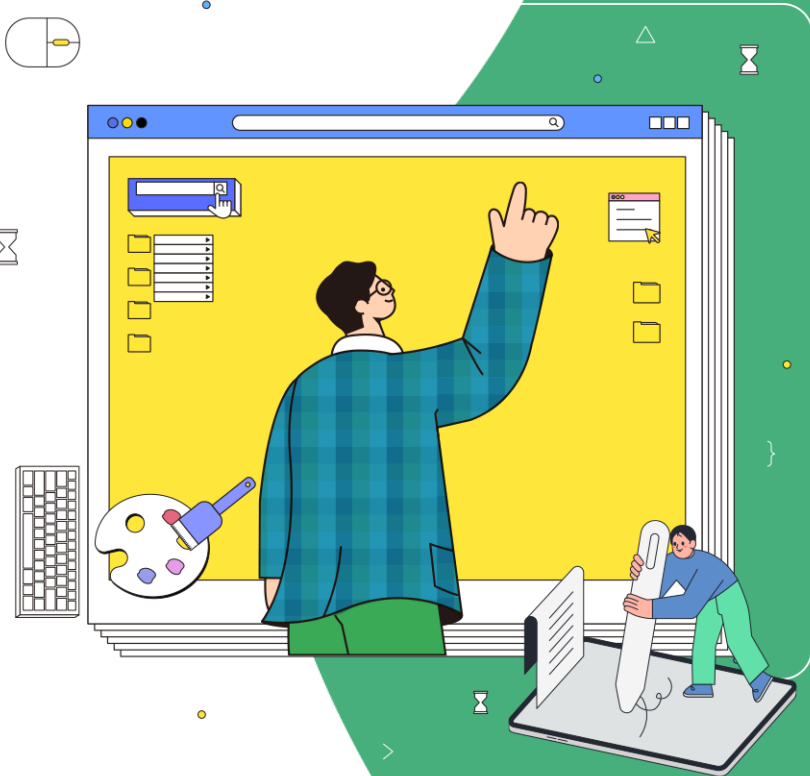
- ✓ 서비스 신청 상시 접수 / 저작권 상담 무료 지원
- ✓ 공공저작물 권리처리 / 컨설팅 / 교육 요청, 신탁제도 등 각종 지원사업 문의



감사합니다

KCISA 한국문화정보원

KOPUB WORLD 돌움체 / KOPUB WORLD 바탕체 / KOPUB 돌움체 / 감탄로드 돌움체 /
감탄로드탄탄체 / 김포고딕 / 빗고을광주 / 상주꽃감체 / 전기안전체 / 코트라 볼드체 / 태백체 / 한국기계연구원



한국문화정보원
저작권 및
공공 저작물 소개

강의자 : 황연희 선임

II 공공누리 사이트 연계

목차

1. 사이트 연계란?
2. 연계 신청하기
3. 연계 통계 및 담당자 현황화 확인
4. 유형마크 부착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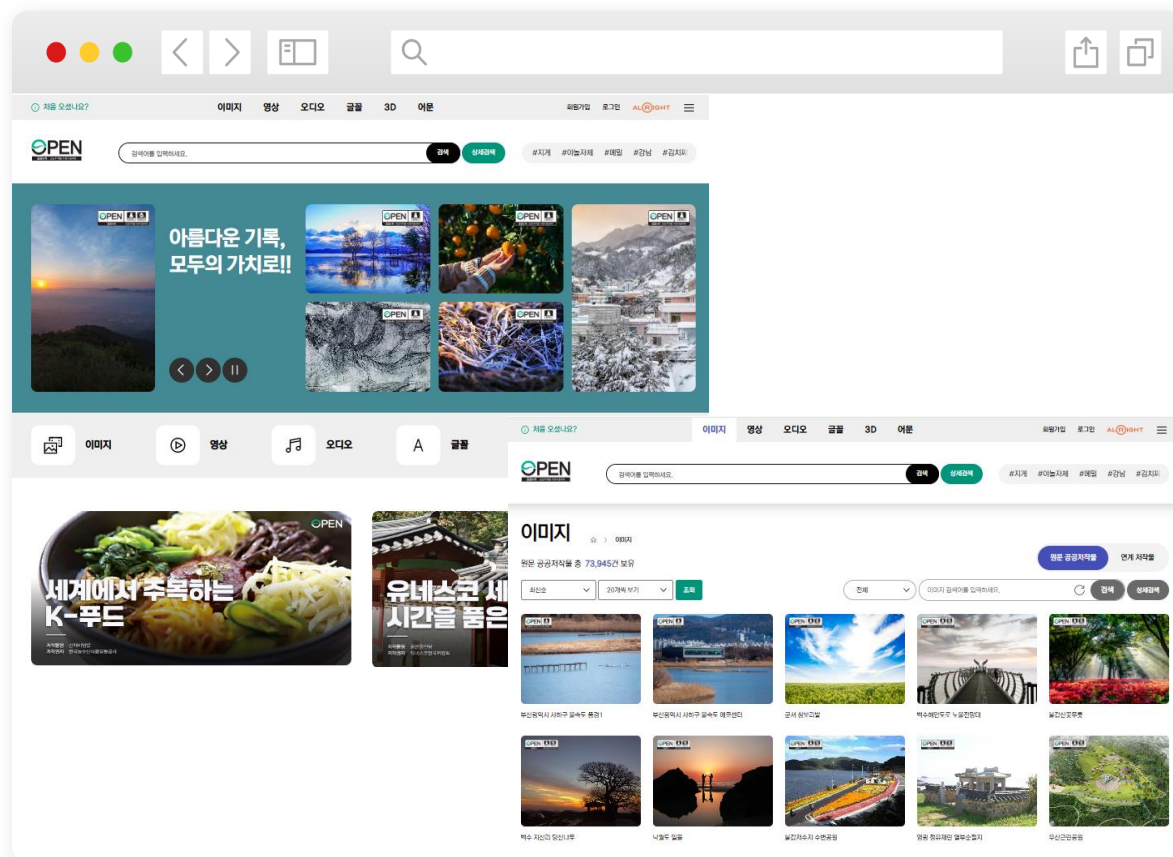
① 사이트 연계란?

» 공공누리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부착해 개방하는 공공저작물 정보를 웹 크롤링* 수집하여 공공누리 포털 사이트(www.kogl.or.kr)에서 연계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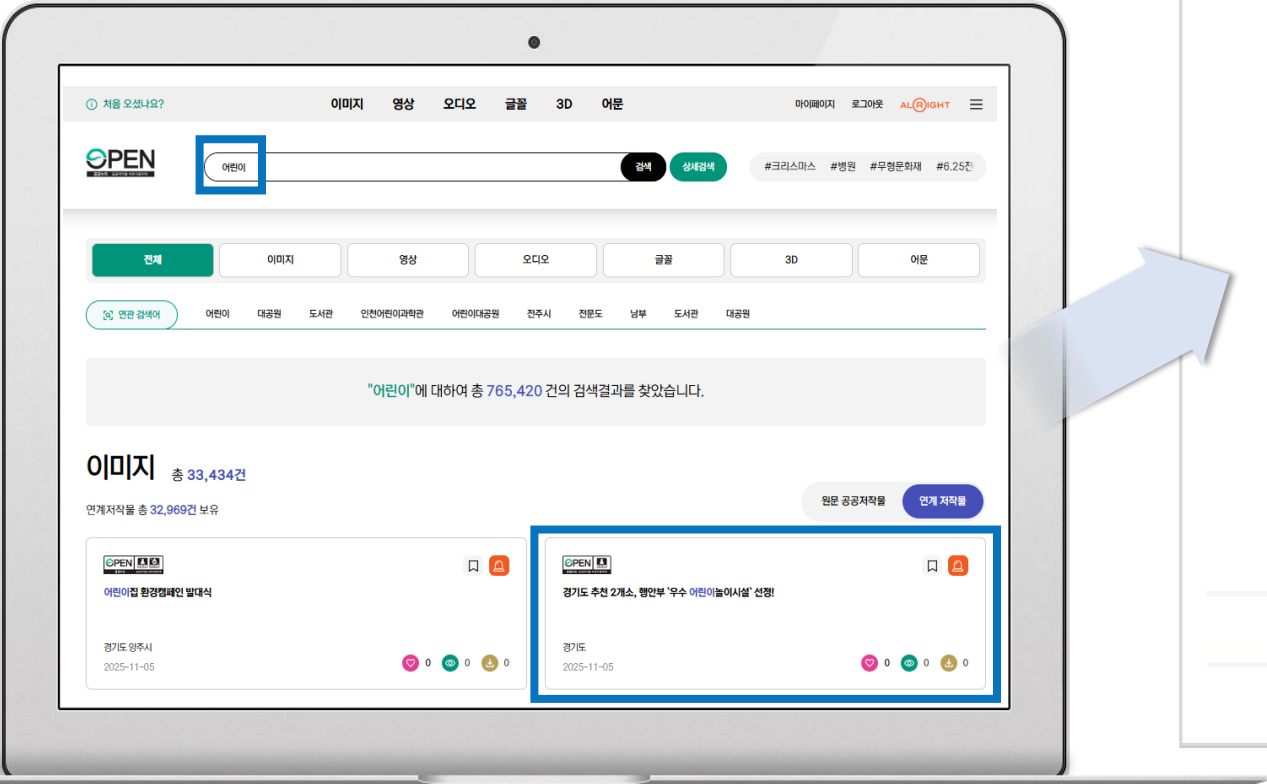
사이트 연계 필요성

- 1 공공누리 마크 적용 대상기관 콘텐츠 홍보
- 2 공공누리 적용 페이지 바로가기 적용
- 3 바로가기 서비스로 대상기관 방문자 유입
- 4 데이터를 주고받지 않아 보안이슈 차단
- 5 공공누리 사이트 추천공공저작물 및 내부 민간 플랫폼 홍보를 통해 콘텐츠 홍보



1 사이트 연계란?

» 공공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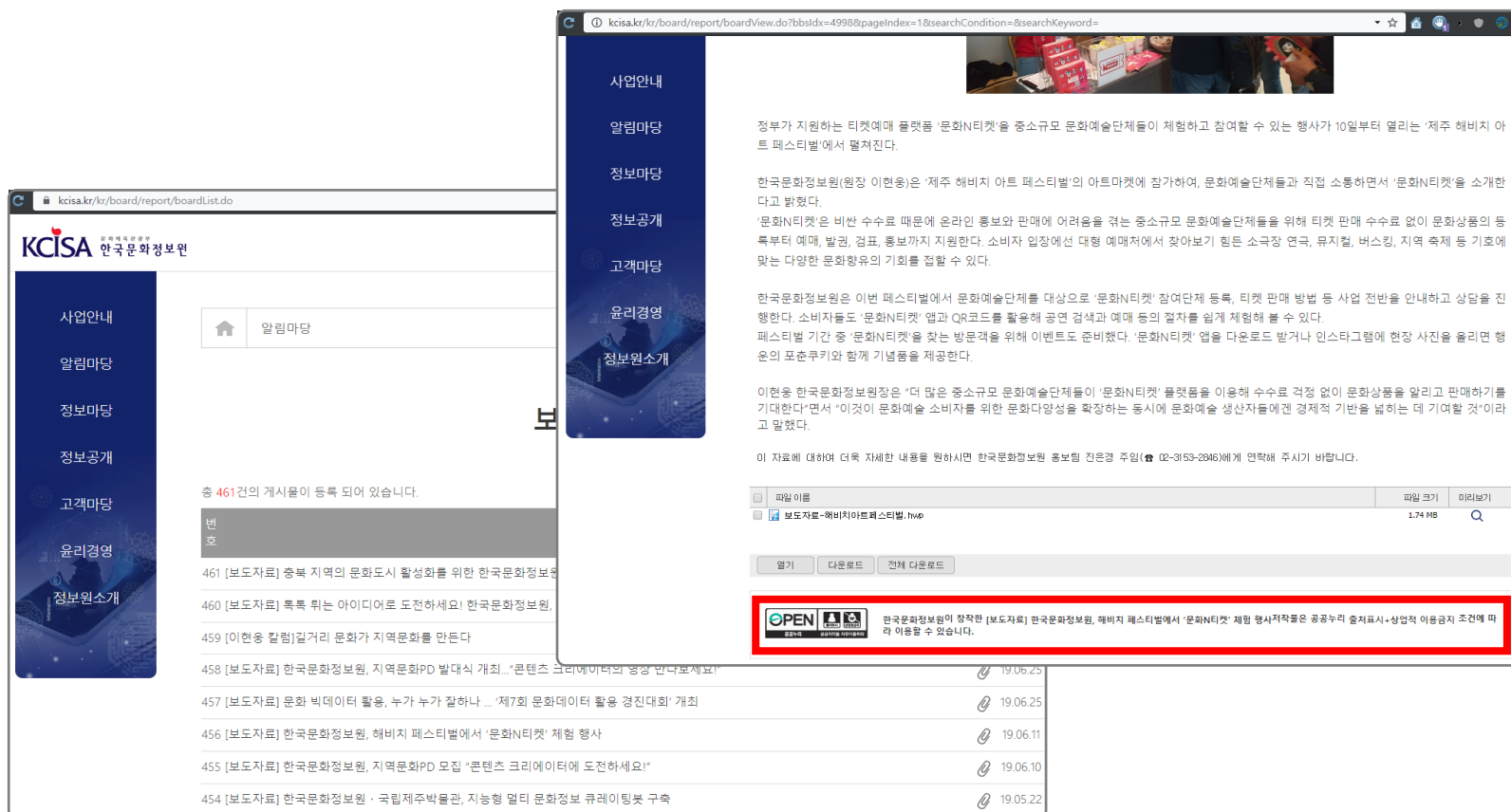


» 유형마크 부착 시 유의사항

공공저작물은 웹 크롤링 방식을 통해 수집되며, 공공누리 유형마크가 부착된 정보만 수집·활용됩니다.

따라서 게시판 내 모든 게시물 페이지에는 반드시 유형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내 유형마크 부착은 연계 불가능)

★게시물 페이지마다 유형마크 부착 필요



연계 불가 대표 예시

웹크롤링 방식으로 공공누리 유형마크가 부착된 게시물을 기준으로 수집하므로, **게시물에 반드시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연계 불가 대표 예시

제목

지방자치 이야기, 기록으로 새롭게 만나다

등록자

작성일시

2025-10-28 13:35

글내용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용철)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 기록콘텐츠를 전면 개편하고, 10월 29일(수) '지방자치의 날'에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에서 선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51029 (조간) 지방자치 이야기, 기록으로 새롭게 만나다

251029 (조간) 지방자치 이야기, 기록으로 새롭게 만나다

현재까지 총 28개국 572명을 대상으로 국제연수 과정을 운영해 왔으며, 페루에서는 2023부터 현재까지 4회에 걸쳐 2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국가 차원의 디지털정부 전환을 추진 중인 페루에 있어 디지털 기록관리 역량 강화는 공공기록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며,

☐ “앞으로도 페루의 공공행정 혁신과 기록관리 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책임자

담당자

지역정보

APEC 2025 KOREA 10.27~11.1 경주

OPEN

게시물 내에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부착하지 않고
첨부파일에만 부착할 경우. 공공누리 연계 불가능

🏠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제목

검색

번호	제목	파일	날짜	조회수
3441	, 한국일반합창연합회와 협력 체계 구축		2025-11-05	27
3440	DMZ 경제순환센터 입주기업, 지역특산물-문화 연계 행사 ...		2025-11-05	18
3439	3대 대표 축제, 모두 역대 최다 방문객 기록		2025-11-05	27
3438	치매 환자 가족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2025-11-04	24
3437	"보건소,2025 하반기 건강교실 운영		2025-11-04	19
3436	· 사랑상품권 누적 판매액 2000억 원 돌파		2025-11-04	23
3435	2025년 어르신 건강 교실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2025-11-03	47
3434	올해 대학생 등록금 11억여 원 지원		2025-11-03	16
3433	2025 청춘 편지box 사래기사와축제 성료		2025-11-03	27
3432	. 우호교류단 1~4일 당 치즈정 방문		2025-11-03	17

< 1 2 3 4 5 6 7 8 9 10 >

OPEN

공공누리

역시 저작물은 "공공누리(www.kogL.or.kr)"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만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부착할 경우,
공공누리 연계 불가능

② 연계 신청하기

» 공공누리

1 회원가입 & 로그인

2 연계신청

로그인/회원가입

» 로그인/회원가입

로그인 회원가입

개인회원(일반 이용자)은 문화포털 사이트에서 기관회원(공공기관 이용자)은 공공누리 사이트에서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원(일반 이용자)



문화포털 사이트의 통합 로그인

- 문화포털, 전통문화포털의 편리한 이용
- 마이페이지를 통한 공공자작물 관리
- 문화자수 포인트 지급
- 다양한 이벤트 참여 기회 제공

개인회원 로그인

기관회원(공공기관 이용자)



공공누리 사이트에서 로그인

- 공공누리 관리자 승인 필요
- 기관별 공공자작물 등록/관리 가능
- 질문과 답변 작성, 저작물 오류 신고

기관회원 로그인

1 한국문화정보원 관리자가 대상기관 담당자 확인 후 승인

마이페이지

» 마이페이지 > 마이페이지

2

기관명 한국문화정보원

» 회원명

④ 저작권 정책 담당자

» 기관연계페이지 이동

원문저작물 신청

자동연계 신청

수동연계 신청

연계 저작물 등록 현황

자세히 보기

저작물 등록 총계

217,917

1 유형

149,106

2 유형

261

3 유형

9

4 유형

68,539

만료 공공저작물

2

2 마이페이지 - 원문저작물/자동연계/수동연계 신청

» 자동연계 신청

자동연계 신청일 기준 게시판 연계 작업 기간 약 14일 소요

게시판 등록

게시판 등록

게시판 일괄 등록

문의사항은 070-4335-0209, 02-3153-284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표에 기재된 정보들은 라이선스 표시에 따라 데이터로 삽입되어 이용자들이 저작자나 저작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저작권자는 되도록 자세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좋으며, 필수사항(*)은 모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움말

기관명	한국문화정보원
* 수집사이트명	
* 수집사이트URL	
* 수집게시판명	
* 수집게시판명 URL	
* 주요저작물 형태	선택하세요
* 카테고리 분류	1차 분류 전체2차분류를 선택하세요전체분류표 보기
기타요청사항	

게시판 등록 : 한 게시판을 간단히 등록할 경우 사용

게시판 일괄 등록

게시판 등록

게시판 일괄 등록

문의사항은 070-4335-0209, 02-3153-284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샘플 엑셀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작성 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샘플 엑셀파일 다운로드

파일찾기

첨부파일 (엑셀)

파일선택

취소

등록

게시판 일괄 등록 : 다수의 게시판을 한꺼번에 등록할 경우 사용

② 연계 신청하기

» 자동연계 신청-게시판 등록

	기관명	한국문화정보원	
1	* 수집사이트명		
2	* 수집사이트URL		
3	* 수집게시판명		
4	* 수집게시판명 URL		
5	* 주요저작물 형태	선택하세요 ▼	
6	* 카테고리 분류	1차 분류 전체 ▼	2차분류를 선택하세요 ▼ 전체분류표 보기

1 연계 수집 사이트명 예) 공공누리

2 연계 수집 URL 예) https://www.kogl.or.kr

3 연계 수집 게시판명 예) 공공누리 > 개방지원센터 > 자료실

4 연계 수집 게시판명 URL 예) http://www.kogl.or.kr/edu/eduDataList.do

5 개방 공공저작물 형태에 맞게 선택

6 연계 공공저작물 카테고리 분류에 맞게 선택

» 자동연계 신청-게시판 일괄 등록

☑ 다수의 게시판을 한번에 혹은 당일에 등록 가능 (게시판 등록 양식이랑 항목이 동일)

※ 자동연계로 등록하는 방식이기에 등록 기간 소요 발생

수집사이트명	수집사이트URL	수집게시판명	수집게시판URL	주요저작물형태	1차분류	2차분류	1차분류	2차분류
예시) 공공누리	http://www.koglor.kr	공공누리>우수활용사례>활용사례	http://www.koglor.kr/use/bestCase	사진	문화·예술	문화예술일반	문화·예술	문화예술일반/어학·문학/국악/고전음악/현대음악
공공누리	http://www.koglor.kr	공공누리>개방자원센터>자료실	Http://www.koglor.kr/edu/eduData	어문	정보통신	문화예술일반		일반미술/공예·디자인/공연·전시/현대예술/영화
								대중연예/세계문화/전통문양/민화·웹툰/게임
							과학기술	과학기술일반/토목·건설/자동차/항공·우주·전기
								화학/원자력/환경/조선·해양/무기·병기/산업공학
							정보통신	IT일반/하드웨어/소프트웨어/통신·네트워크/인터넷
							교육·학술	유아·초등/중·고등/대학·일반
							외교·국방	외교/통일/국방/안보
							법률·행정	법률/공공행정/예산
							사회·경제	사회/정치/경제/고용/재정/금융
							보건·의료·복지	보건/복지/질병/의료/봉사
							환경·기상	환경/동물/식물/기상/자연
							생활·안전	기상/자연/식품/의류/주거/생활용품/건강·미용
								예절·에티켓/풍속·민속/가정생활/종교/안전
							교통·물류	육상/해상/항공/기타
							농·축·수산	농림/축산/수산/해양
							지역·역사	지역일반/역사일반/국내/국외/문화재
							관광·여행	관광·여행일반/관광지/숙박시설/맛집/세계여행
							체육·스포츠	체육일반/스포츠/레저
							연구보고서	외교·국방/방송·통신/문화·예술/과학·기술
								생활·안전/법률·행정/사회·경제/환경·기상
								관광·여행/국토·교통/체육
							보도자료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기타기관

» 수동연계 신청

- ✓ 수동연계 : 자동연계로 연계 진행이 어려운 게시판에 대하여 수동으로 업로드
- ✓ 저작물 연계신청 > 수동연계 신청 > 샘플 엑셀파일 다운로드

연계 요청 예시

자동연계 신청 관리

수동연계 신청 관리

API연계 신청 관리

문의사항은 070-4335-0209, 02-3153-284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샘플 엑셀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작성 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샘플 엑셀파일 다운로드

파일찾기

첨부파일 (엑셀)

파일선택

- ▲ 반드시 아래의 엑셀파일작성안내 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엑셀서식에 맞지 않을 경우 반려처리 될 수 있으며, 반려 시 재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취소

등록

② 연계 신청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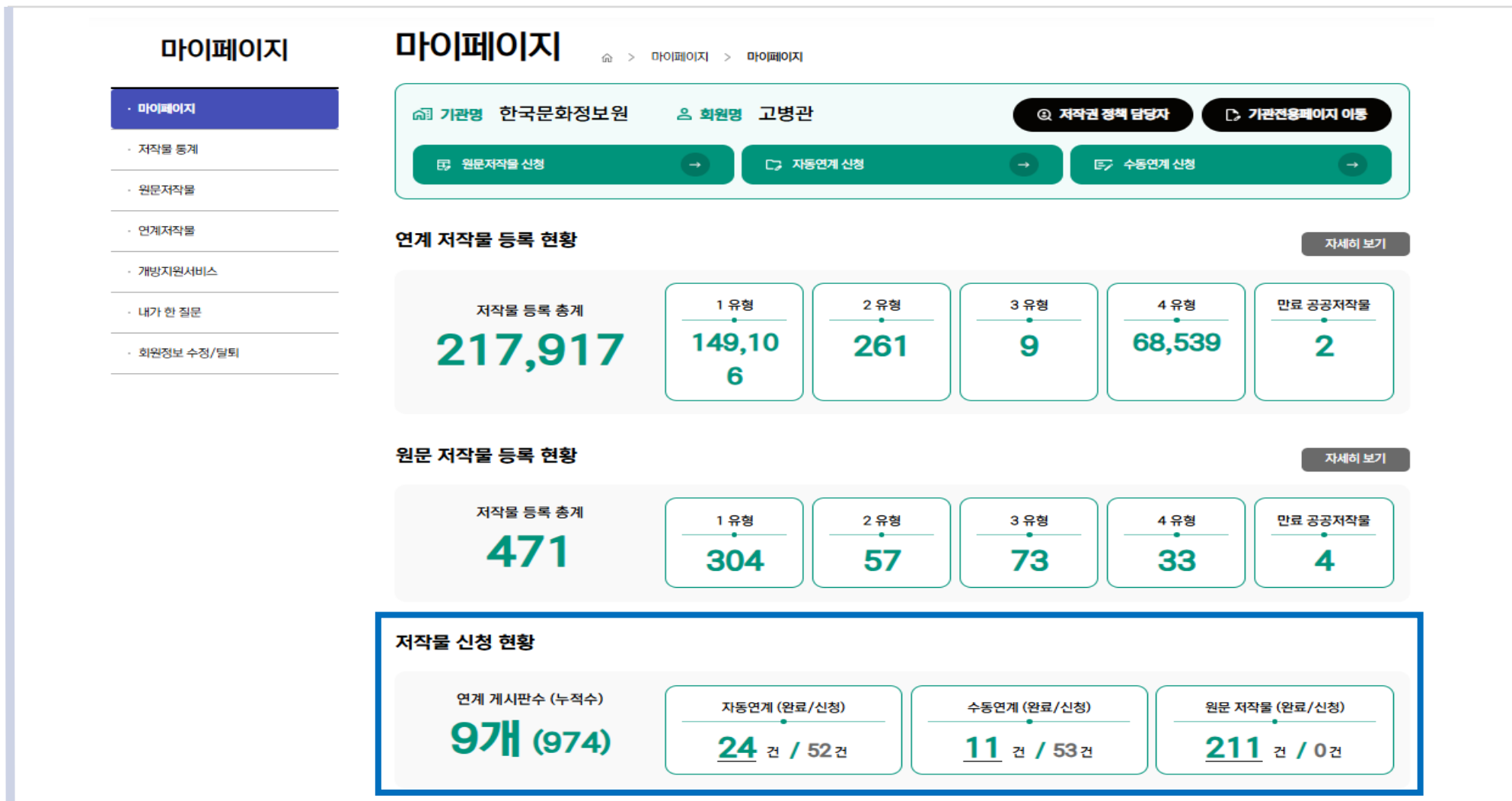
» 수동연계 신청

☑ 수집기 등록 오류 또는 빠른 등록을 원할 경우, 엑셀로 자료를 주시면 일괄 등록이 가능합니다. (약 3~7일 소요)

기관 홈페이지 URL	게시판 경로	게시판 목록URL	게시물 제목	게시글 등록일	게시물 내용 URL	저작물형태	분류코드1	분류코드2	저작물 유형
기관 홈페이지 URL는 동일해야 함	게시판 경로는 동일해야 함	게시판목록URL 주소는 동일해야 함	해당 게시물 제목입력	숫자 8자리만 기재		저작물형태 Sheet참조	분류코드 Sheet참조	분류코드 Sheet참조	숫자 1자리만 기재
https://www.kcisa.kr/	알림마당 > 보도자료	https://www.kcisa.kr/kr/board/report/boardList.do	[문정원 이슈 리포트] AI, 문화·예술 스포츠의 경계를 넘다	20250514	https://www.kcisa.kr/kr/board/report/boardView.do?bbsIdx=17666&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어문	보도자료	공공기관	1
https://www.kcisa.kr/	알림마당 > 보도자료	https://www.kcisa.kr/kr/board/report/boardList.do	[보도자료] 문정원, 문화유산·자연유산·어업유산 등 고부가가치 디지털 공공저작물 1,993건 개방	20250510	https://www.kcisa.kr/kr/board/report/boardView.do?bbsIdx=17686&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어문	보도자료	공공기관	2
https://www.kcisa.kr/	알림마당 > 보도자료	https://www.kcisa.kr/kr/board/report/boardList.do	[보도자료] 신안선 등 수중고고학적 기록물, 고품질 디지털 공공저작물로 새롭게 개방한다	20250501	https://www.kcisa.kr/kr/board/report/boardView.do?bbsIdx=17808&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어문	보도자료	공공기관	3
https://www.kcisa.kr/	알림마당 > 보도자료	https://www.kcisa.kr/kr/board/report/boardList.do	[보도자료]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을 위해 제7기 찾아가는 공공누리 교육단 출범!	20250426	https://www.kcisa.kr/kr/board/report/boardView.do?bbsIdx=17786&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어문	보도자료	공공기관	4
https://www.kcisa.kr/	알림마당 > 보도자료	https://www.kcisa.kr/kr/board/report/boardList.do	[보도자료] '문화디지털 혁신 컨트론타워' 한국문화정보원, 법정기관 공식 출범	20250408	https://www.kcisa.kr/kr/board/report/boardView.do?bbsIdx=17946&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어문	보도자료	공공기관	9
https://www.kcisa.kr/	알림마당 > 보도자료	https://www.kcisa.kr/kr/board/report/boardList.do	[보도자료] 한국문화정보원, 법정기관 전환 '창립총회' 개최	20250331	https://www.kcisa.kr/kr/board/report/boardView.do?bbsIdx=17769&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어문	보도자료	공공기관	1

② 연계 신청하기

» 연계 신청 현황 확인



1

저작물 신청 현황에서 각 숫자를 클릭하여 관리 페이지로 이동

» 연계 신청 현황 확인

자동/수동 연계 신청 현황 등 확인

마이페이지

마이페이지

자작물 통계

원문저작물

연계저작물

연계 신청 관리

연계저작물 현황

저작물 연계 신청 안내

개방지원서비스

내가 한 질문

회원정보 수정/탈퇴

연계 신청 관리

자동연계 신청 관리

수동연계 신청 관리

API연계 신청 관리

※ 연계 서비스 삭제 시 복구가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연계 서비스 삭제신청 반려 시 연계 서비스는 정상노출 됩니다.

※ 복구 반려 시 연계서비스는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총 113 건 (1 / 12 페이지)

자동연계 신청

수집사이트	카테고리	신청현황	삭제신청	신청일
예시) 공공누리 > 공공누리 > 우수활용사례 > 활용사례	문화·예술>문화예술일반	신청		2025-11-05
예시) 공공누리 > 공공누리 > 개방지원센터 > 자료실 · 강약실	정보통신>문화예술일반	완료	삭제신청	2025-11-05
예시) 공공누리 > 공공누리 > 개방지원센터 > 자료실 · 강약실	정보통신>문화예술일반	신청		2025-11-05
테스트 > 게시판명	문화·예술>국악	신청		2025-11-05

1

신청 현황에 대한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완료 이후 익일 이후 검색엔진 반영

② 연계 신청하기

» 원문DB 신청 방법

- ✓ 원문저작물 > 원문저작물 신청 에서 신청서 작성
- ✓ 원문DB 신청 후, 2~3일 이내로 승인 처리 완료

원문DB 개별신청

마이페이지 원문저작물 > 마이페이지 > 원문저작물

원문저작물 관리 임시등록 현황 원문저작물 신청

개별신청 일괄신청

기관명	한국문화정보원
* 분류	대분류 중분류
* 게시물명	내용을 입력하세요.
제작연도	
* 해시태그	#강기도, #제주, #동화 외 같이 등록하시면 됩니다.
* 공공누리유형	공공누리유형

- ✓ 원문DB 개별 신청 :
하나의 원문저작물을 간단히 등록할 경우 사용

원문DB 일괄 신청

마이페이지 원문저작물 > 마이페이지 > 원문저작물

원문저작물 관리 임시등록 현황 원문저작물 신청

개별신청 일괄신청

다량의 원문DB를 일괄적으로 등록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제공에 드리는 샘플 엑셀파일을 다운로드받으셔서 해당 양식에 맞추어 작성 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괄등록된 DB는 마이페이지 > 저작물 관리 > 원문DB 관리 > 임시등록현황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저작물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 엑셀파일 다운로드

파일찾기 첨부파일 (엑셀) 파일선택

▲ 반드시 샘플 엑셀파일을 다운로드하신 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 등록

- ✓ 원문DB 일괄 신청 :
다수의 원문저작물을 한꺼번에 등록할 경우 사용

② 연계 신청하기

» 원문DB 개별 신청

개별신청

일괄신청

기관명	한국문화정보원						
1 * 분류	대분류▼ 중분류▼						
2 * 게시물명	내용을 입력하세요.						
제작연도	📅						
3 * 해시태그	#경기도, #제주, #동화 와 같이 등록하시면 됩니다.						
4 * 공공누리유형	공공누리유형 ▼						
5 설명							
6 * 썸네일	선택된 파일 없음 파일선택 ▲ 첨부파일은 최대20MB까지 첨부할 수 있습니다.						
7 * 원본파일	파일선택 업로드 <table> <thead> <tr> <th>파일이름</th> <th>크기</th> <th>상태</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3"></td> </tr> </tbody> </table> x 삭제 0개의 파일 : 0.00B	파일이름	크기	상태			
파일이름	크기	상태					

취소

승인요청

- 1 저작물 유형 선택
- 2 원문DB 제목 입력
- 3 검색 시 적용될 해시태그 입력
(예 : #한국문화정보원, #이미지)
- 4 해당 원문DB 저작물 유형
- 5 원문DB 상세 설명
- 6 원문DB 대표 썸네일 이미지
- 7 원문DB 원본 파일

» 원문DB 일괄 신청

- 1 마이페이지 > 원문저작물 신청> 일괄신청 에서 샘플 엑셀 파일 업로드
- 2 임시 등록 된 게시물에 원문데이터 및 썸네일 파일 등록 (원문저작물>임시등록 현황)

마이페이지

원문저작물

원문 저작물 관리

임시등록 현황

원문 저작물 신청

개별신청

일괄신청

다량의 원문DB를 일괄적으로 등록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공해 드리는 샘플 엑셀파일을 다운로드받으셔서 해당 양식에 맞추어 작성 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괄등록된 DB는 (마이페이지) 저작물 관리) 원문DB 관리) 임시등록현황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저작물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 엑셀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엑셀)

파일선택

▲ 반드시 샘플 엑셀파일을 다운받으신 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

등록

1 샘플 엑셀 파일 작성 후 등록:
원문DB 필드값에 맞춰 샘플 엑셀 파일 작성 후 등록

마이페이지

원문저작물

원문 저작물 관리

임시등록 현황

원문 저작물 신청

연도-월-일

연도-월-일

검색

초기화

총 5건 (1 / 1 페이지)

전체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번호	제목	유형	대분류	중분류	상태	등록일
5	장미	1유형	이미지	식물	임시등록	2025-03-21
4	목련	1유형	이미지	식물	임시등록	2025-03-21
3	튤립	1유형	이미지	식물	임시등록	2025-03-21
2	백합	1유형	이미지	식물	임시등록	2025-03-21
1	게아리	1유형	이미지	식물	임시등록	2025-03-21

2 원본데이터 및 썸네일 등록 :
원본데이터 및 썸네일 등록 진행 후 승인요청

» 원문DB 신청 현황 확인

원문DB 관리 및 수정 화면

마이페이지

마이페이지

자작물 통계

원문저작물

연계자작물

개방지원서비스

내가 한 질문

회원정보 수정/탈퇴

원문저작물

원문저작물 관리

임시등록 현황

원문저작물 신청

연도 - 월 - 일

연도 - 월 - 일

검색

초기화

총 2594 건 (3 / 325 페이지)

전체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번호	썸네일	제목	유형	대분류	중분류	상태	등록일
2578		화산서원 외성문 현판 2	1유형	이미지	전통문양	완료	2025-08-26
2577		화산서원 외성문 현판 1	1유형	이미지	전통문양	완료	2025-08-26
2576		화산서원 내성문 서가재, 홍릉 무석인	1유형	이미지	전통문양	완료	2025-08-26
2575		화합전 편문장식	1유형	이미지	전통문양	완료	2025-08-26

마이페이지

- 마이페이지
- 자작품 통계
- 원문저작물**
- 인계저작물
- 개방지원서비스
- 내가 한 일
- 회원정보 수정/탈퇴

원문저작물

[홈](#) >
 [마이페이지](#) >
 원문저작물

* 표시 항목은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기관명	문화재단		
상태	완료		
* 분류	이러지 ▼ 전통문화 ▼		
* 게시물명	화산서원 외삼문 연판 2		
제작연도	2018		
* 해시태그	한시문학		
* 공공누리유형	1유형 ▼		
설명	동근 무당의 가정지가 여러 차례로 걸려져 풍부한 느낌을 살린 무당모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일사귀들로 공간 전체를 채우고 있다. 무당모과의 내부에는 가는 선을 이용해 그 일찍이를 표현해 주고, 꽃잎 사이 중앙부에는 동근 씨앗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줄기를 따라 붉어 여러 차례로 걸려진 무당의 일사귀가 들어와 있다.		
* 첨부파일	화산서원 외삼문 연판(100159).psd <button>파일선택</button> ▲ 첨부파일은 최대20MB까지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원본파일	파일선택 업로드 화산서원 화산서원 외삼문 ... 2.12MB 1/1 1/1		

취소

수정완료

③ 연계 통계 및 담당자 현황화 확인

» 연계 통계 확인 및 확인증 출력

☑ 기간별 연계 신청 등록 현황 확인 및 확인증 출력

마이페이지

저작물 통계

홈 > 마이페이지 > 저작물 통계

· 마이페이지

· 저작물 통계

· 원문저작물

· 연계저작물

· 개방지원서비스

· 내가 한 질문

· 회원정보 수정/탈퇴

연계 저작물 현황

원문 저작물 등록 현황

연계 게시판 현황

원문 저작물 다운로드 현황

2025-11-06

~

2025-11-06

검색

초기화

※ 검색 전 초기화면은 전체 누적 현황을 노출한 데이터입니다.

↓ 연계 확인증 다운로드

저작권유형	저작물등록수					
	합계(%)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만료 공공저작물
건수	217,917	149,106	261	9	68,539	2
합계(%)	100%	68.42%	0.12%	0%	31.45%	0%

③ 연계 통계 및 담당자 현황화 확인

» 원문DB 통계 확인 및 확인증 출력

☑ 원문DB 통계 확인 및 확인증 출력

마이페이지

- 마이페이지
- 저작물 통계
- 원문저작물
- 연계저작물
- 개방자원서비스
- 내가 한 질문
- 회원정보 수정/탈퇴

저작물 통계

연계 저작물 현황

원문 저작물 등록 현황

연계 게시판 현황

원문 저작물 다운로드 현황

2025-11-06

~

2025-11-06

검색

초기화

※ 검색 전 초기화면은 전체 누적 현황을 노출한 데이터입니다.

카테고리별

연계 확인증 다운로드

저작권유형	저작물등록수						
	합계(%)	이미지	영상	오디오	글꼴	3D	어문
건수	2,650	2,534	0	0	0	116	0
합계(%)	100%	95.62%	0%	0%	0%	4.38%	0%

저작권 유형별

저작권유형	저작물등록수					
	합계(%)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만료 공공저작물
건수	2,650	2,650	0	0	0	0
합계(%)	100%	100%	0%	0%	0%	0%

③ 연계 통계 및 담당자 현황화 확인

» 산하 지자체 연계 저작물 통계 확인

☑ 산하 지자체 연계 저작물 통계 확인

마이페이지 마이페이지 > 마이페이지 > 마이페이지

기관명 서울특별시 > 회원명 황연희 > 저작권 정책 담당자 > 기관페이지 신청

원문저작물 신청 > 자동연계 신청 > 수동연계 신청

연계 저작물 등록 현황 [자세히 보기](#)

저작물 등록 총계 1,128,201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0 유형
등록 수	797,154	5,297	49,905	275,845	0

원문 저작물 등록 현황 [자세히 보기](#)

저작물 등록 총계 91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0 유형
등록 수	25	0	0	66	0

산하 지자체 연계 저작물 통계 > 마이페이지 > 산하 지자체 연계 저작물 통계

연계 저작물 현황 원문 저작물 등록 현황 연계 게시판 현황

2026-02-24 ~ 2026-02-24 검색 초기화

※ 검색 전 초기화면은 전체 누적 현황을 노출한 데이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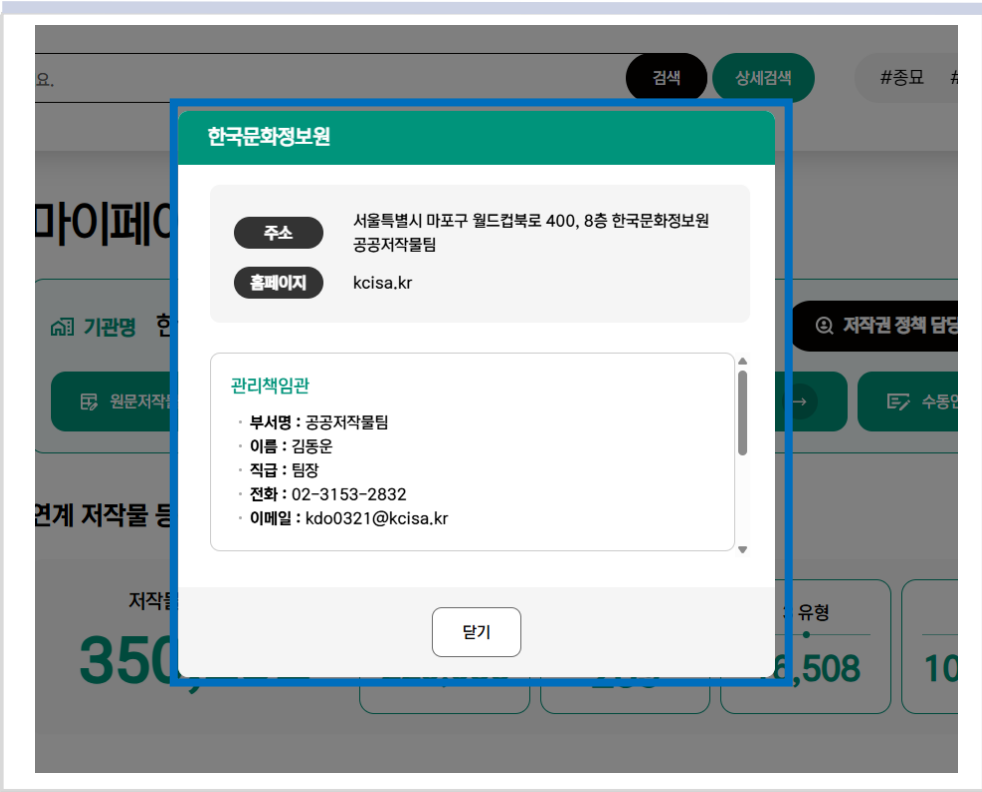
[엑셀 다운로드](#)

기관명	저작물등록수					
	합계(%)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만료 공공저작물
서울특별시	1,128,465	797,154	5,297	49,905	275,845	0
서울특별시 강남구	63,949	28	3,486	0	60,435	0
서울특별시 강동구	15,657	15,284	83	5	285	0
서울특별시 강북구	10,887	1,404	121	66	9,296	0

③ 연계 통계 및 담당자 현황화 확인

» 공공저작물 정책 담당자 현황화 확인

✓ 저작권 정책 담당자 확인 : 공문 접수 후 시스템 현황화 진행



>> <마크 부착방법1> HTML 공통태그 복사하여 붙여넣기

| <http://www.kogl.or.kr/edu/eduDataView.do?dataldx=82>

예) 공공누리 유형별 HTML 태그를 활용한 게시판 유형 마크 적용 방법

적용방법

- 1 게시물 작성 시, 기존과 같이 본문내용을 작성합니다.
- 2 작성을 마쳤으면 에디터 편집모드를 [HTML]로 변경합니다.
- 3 내용 제일 하단부분에 아래 유형 중 해당하는 유형의 HTML 태그를 복사하여 붙여넣기 합니다.
- 4 작성완료 버튼을 눌러 작성을 완료합니다.
- 5 게시물 하단에 공공누리 유형마크가 제대로 붙었는지 확인합니다.

1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공통코드

```
<!--1유형-->
<div style='position: relative,'><div style='position: absolute,'><a href='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1.do'target='_blank'><img alt='제1유형'
src='http://www.kogl.or.kr/open/web/images/images_2014/codetype/new_img_Opentype01.png'/></a></div><div style='padding-left:195px;'>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a href='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1.do'target='_blank'>제1유형:출처표시</a>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div></div>
<!--//1유형-->
```

2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공통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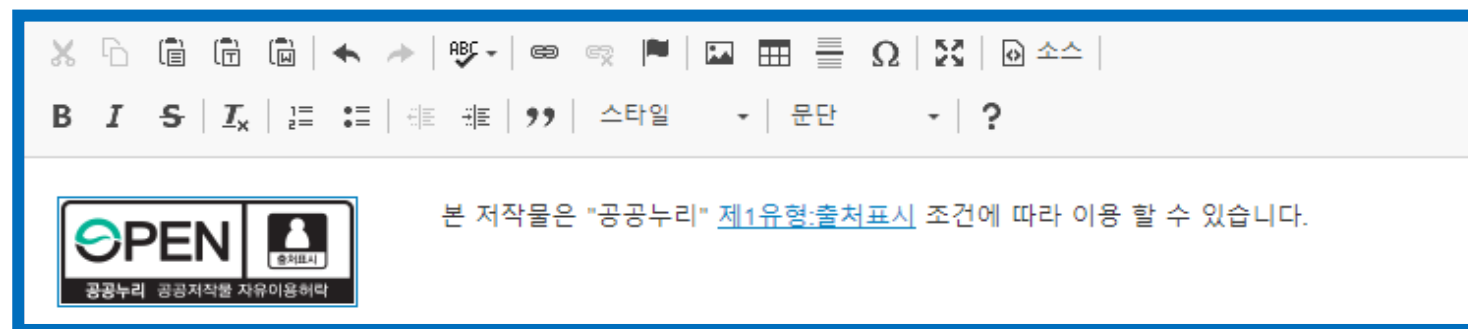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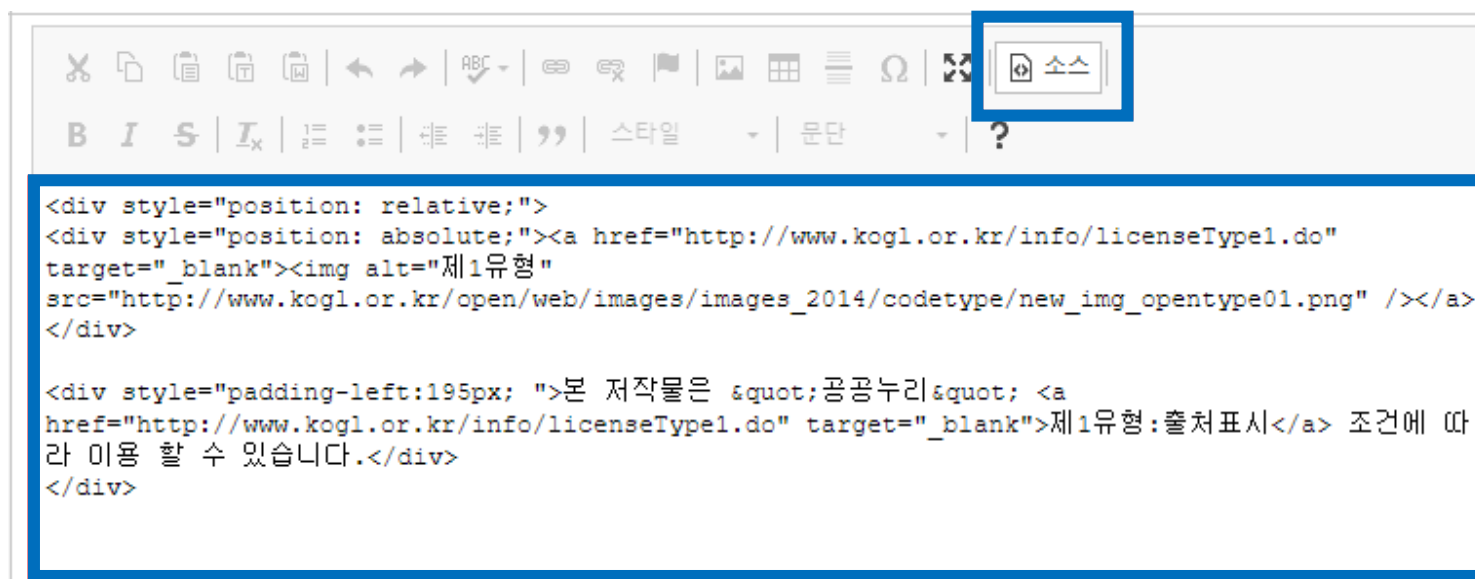
```
<!--2유형-->
<div style='position: relative,'><div style='position: absolute,'><a href='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2.do'target='_blank'><img alt='제2유형'
src='http://www.kogl.or.kr/open/web/images/images_2014/codetype/new_img_opentype02.png'/></a></div><div style='padding-left:235px,'>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a href='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2.do'target='_blank'>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a>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div></div>
<!--//2유형-->
```

④ 유형 마크 부착 방법

» <마크 부착방법1> HTML 공통태그 복사하여 붙여넣기

| <http://www.kogl.or.kr/edu/eduDataView.do?dataIdx=82>

☑ 예) 공공누리 유형별 HTML 태그를 활용한 게시판 유형 마크 적용 방법



4 유형 마크 부착 방법

» <마크 부착방법2> 공공누리 적용 간편화 스크립트 적용

<http://www.kogl.or.kr/edu/eduDataView.do?dataidx=82>

☑ JAVA 소스코드를 활용한 게시판 유형별 마크 적용 기능 제공(URL 이동하여 첨부파일 다운로드)

자료실

홈 > 개방활용지원 > 자료실

기관

공공누리 적용 간편화 스크립트(신유형 적용, 2026.02)

관리자

2024-06-07

7225

공공누리 적용 간편화를 위한 게시판 수정 메뉴얼과 적용 스크립트(javascript)를 아래와 같이 배포합니다.

기관 사이트에서 게시물 등록 시, 공공누리 유형 선택지가 추가되고 결과가 게시물에 즉시 반영되도록 합니다.

* 2026년 2월 기준으로 소스 코드가 업데이트 되었으므로, 기존에 등록하신 공공기관 담당자께서는 아래 코드로 수정하실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적용 간편화 스크립트(신유형 적용).zip



한국문화정보원이 제공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유형 마크 부착 방법

>> <마크 부착방법2> 공공누리 적용 간편화 스크립트 적용

| <http://www.kogl.or.kr/edu/eduDataView.do?dataidx=82>

☑ 첨부파일에 있는 매뉴얼을 참고하여 게시판 소스에 적용(기관 정보화 담당자, 홈페이지 유지보수 업체 요청)

게시판 샘플

제목

내용

공공누리 적용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배포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법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공공누리 유형선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 적용

☐		0유형 : 자유이용
☐		1유형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		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		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 해당사항 확인 (국가정보원웹사이트)

AI유형적용

☐  AI유형 : 인공지능 학습용

유형선택 적용해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누리 제2~4유형의 적용은 공공저작물 중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관하여 제3자의 이해충돌 우려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물 관련 상담센터 ☎1670-0062

작성완료

한국문화정보원
저작권 및
공공 저작물 소개

강의자 : 임이랑 책임

III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목차

1.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개요
2. 2027년 합동평가 지표(2026년 실적)
3. 향후 개선 방향
4. 원문DB 등록 시 안내사항
5. Q&A



1 지자체 합동평가 개요

» 합동평가란?

▶▶▶ (평가 근거)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행안부장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평가

(평가 대상) 광역시도(시, 군, 구 실적 포함)

지표설명

지표명 설명

공공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별로 관리하는 공공저작물이 안전하게 개방 및 활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저작권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공공누리' 사이트 연계 등을 통해 이용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노력을 평가

평가 근거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다.

평가 목적

공공저작물의 이용 활성화 정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생산한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로서의 역할 구현

기대효과

- ① 지자체에서 생산하는 우수한 공공저작물의 개방을 통해 저작권 침해 걱정없이 국민의 자유로운 창작활동 지원 및 저작권 관련 산업분야 활용 확대
- ②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서 공공분야의 역할 수행 및 지자체가 보유·생산한 안전하고 다양한 공공저작물의 제공을 통해 창작활동 활성화 및 만족도 증대

① 지자체 합동평가 개요

» '26년('25년도 실적) 대비 변경사항

▶▶▶ 저작물 링크 연계건수 : **점수 구간 변경(5,000건 이상 만점)**

▶▶▶ 원문DB 등록 건수: **점수 구간 변경(20건 이상 만점)**

지표 반영 경과

- ✓ 2017년 평가 지표 신설(정량지표,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정책 참여 비율)
- ✓ 2018년 지표명 변경(정량지표, 공공저작물 개방(공공누리 적용) 정도)
- ✓ 2019년 정성평가로 지표 변경(정성지표, 공공저작물 개방 및 활용 우수사례)
- ✓ 2020년 지표명 변경(정성지표, 공공저작물 개방 및 활용지원 우수사례)
- ✓ 2021년~2023년(동일하게 유지)
- ✓ 2024년(23년 실적) 지표명 변경 및 정량평가로 지표 변경 (정량지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참여 노력도)
- ✓ 2026년(25년 실적) 세부 지표 변경 (정량지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참여 노력도)
- ✓ 2027년(26년 실적) 세부 지표 변경 (점수 구간 변경)

② '27년('26년 실적) 평가 지표

①

공공저작물의
체계적 관리
노력도(60점)

A 공공저작물 책임관 및 담당자 지정/현행화 (30점)

(시·도, 시·군·구 대상 조직 내 공공저작물 책임관과 담당자를 지정하고, 홈페이지에 현행화하여 게시했는지 여부 / 시·도, 시·군·구 기관)x100

- ✓ 공공저작물 책임관/실무자 지정 후, 공문발송(한국문화정보원)
- ✓ 담당자가 기 지정되거나, 변동사항이 없는 기관의 경우, 당해 연도 담당자 기준으로 공문 회신
- ✓ 최근 발송된 공문과 홈페이지에 현행화된 책임관 및 담당자 이름 또는 전화번호가 일치하여야 함

B 공공저작물 개방 및 활용지원을 위한 역량 강화 노력도 (30점)

(시·도, 시·군·구 기관별 공공저작물 관련 역량강화 교육, 시도협의체 회의 참여 여부/시도, 시·군·구 기관)X100

- ✓ 역량강화 교육 :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소집교육 및 방문교육(화상교육 포함), 연수 등 (나라배움터 영상 X)
- ✓ 책임관 및 담당자 중 최소 1인 이상 참여 필수('26년 중 변경 시, 전임 책임관/담당자 '26년 교육 실적 포함)

②

공공저작물
연계, 개방
노력도(40점)

C 공공누리 웹사이트에 기관별 저작물 링크연계 건수 (20점)

(시·도, 시·군·구 기관별 2026년 공공누리 링크 연계 구간별 점수/전체 시·도, 시·군·구 기관수)

- ✓ 링크 연계DB : 기관 사이트 내 개방 및 공공누리 사이트에 링크 연계(2026년 실적)
- ✓ *인구수 5만 이하 시군구는 연계건수 실적의 1.5배를 곱하여 산정(국가통계포털 '25년 12월 기준)

D 공공누리 웹사이트 내 원문저작물 등록 건수 (20점)

(시·도, 시·군·구 기관별 2026년 공공누리 원문저작물 등록 건수 구간별 점수/전체 시·도, 시·군·구 기관수)

- ✓ 원문DB : 기관이 저작권을 보유하여 개방 가능한 저작물 중, 영상, 음원, 이미지 등 활용도 높은 저작물을 선별하여 등록한 파일로, 국민들이 공공누리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음
(저작물 활용도 제도 및 홍보 효과 기대)

누적치 x

② '26년('25년 실적) 평가 지표

» 측정방법 : 1. 공공저작물 정책 도입의 체계적인 관리 노력도

1-A

관리체계 구성 : 공공저작물 책임관 및 담당자 지정 및 현행화 (30점)

대상	기준	배점(30점)
시·도, 시·군·구	공공저작물 책임관 및 담당자 지정/현행화	30점

✓ 담당자 지정·현황화 완료 시, '1'을 기재/미이행시 공란(지정·현행화 모두 완료 시 점수 부여)

점수 적용

점수구간	30점	25점	20점	0점
담당자 지정 및 현행화	90% 이상	50~89%	1%~49%	미시행

✓ 시·도 및 시·군·구 합계(백분율 환산)를 기준으로 구간별 점수 부여

예시

A	B	C	D	평균	점수
지정	지정	지정	지정	4/4*100 100%	30점
지정	미지정	지정	지정	3/4*100 75%	25점

증빙

✓ 공공저작물 책임관, 담당자 지정 발송 공문(수신처 : 한국문화정보원)

② '27년('26년 실적) 평가 지표(변경사항1)

» 측정방법 : 1. 공공저작물 정책 도입의 체계적인 관리 노력도

1-B

교육 참여 : 공공저작물 개방 및 활용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노력도(30점)

대상	기준	배점(30점)
시·도, 시·군·구	공공저작물 관련 역량강화 교육 참여 여부	30점

✓ 교육 참여 완료 시, '1'을 기재/미이행시 공란

점수 적용

점수구간	30점	25점	20점	0점
B. 역량강화 노력도	90% 이상	50~89%	1%~49%	미시행

✓ 시·도 및 시·군·구 합계(백분율 환산)를 기준으로 구간별 점수 부여

예시

A	B	C	D	평균	점수
참여	참여	참여	참여	$4/4 \times 100$ 100%	30점
참여	미참여	참여	참여	$3/4 \times 100$ 75%	25점

증빙

✓ 책임관(담당자)의 역량강화 교육, 시도협의체 회의 참석 확인(교육시간인정) 공문 (발송처 : 한국문화정보원)

② '27년('26년 실적) 평가 지표(실적증빙)

A 공공저작물 책임관(담당자) 지정 및 홈페이지에 현행화

수신자 한국문화정보원장

(경유)

제목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현행화 제출

1. 관련: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7조(담당자 지정 및 공표 등)

2. 위와 관련하여 우리 공단의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 담당자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현황

기관명	구분	부서명	직급	이름	전화번호	전자우편	저작권정책 게시 ur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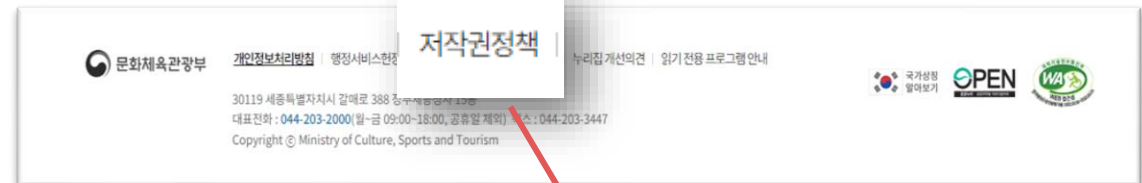
77

▶▶▶ 공공저작물 책임관/실무자 지정 후,
공문 회신(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

·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강 (044-203-)

· 공공저작물 관리담당자: 윤 (044-203-)



저작권정책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적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위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 제1유형"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롭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유형>

제 1 유형	제 2 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 3 유형	제 4 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그 밖에도 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비롯하여, 널리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료들은 공공누리(제1유형 내지 제4유형) 표시를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유형을 포함하여 어느 유형이든 출처(해당 공공기관명과 누리집(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유형으로 개방한 '지적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홈페이지)(<http://www.mcst.go.kr>)에서 무료로 내려받기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표시가 적용된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별도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이 없는 공공저작물이므로 저작물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강 044-203-

· 공공저작물 관리담당자: 윤 044-203-

② '27년('26년 실적) 평가 지표(실적증빙)

B 공공저작물 관련 역량강화 교육 참여 공문

문화 디지털 혁신 선도기관


한 국 문 화 정 보 원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5년 서울시 공공저작물 책임관·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참석 확인
안내(교육시간인정)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와 한국문화정보원은 공공저작물 책임관·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저작물 관리업무를 위한 역량강화 연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동 교육에 참석한 귀 기관 임직원의 교육 시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아래 -

가. 개요

- 1) 행 사 명 : 2025년 공공저작물 책임관·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 2) 일 시 : 2025년 7월 9일(수) 9:00~12:00
- 3)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서울시)
- 4) 주최/주관 : 서울특별시 / 한국문화정보원

나. 교육 시간 : 3시간

다. 참석자 확인 : 불임 파일 참조

불임 : 2025년 서울시 공공저작물 책임관·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참석자 명단 1부. 끝

한 국 문 화 정 보 원


수신자 서울시 자치구 및 유관기관, 경기도

② '27년('26년 실적) 평가 지표

» 측정방법 : 2. 공공저작물 연계, 개발 노력도

2-C

공공누리 웹사이트(<https://kogl.or.kr>)에 기관별 저작물 링크연계 건수 (20점)

대상	기준	배점(20점)
시·도, 시·군·구	2026년 1월 ~ 12월 중 공공누리 웹사이트의 게시판 링크 연계 건수(누적X)	20점

점수 적용

점수구간 ㉔	20점	17점	14점	11점	8점	0점
연계건수	5,000건 이상	2,500건 이상 ~5,000건 미만	1,000건 이상~ 2,500건 미만	200건 이상 ~1,000건 미만	200건 미만	0건

- ✓ ㉔ : 시·도 및 시·군·구 구간별 점수 합계에 대한 평균으로 점수 산정
- ✓ 인구수 5만 이하 시군구는 실적(연계건수)의 1.5배를 곱하여 산정
- ※ KOSIS 행정구역별 인구수 통계자료에 따름 ('25년 12월 기준)

예시

A	B *인구수 5만 이하	C	D	평균	점수
6천건(20점)	실적 : 2천건(14점) → 인정 : 3천건(17점) (2천건x1.5)	7천건(20점)	2천건(14점)	$(20+17+20+14)/4$	17.75점
5천건(20점)	실적 : 4천건(17점) → 인정 : 6천건(20점) (4천건x1.5)	5천건(20점)	6천건(20점)	$(20+20+20+20)/4$	20점

증빙

- ✓ 공공누리 웹사이트에 기관 연계 저작물 확인증 (기관 로그인 후 증명서 출력 가능)

② '27년('26년 실적) 평가 지표(변경사항2)

» 측정방법 : 2. 공공저작물 연계, 개방 노력도

2-D

공공누리 웹사이트(<https://kogl.or.kr>) 내 원문 저작물 등록 건수(20점)

기준	기준	배점(20점)
시·도, 시·군·구	2026년 1월 ~ 12월 중 공공누리 웹사이트 내 공공저작물 원문저작물 등록 건수(누적치X)	20점

점수 적용

점수구간 ㉠	20점	18점	15점	10점	5점	0점
원문DB 등록건수	20건 이상	16건 이상~ 19건 이하	11건 이상~ 15건 이하	6건 이상~ 10건 이하	1건 이상~ 5건 이하	0건

✓ ㉠ : 시·도 및 시·군·구 구간별 점수 합계에 대한 평균으로 점수 산정

예시

A	B	C	D	평균	점수
12건(20점)	17건(18점)	2건(5점)	12(15점)	$(20+18+5+15)/4$	14.5점
20건(20점)	30건(20점)	25건(20점)	21건(20점)	$(20+20+20+20)/4$	20점

증빙

✓ 공공누리 웹사이트 내 기관 원문 저작물 등록 확인증 (기관 로그인 후 증명서 출력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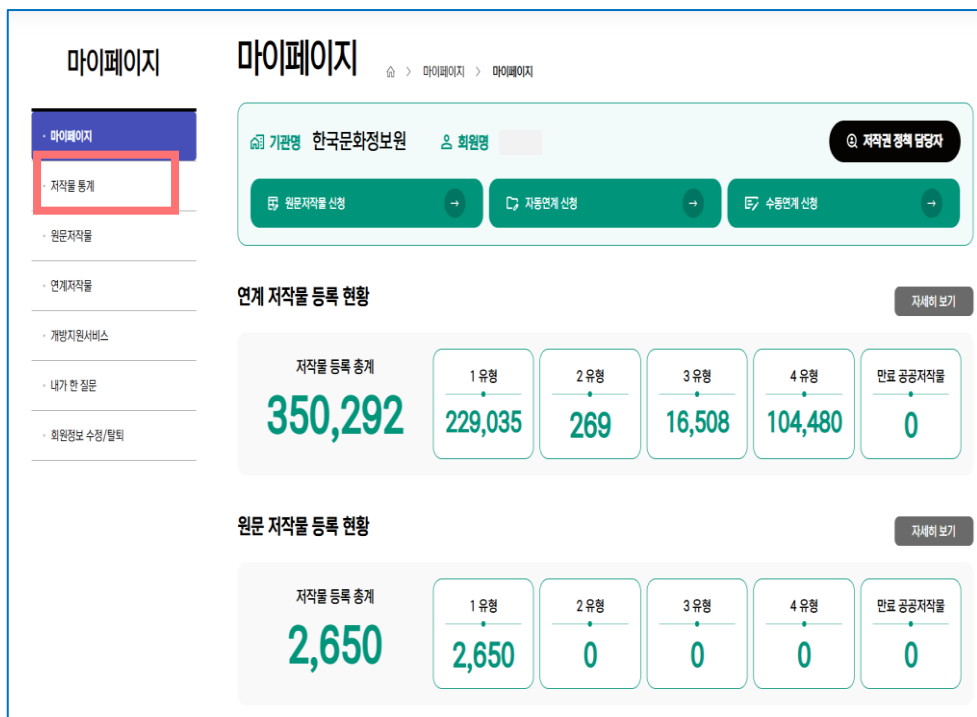
② '27년('26년 실적) 평가 지표(실적증빙)

1단계. 공공누리 접속 : 기관회원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저작물 통계 > **연계 저작물 현황 탭** / **원문 저작물 등록 현황 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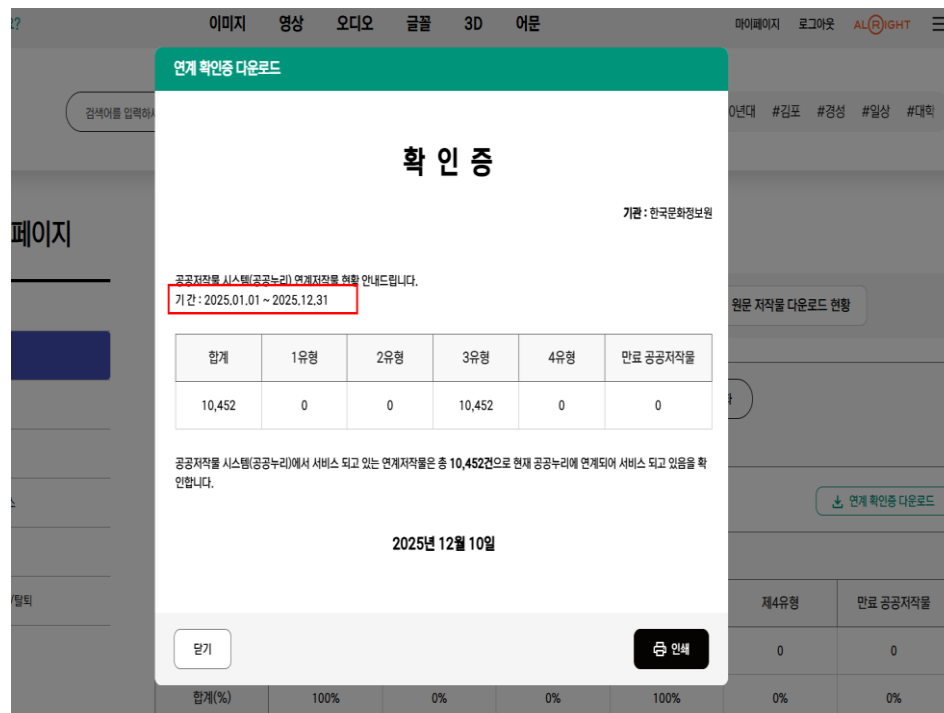
2단계. 기간 설정 : **반드시 연도 설정(2026년) 및 기간(날짜) 설정에 체크** → 검색 클릭 (예: 2026.1.1 ~ 2026.12.31)

3단계. 확인증 저장 : 연계 확인증 다운로드 클릭 → 인쇄 클릭 → PDF 저장 **※ 확인증 내 기간 표시 여부 확인**

C 공공누리 사이트 > 마이페이지 > 저작물 통계



D 연계저작물/원문저작물 확인증 출력



▶▶▶ 연계 건수 및 원문DB등록 건수 통계 확인 및 증명서 발급 방법

- ✓ 공공누리 마이페이지>저작물 통계>연계저작물/원문저작물 등록 현황 메뉴에서 **각각 건수 통계 확인 및 증명서 발급 가능(기간 설정 필수)**
- ✓ '26년 12월 31일까지의 통계 확인 시 12월 31일 이후에 검색하여 확인 필요 / 화면캡처 및 기간 표시가 되지 않은 확인증은 증빙 불가

2 '27년('26년 실적) 평가 지표

평가대상

시·도+시·군·구(평균)

평가기준일

2026.12.31

목표치

90점 (시군구 실적 취합 기준)

점수산정

(단위 : 점수)

구분	공공저작물의 체계적 관리 노력도(A)			공공저작물 연계, 개방 노력도(B)							지자체 수 총합 (시도 및 시군구)	합계 (A+B)
	공공저작물 책임관/담당자 지정·현행화 (a)	역량강화 노력도(b)	소계 (A=a+b)	공공저작물 링크연계 건수 (c)				공공저작물 원문등록 여부 (d)		소계 B=a)		
				링크 연계건수	인구수 5만 이하 시군구 해당 여부 (해당 시, 1 표시)	링크연계 건수 (인구수 5만 이하 시군구 실적 1.5배 환산)	구간별 환산점수	원문 등록건수	구간별 환산점수			
최종점수*	수식적용	수식적용	수식 적용	입력 불가	입력 불가	입력 불가	수식 적용	입력 불가	수식 적용	수식 적용	입력 불가	수식 적용
총합계(㉔+㉕)**	수식적용	수식적용	입력 불가	입력 불가	입력 불가	입력 불가	수식 적용	입력 불가	수식 적용	입력 불가		입력 불가
시도(㉔)			입력 불가		입력 불가	입력 불가	수식 적용		수식 적용	입력 불가	입력 불가	입력 불가
시군구 합계(㉕)	수식적용	수식적용	입력 불가	수식 적용	입력 불가	입력 불가	수식 적용	수식 적용	수식 적용	입력 불가	입력 불가	입력 불가
〇〇시			입력 불가			수식 적용	수식 적용		수식 적용	입력 불가	입력 불가	입력 불가
〇〇군			입력 불가			수식 적용	수식 적용		수식 적용	입력 불가	입력 불가	입력 불가
〇〇구			입력 불가			수식 적용	수식 적용		수식 적용	입력 불가	입력 불가	입력 불가

* 최종점수 : A = 총합계가 속하는 구간별 점수, B=구간별 점수에 대한 평균

** 총합계 : A= (㉔+㉕/ 시도,시군구 수) X100, B= ㉔+㉕

③ 향후 개선방향

실효성 있는 지표 개선



지자체 의견 수렴

공공저작물 개방과 활용의 성과 도출



공공저작물 디지털 혁신 사·도 실무 협의체

조직 내
저작권 정책
관리의 체계화공공저작물
개방과 활용의
성과도출공공저작물
지원사업 등
전략적 협업민관
협업과제 발굴

4 원문 DB 등록 안내사항

» 공공누리 유형을 정확하게 확인해주세요.

- ☒ 기관에서 저작권을 보유 (전부 또는 일부) 하고 있는가?
- ☒ 변경하여 이용이 가능한가?
- ☒ 제3자 저작권, 비보호 저작물, 만료 저작물인가?
- ☒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가?



우리 기관이 만든 저작물인가?
(타 기관/단체가 제작한 홍보물,
공동 주최(관) 행사 홍보물?
▶양도 또는 이용동의 필요)



만료저작물은 0유형



1유형이면 좋겠다...

4 원문 DB 등록 안내사항

» 원문의 품질을 확인해 주세요.



초고용량 또는 저화질인가?



원문이 있는가? 영상/음원이 정상 재생 되는가?



기존에 등록한 것과 중복인가?



민감정보(초상, 개인정보 등)가 포함되어 있는가?



이미지 픽셀 깨짐
영상 등 화면 캡처
음원/영상 재생 불가

저작권정책

출처: 이미지 이용안내 · 저작권정책



저작권정책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대천광역시 유상구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 제1유형"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의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만 자료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도 관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비롯하여, 널리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료들은 공공누리(제1유형 내지 제4유형) 표시를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습니다.

공공누리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에 발의 안에서 자유롭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유형을 포함하여 어느 유형이든 출처(해당 공공기관명과 누리집(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은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포털 바로가기

저작물?? 원문 DB??



개인(외국인 포함)의 얼굴 식별이 가능?
▶ 초상은 이용자 동의 필요!

4 원문 DB 등록 안내사항

» 활용도 높은 원문DB 예시

디자인 일러스트 저작물



남성+여성+유아(여), 3인, 아이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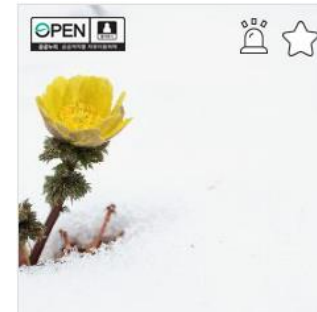
남성+여성+유아(여), 3인, 나들이



부산_매화명소 총렬사⑤



가평_아침고요수목원



꽃 핀 자리 눈 내린 개복수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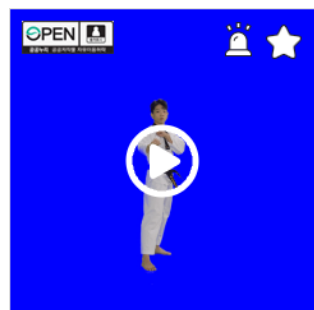


제주_비양도

영상, 3D 저작물



송례문



[정면 영상] 발차기자세 (기본동작)



소리 알락귀뚜라미



소리 21아리랑(아리랑 연곡)



소리 Happiness_chief and fis...



음악 0130_황호준 [2019.02.0...

음원 저작물

4 원문 DB 등록 안내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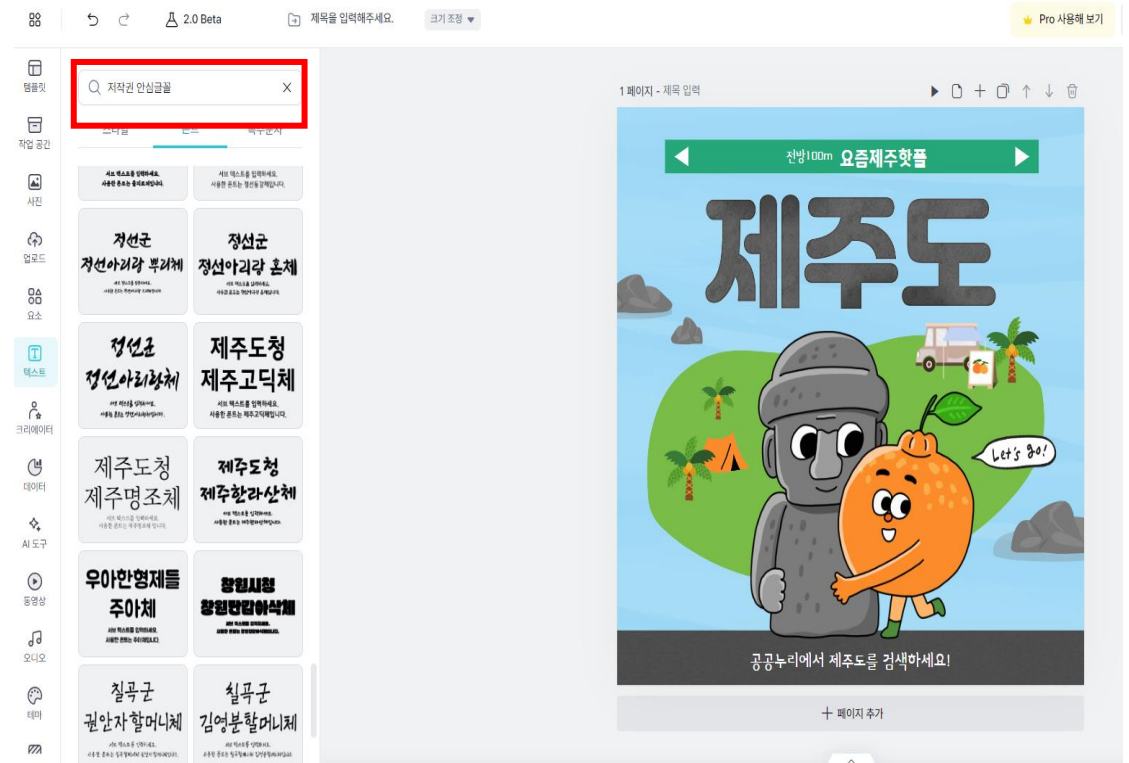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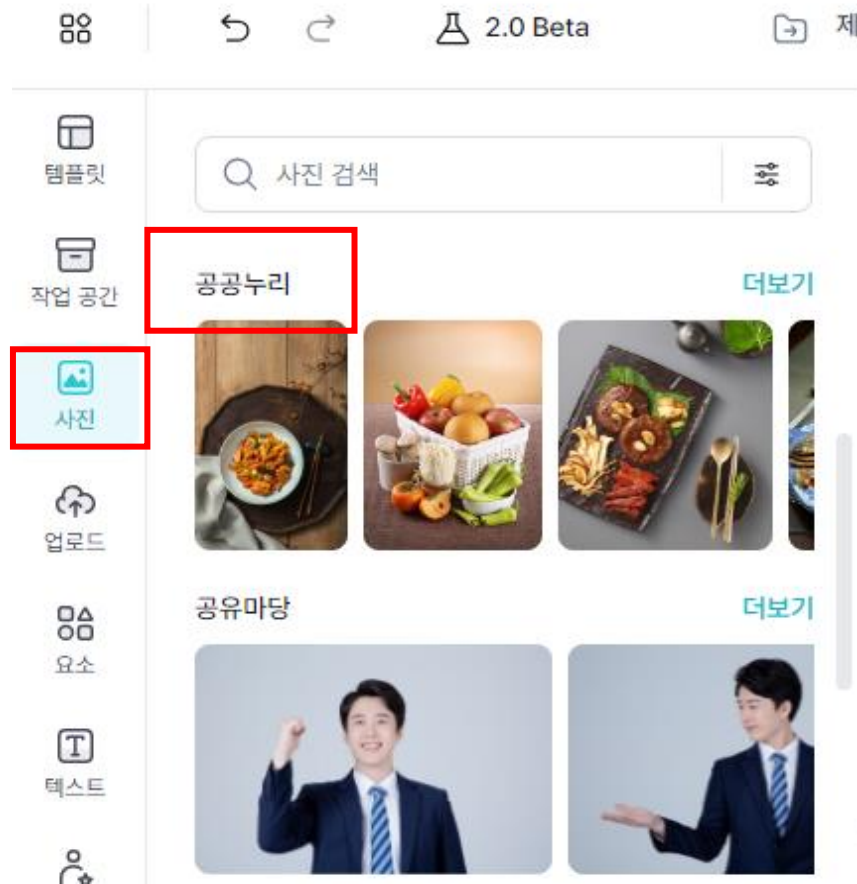
» 저작도구 탑재(망고보드)

The screenshot displays the MANGObOARD interface, which is used for creating digital content. The interface is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 Top Bar:** Contains the MANGObOARD logo and navigation tabs: 파일 (File), 다운로드 (Download), 공유 (Share), and 인쇄 (Print).
- Search Bar:** A search bar at the top left with the text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 National Institute of Family Development) entered. A red box highlights this text.
- Left Sidebar:** A vertical menu with icons for various tools: 템플릿 (Template), 그래픽 (Graphic), AI, 텍스트 (Text), 배경 (Background), 데이터 (Data), 업로드 (Upload), 나외작업 (External Work), 즐겨찾기 (Bookmark), and 그리기 (Drawing).
- Main Canvas:** The central area where the content is created. It shows a poster for "세계 해양의 날" (World Ocean Day) with a date of "6.8". The poster features a blue background with white text and illustrations of marine life. A red box highlights the text "원도청정바다제 B" (Original Clean Ocean Day B) in the top right corner.
- Right Panel:** A panel with various settings and tools. It includes a "텍스트" (Text) section with options for font size, color, and background. A red box highlights the "원도청정바다제 B" text in this panel.

4 원문 DB 등록 안내사항

» 저작도구 탑재(미리캔버스)



- 1 교육의 실적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26년 중 한국문화정보원이 주관한 교육(연수, 방문교육(화상포함)), 시도협의회 의 각 교육별 교육시간 인정(명단 포함)공문 발송함(증빙)
- 2 책임관 및 담당자 지정 현행화 증빙은 어떻게 하며, 실적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26년 중 한국문화정보원으로 공문 발송
- 3 링크연계의 5천건의 기준은 누적 연계 건수인가요? 2026년도 연계 건수인가요? '26년에 연계한 건수에 한함
- 4 링크연계 건수, 원문저작물 등록건수의 확인 및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공공누리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확인증 출력)
- 5 링크연계는 시·도 시·군·구 별로 점수를 평균으로 하나요? 시·도 시·군·구 평균 연계 건수의 점수를 주나요?
시·군·구별 해당 구간 점수의 평균임
- 6 원문저작물은 어떤 형태의 공공저작물인가요? 공공누리에서 내려받기(다운로드) 가능한 형태(글꼴파일, 사진, 영상, 어문 등)
- 7 원문저작물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공누리 사이트에 직접 등록 또는 대량 시 일괄 등록(메타데이터 필요) 지원
- 8 원문저작물 과거에 등록되어 있는 공공저작물도 등록 여부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26년에 등록한 건수에 한함
- 9 원문저작물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한컴오피스, MS오피스, 어도비, 미리캔버스, 망고보드 등 저작도구에 탑재하여 이용활성화